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74 호 2017. 1. 25(수)

고 시

- 제2017 - 6호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 1
 제2016 - 102호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고시 256

공 고

- 제2017 - 31호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71
 제2017 - 41호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13
 제2017 - 69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331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5, 행정 3045)

고 시

남해군 고시 제2017 - 6호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경상남도 사무위임 조례 제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이에 따른 관계도서는 남해군(도시건축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17년 1월 25일

남 해 군 수

1. 군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불임참조
2. 관계도서 : 생략(남해군청 도시건축과에 비치)

<붙임>

남해군관리계획(재정비,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I.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579,421,246.7	—	579,421,246.7	100.0		
육지부합계		357,609,682.7	—	357,609,682.7	61.7		
도 시 지 역	소계	11,801,283.0	—	11,801,283.0	2.0		
	주 거 지 역	소계	1,264,968.0	—	1,264,968.0	0.2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	1,190,548.0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준주거지역	74,420.0	—	74,420.0	—	
	상 업 지 역	소계	183,713.0	—	183,713.0	—	
		중심상업지역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	183,713.0	—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 업 지 역	소계	—	—	—	—	
		전용공업지역	—	—	—	—	
		일반공업지역	—	—	—	—	
		준공업지역	—	—	—	—	
	녹 지 지 역	소계	10,352,602.0	—	10,352,602.0	1.8	
		보전녹지지역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	2,569,007.0	0.4	
		자연녹지지역	7,783,595.0	—	7,783,595.0	1.4	
	관 리 지 역	소계	132,925,907.7	—	132,925,907.7	22.9	
		관리지역	—	—	—	—	
보전관리지역		44,192,681.0	감)4,752.0	44,187,929.0	7.6		
생산관리지역		52,359,975.0	감)1,799.0	52,358,176.0	9.0		
계획관리지역		36,373,251.7	증)6,551.0	36,379,802.7	6.3		
농림지역		157,539,775.0	—	157,539,775.0	27.2		
자연환경보전지역		55,342,717.0	—	55,342,717.0	9.6		
해면	자연환경보전지역	221,811,564.0	—	221,811,564.0	38.3		

주) 용도지역 기준은 남해군고시 제2016-33호(2016.05.04.) 기준임 「남해군관리계획(시설:도로)결정(변경) 및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학교,도로)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② 행정구역별 지정내역

구분	합계(㎡)	면적(㎡)					비고
		남해읍	이동면	상주면	삼동면	미조면	
합계	357,609,682.7	27,155,730.0	47,033,132.0	23,787,564.0	51,215,016.0	15,730,758.0	
주거지역	1,264,968.0	1,264,968.0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1,190,548.0	1,190,548.0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	
준주거지역	74,420.0	74,420.0	-	-	-	-	
상업지역	183,713.0	183,713.0	-	-	-	-	
중심상업지역	-	-	-	-	-	-	
일반상업지역	183,713.0	183,713.0	-	-	-	-	
근린상업지역	-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	
공업지역	-	-	-	-	-	-	
전용공업지역	-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	
준공업지역	-	-	-	-	-	-	
녹지지역	10,352,602.0	10,352,602.0	-	-	-	-	
보전녹지지역	-	-	-	-	-	-	
생산녹지지역	2,569,007.0	2,569,007.0	-	-	-	-	
자연녹지지역	7,783,595.0	7,783,595.0	-	-	-	-	
관리지역	132,925,907.7	8,037,412.0	11,219,750.0	3,200,999.0	16,671,335.0	5,074,522.0	
보전관리지역	44,187,929.0	4,904,817.0	3,433,778.0	334,573.0	6,006,601.0	1,006,434.0	
생산관리지역	52,358,176.0	1,448,652.0	4,878,684.0	1,163,842.0	6,201,744.0	1,715,618.0	
계획관리지역	36,379,802.7	1,683,943.0	2,907,288.0	1,702,584.0	4,462,990.0	2,352,470.0	
농림지역	157,539,775.0	4,414,403.0	24,877,108.0	283,764.0	33,876,488.0	9,345,599.0	
자연환경보전지역	55,342,717.0	2,902,632.0	10,936,274.0	20,302,801.0	667,193.0	1,310,637.0	
미지정	-	-	-	-	-	-	

남 해 군 공 보

(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면적(㎡)					비고
	남면	서면	고현면	설천면	창선면	
합계	43,500,397.0	40,987,842.0	28,925,723.0	24,913,098.0	54,360,422.7	
주거지역	-	-	-	-	-	
제1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2종전용주거지역	-	-	-	-	-	
제1종일반주거지역	-	-	-	-	-	
제2종일반주거지역	-	-	-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	-	
준주거지역	-	-	-	-	-	
상업지역	-	-	-	-	-	
중심상업지역	-	-	-	-	-	
일반상업지역	-	-	-	-	-	
근린상업지역	-	-	-	-	-	
유통상업지역	-	-	-	-	-	
공업지역	-	-	-	-	-	
전용공업지역	-	-	-	-	-	
일반공업지역	-	-	-	-	-	
준공업지역	-	-	-	-	-	
녹지지역	-	-	-	-	-	
보전녹지지역	-	-	-	-	-	
생산녹지지역	-	-	-	-	-	
자연녹지지역	-	-	-	-	-	
관리지역	21,132,499.0	18,147,956.0	14,026,204.0	9,561,282.0	25,853,948.7	
보전관리지역	6,478,005.0	5,967,192.0	4,623,295.0	2,608,522.0	8,824,712.0	
생산관리지역	8,591,106.0	7,619,984.0	5,617,106.0	5,096,463.0	10,024,977.0	
계획관리지역	6,063,388.0	4,560,780.0	3,785,803.0	1,856,297.0	7,004,259.7	
농림지역	22,049,172.0	22,839,886.0	11,764,440.0	4,360,062.0	23,728,853.0	
자연환경보전지역	318,726.0	-	3,135,079.0	10,991,754.0	4,777,621.0	
미지정	-	-	-	-	-	

■ 용도지역별 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결정(변경)사유
		기 정	변 경		
-	미조면 송정리 산284-3 일원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4,752	남해군 고시 제2015-31호(2015.04.17.)에 따라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 및 지형도면고시 되었으나, 남해군관리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및 남해군관리계획(용도지역, 시설: 학교, 도로) 결정(변경) 고시 때(남해군 고시 제2016-33호, 2016.05.04.) 미 반영되어 용도지역 변경사항이 누락됨에 따라 금회 정정고시 하하고자 함
-	미조면 송정리 706 일원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799	

II. 군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① 교통시설 결정조서

가. 도로 결정(변경)조서

■ 도로 결정조서 총괄표

구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노선수	연장(m)	면적(㎡)
합계	199	376,922	3,733,318	14	34,604	617,399	130	304,880	2,858,348	55	37,438	257,571
중로	17	37,285	676,487	3	27,083	541,660	5	4,067	61,005	9	6,135	73,822
소로	182	339,637	3,056,831	11	7,521	75,739	125	300,813	2,797,343	46	31,303	183,749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요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폐지	중로	1	1	20	보조간선도로	748	남해읍 남변리 530-5	남해읍 남변리 639	일반도로	-	경고제235호 (2000.10.30.)	국도19호
기정	중로	1	2	18.5~20	주간선도로	9,215	고현면 차면리 530-4	고현면 이어리 297-2	일반도로	-	-	국도19호 (국도77호중복)
변경	중로	1	3	18.5~20	주간선도로	9,215	설천면 덕신리 1545-5	고현면 이어리 297-2	일반도로	-	-	국도19호 (국도77호중복)
기정	중로	1	9	20	주간선도로	8,980	설천면 문의리 산63-3	고현면 오희리 971-6	일반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지방도 1024호
변경	중로	1	4	20	주간선도로	14,647	설천면 덕신리 1290-1	고현면 대사리 766-6	일반도로	-	-	지방도 1024호
기정	중로	1	17	20	보조간선도로	3,221	평리 1230-1	대정리 674-1	일반도로	-	남해고 제2012-73호 (2012.09.05.)	도시지역
변경	중로	1	5	20	보조간선도로	3,221	남해읍 평리 1221-8	서면 대정리 555-18	일반도로	-	-	도시지역
기정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1,781	아산리 784-9	평리 1230	일반도로	-	건고 제406호 (1973.10.12.)	도시지역

남 해 군 공 보

(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2	1	15	보조 간선 도로	1,786	남해읍 차산리 786-10	남해읍 평리 1232-3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293	남해읍 남변리 368	남해읍 아산리 966	일반 도로	-	건고 제406호 (1973.10.12.)	도시지역
변경	중로	2	2	15	국지 도로	1,064	남해읍 북변리 88-9	남해읍 아산리 924-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중로	2	3	15	국지 도로	436	남해읍 서변리 145-4	남해읍 남변리 665	일반 도로	-	건고 제406호 (1973.10.12.)	도시지역
기정	중로	2	4	15	국지 도로	662	남해읍 북변리 362-7	남해읍 북변리 5-1	일반 도로	-	경고 제19호 (1996.07.01.)	도시지역
변경	중로	2	4	15	국지 도로	669	남해읍 북변리 362-7	남해읍 북변리 5-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신설	중로	2	5	15	국지 도로	112	남해읍 북변리 362-15	남해읍 북변리 362-15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1,961	남해읍 북변리 434-2	남해읍 서변리 135	일반 도로	-	건고 제406호 (1973.10.12.)	도시지역
폐지	중로	3	2	12	국지 도로	231	남해읍 아산리 173-7	남해읍 차산리 846-3	일반 도로	-	경고 제301호 (1993.11.25.)	도시지역
기정	중로	3	3	12	국지 도로	1,022	북변리 20	차산리 239-2	일반 도로	-	경고 제235호 (2000.10.30.)	도시지역
변경	중로	3	2	12	국지 도로	787	남해읍 차산리 239-2	남해읍 차산리 36-18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중로	3	5	12	집산 도로	631	남해읍 남변리 532-9	남해읍 북변리 24	일반 도로	-	경고 제235호 (2000.10.30.)	도시지역
폐지	중로	3	6	12	집산 도로	130	남해읍 북변리 265-1	남해읍 북변리 265-1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도시지역
기정	중로	3	7	12	집산 도로	80	북변리 305	북변리 313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도시지역
변경	중로	3	3	12	집산 도로	80	남해읍 북변리 305	남해읍 북변리 265-1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도시지역
기정	중로	3	8	12	집산 도로	81	남해읍 북변리 325-1	남해읍 북변리 265-1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도시지역
변경	중로	3	4	12	집산 도로	86	남해읍 북변리 325-1	남해읍 북변리 265-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중로	3	10	12	집산 도로	371	하모니리조트 지구단위계획 구역(동측)	지방도1024	일반 도로	-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 4,440㎡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중로	3	5	12	집산도로	371	남면 덕월리 244	남면 덕월리 558-3	일반도로	-	하모니리조트 진입도로 - 4,440㎡	
신설	중로	3	6	12	집산도로	1,136	고현면 도마리 725-5	고현면 도마리 1803-2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7	12	집산도로	1,066	이동면 석평리 1106-2	이동면 무림리 781-2	일반도로	-		
신설	중로	3	8	12	집산도로	446	삼동면 지족리 282-5	삼동면 지족리 183-3	일반도로	-		
기정	중로	3	9	13	집산도로	202	소로3-9호선	미조면 송정리 산359-2	일반도로	-	남해고 제2015-30호 (2015.04.17.)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313	남변리 271	남변리 453-7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1	1	10	국지도로	331	남해읍 남변리 273-1	남해읍 남변리 453-2	일반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246	북변리 265-1	북변리 346	일반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395	남해읍 북변리 341-1	남해읍 북변리 265-1	일반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716	남변리 96-1	남변리 137-2	일반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790	남해읍 남변리 93-1	남해읍 남변리 644	일반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1	5	10	국지도로	222	북변리 32	남변리 141	일반도로	-	경고 제109호 (1996.07.01.)	도시지역
변경	소로	1	4	10	국지도로	222	남해읍 북변리 32	남해읍 남변리 141-1	일반도로	-	경고 제109호 (1996.07.01.)	도시지역
기정	소로	1	5	10	집산도로	8	소로 2-128	학교구역계	일반도로	-	남해고 제2016-33호 (2016.05.04.)	
신설	소로	1	6	11	집산도로	529	남해읍 평리 1242-2	남해읍 평리 1611	일반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1	1	10	간선도로	1,138	남측구역계	서측구역계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1	7	10	간선도로	1,138	남측구역계	서측구역계	일반도로	-		미조지구
신설	소로	1	8	10	주간선도로	1,802	설천면 노량리 443-20	설천면 덕신리 1772-13	일반도로	-		

남 해 군 공 보

(8)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1	9	10	집산도로	1,269	고현면 대사리 1081	고현면 오곡리 838-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10	10	집산도로	446	창선면 대벽리 22-2	창선면 대벽리 6-15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11	10	국지도로	591	상주면 상주리 1356-6	상주면 상주리 1224-2	일반도로	-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117	남해읍 남변리 500-6	남해읍 남변리 495-10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244	남변리 501-7	평리1215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	8	국지도로	244	남해읍 남변리 501-7	남해읍 서변리 492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103	남해읍 남변리 249-3	남해읍 남변리 503-1	일반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109	남변리 487-2	남변리 501-3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	8	국지도로	112	남해읍 남변리 490-1	남해읍 남변리 478-13	일반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5	8	국지도로	109	남해읍 남변리 268-3	남해읍 남변리 248-7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6	8	국지도로	216	남해읍 남변리 500-4	남해읍 남변리 293-2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	8	국지도로	54	남해읍 남변리 260-2	남해읍 남변리 293-2	일반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8	8	국지도로	261	남해읍 남변리 332-3	남해읍 남변리 280-10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	8	국지도로	269	남해읍 남변리 332-3	남해읍 남변리 280-10	일반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9	8	국지도로	201	북변리 337	북변리 253-18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5	8	국지도로	201	남해읍 북변리 335-1	남해읍 북변리 619	일반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262	북변리 248-12	북변리 265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6	8	국지도로	440	남해읍 북변리 248-12	남해읍 북변리 325-1	일반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11	8	국지도로	143	남변리 398-3	남변리 338-5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7	8	국지도로	143	남해읍 남변리 399-1	남해읍 남변리 338-5	일반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12	8	국지도로	356	서변리 176-5	북변리 100-18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8	8	국지 도로	356	남해읍서변리 176-6	남해읍북변리 97-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13	8	국지 도로	302	남변리 459	북변리 89-5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9	8	국지 도로	302	남해읍 남변리 460-15	남해읍 남변리 96-6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14	8	국지 도로	110	남해읍 북변리 275-14	남해읍 북변리 31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23	8	국지 도로	110	남해읍 북변리 275-14	남해읍 북변리 311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5	8	국지 도로	261	북변리 285-4	북변리 308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0	8	국지 도로	261	남해읍 북변리 285-19	남해읍 북변리 265-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16	8	국지 도로	111	북변리 301-8	북변리 304-1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1	8	국지 도로	111	남해읍 북변리 300-40	남해읍 북변리 304-12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17	8	국지 도로	421	북변리 96-6	북변리 284-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2	8	국지 도로	421	남해읍 북변리 96-6	남해읍 북변리 284-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18	8	국지 도로	421	북변리 96-7	북변리 475-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3	8	국지 도로	421	남해읍 북변리 96-6	남해읍 북변리 284-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19	8	국지 도로	302	북변리 256	북변리 474-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4	8	국지 도로	241	남해읍 북변리 265-1	남해읍 북변리 265-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20	8	국지 도로	22	서변리 194-1	서변리 49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5	8	국지 도로	22	남해읍 서변리 199-8	남해읍 서변리 492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21	8	국지 도로	222	북변리 467	북변리 480-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6	8	국지 도로	222	남해읍 북변리 464-4	남해읍 북변리 480-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53	남해읍 북변리 산7-4	남해읍 북변리 501-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23	8	국지 도로	360	남해읍 북변리 615-3	남해읍 아산리 177-7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남 해 군 공 보

(1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17	8	국지 도로	363	남해읍 차산리 726-2	남해읍 아산리 177-7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24	8	국지 도로	67	아산리 177-5	아산리 189-6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8	8	국지 도로	67	남해읍 아산리 177-5	남해읍 아산리 189-2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25	8	국지 도로	114	남해읍 북변리 513-1	남해읍 차산리 773-3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26	8	국지 도로	205	북변리 474	북변리 505-13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19	8	국지 도로	205	남해읍 북변리 474	남해읍 북변리 505-3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27	8	국지 도로	410	북변리 129-4	서변리 187-8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0	8	국지 도로	410	남해읍 북변리 139-3	남해읍 서변리 187-8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28	8	국지 도로	272	북변리 468-4	북변리 460-4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1	8	국지 도로	271	남해읍 북변리 265-1	남해읍 북변리 460-5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29	8	국지 도로	186	북변리 287-5	아산리 376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2	8	국지 도로	186	남해읍 북변리 287-4	남해읍 아산리 376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30	8	국지 도로	430	아산리 335-2	북변리 246-24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3	8	국지 도로	430	남해읍 아산리 334-4	남해읍 북변리 246-24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32	8	국지 도로	126	남해읍 남변리 236	남해읍 남변리 24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33	8	국지 도로	448	아산리 408	아산리 242-5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4	8	국지 도로	208	남해읍 아산리 355-2	남해읍 아산리 336-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34	8	국지 도로	420	아산리 366-8	아산리 240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5	8	국지 도로	420	남해읍 아산리 355-2	남해읍 아산리 240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35	8	국지 도로	341	아산리 355	아산리 26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6	8	국지 도로	332	남해읍 아산리 355-5	남해읍 아산리 262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36	8	국지 도로	913	북변리 141-1	아산리 185-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7	8	국지 도로	913	남해읍 북변리 141-1	남해읍 아산리 173-3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37	8	국지 도로	275	아산리 산134-6	아산리 840-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8	8	국지 도로	133	남해읍 아산리 924-1	남해읍 아산리 839-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39	8	국지 도로	112	남해읍 아산리 341-3	남해읍 아산리 330-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29	8	국지 도로	112	남해읍 아산리 341-3	남해읍 아산리 330-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40	8	국지 도로	609	남해읍 아산리 419-4	남해읍 아산리 839-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41	8	국지 도로	1,044	아산리 1039	아산리 46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0	8	국지 도로	1,051	남해읍 아산리 462-1	남해읍 아산리 1039-2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42	8	국지 도로	188	아산리 853	아산리 1006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1	8	국지 도로	123	남해읍 아산리 899	남해읍 아산리 853-3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44	8	국지 도로	228	아산리 492	아산리 319-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2	8	국지 도로	147	남해읍 아산리 969-3	남해읍 아산리 492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45	8	국지 도로	85	남해읍 아산리 472-4	남해읍 아산리 426-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47	8	국지 도로	90	아산리 331-1	아산리 315-4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3	8	국지 도로	150	남해읍 아산리 1435	남해읍 아산리 1421-5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48	8	국지 도로	84	남해읍 아산리 337-4	남해읍 아산리 333-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4	8	국지 도로	84	남해읍 아산리 337-4	남해읍 아산리 333-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49	8	국지 도로	247	중로 2-2 아산리 429-1	소로 2-41 서변리 352-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5	8	국지 도로	244	남해읍 아산리 429-2	남해읍 서변리 352-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51	8	국지 도로	218	남해읍 아산리 185-8	남해읍 북변리 산10-5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남 해 군 공 보

(1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2	8	국지 도로	221	서변리 360-2	서변리 366-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6	8	국지 도로	221	남해읍 서변리 357-2	남해읍 서변리 366-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53	8	국지 도로	237	아산리 419-2	서변리 305-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7	8	국지 도로	237	남해읍 아산리 419-7	남해읍 서변리 305-12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54	8	국지 도로	94	남변리 391-6	서변리 19-5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8	8	국지 도로	94	남해읍 남변리 391-6	남해읍 서변리 19-5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55	8	국지 도로	646	남변리 407-13	아산리 45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39	8	국지 도로	646	남해읍 남변리 402-1	남해읍 아산리 447-5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56	8	국지 도로	341	중로 2-1 서변리 154-3	소로 2-59 서변리 287-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0	8	국지 도로	341	남해읍 서변리 154-4	남해읍 서변리 286-2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57	8	국지 도로	98	남해읍 서변리 143-10	남해읍 서변리 112-6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59	8	국지 도로	236	서변리 282-3	서변리 308-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1	8	국지 도로	236	남해읍 서변리 283-12	남해읍 서변리 309-2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61	8	국지 도로	301	아산리 396-6	서변리 70-5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2	8	국지 도로	301	남해읍 아산리 396-6	남해읍 서변리 69-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62	8	국지 도로	20	서변리 71-8	서변리 71-4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3	8	국지 도로	20	남해읍 서변리 69-1	남해읍 서변리 71-4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64	8	국지 도로	112	북변리 259-7	북변리 256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4	8	국지 도로	112	남해읍 북변리 259-7	남해읍 북변리 256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65	8	국지 도로	162	남해읍 북변리 265	남해읍 북변리 333-3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66	8	국지 도로	83	남해읍 북변리 311	남해읍 북변리 322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124	8	국지 도로	83	남해읍 북변리 311	남해읍 북변리 32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67	8	국지 도로	81	북변리 308	북변리 320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5	8	국지 도로	81	남해읍 북변리 308-3	남해읍 북변리 320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69	8	국지 도로	178	북변리 505-4	차산리 776-3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6	8	국지 도로	224	남해읍 아산리 173-7	남해읍 북변리 505-3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70	8	국지 도로	145	남해읍 차산리 766-1	남해읍 아산리 173-10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7	8	국지 도로	159	남해읍 차산리 766-9	남해읍 아산리 173-10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71	8	국지 도로	348	남해읍 차산리 763-2	남해읍 아산리 1416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72	8	국지 도로	1,437	차산리 762-2	선소마을 선소리 67-3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군도1호)
변경	소로	2	48	8	국지 도로	1,450	남해읍 차산리 762-2	남해읍 선소리 196-5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군도1호)
폐지	소로	2	73	8	국지 도로	231	남해읍 남변리 247-2	남해읍 남변리 275-4	일반 도로	-	경고 제235호 (2000.10.30.)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74	8	국지 도로	163	남해읍 남변리 247-1	남해읍 남변리 275-2	일반 도로	-	경고 제235호 (2000.10.30.)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75	8	국지 도로	1,098	아산리 189-2	오동마을 아산리 1266-1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49	8	국지 도로	1,098	남해읍 아산리 189-2	남해읍 아산리 1309-6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76	8	국지 도로	365	아산리 1039	오동마을 아산리 1115-1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50	8	국지 도로	365	남해읍 아산리 1039-2	남해읍 아산리 1309-6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77	8	국지 도로	286	남해읍 남변리 212	남해읍 남변리 275-2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78	8	국지 도로	106	남해읍 남변리 211-2	남해읍 남변리 275-2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80	8	국지 도로	78	아산리 357-5	아산리 368-2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51	8	국지 도로	78	남해읍 아산리 357-5	남해읍 아산리 361-8	일반 도로	-		도시지역

남 해 군 공 보

(1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81	8	국지 도로	56	남해읍 아산리 341-3	남해읍 아산리 348-1	일반 도로	-	경고 제234호 (1994.11.01.)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82	8	국지 도로	960	소로 2-41 서변리 462	신촌마을 평현리 610-1	일반 도로	-	경고 제234호 (1994.11.01.)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52	8	국지 도로	960	남해읍 아산리 462-1	남해읍 평현리 729-2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83	8	국지 도로	217	북변리 555-4	북변리 505-3	일반 도로	-	경고 제235호 (2000.10.30.)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53	8	국지 도로	217	남해읍 북변리 555-4	남해읍 북변리 505-3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84	8	국지 도로	118	남해읍 남변리 158-1	남해읍 남변리 239-1	일반 도로	-	경고 제235호 (2000.10.30.)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85	8	국지 도로	290	남해읍 남변리 510	남해읍 남변리 239-2	일반 도로	-	경고 제235호 (2000.10.30.)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86	8	국지 도로	100	북변리 559-6	북변리 597-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54	8	국지 도로	100	남해읍 북변리 559-7	남해읍 북변리 597-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2	87	8	국지 도로	310	남해읍 아산리 1442	남해읍 아산리 1039-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88	8	국지 도로	57	아산리 355-4	아산리 310-3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55	8	국지 도로	57	남해읍 아산리 355-2	남해읍 서변리 310-6	일반 도로	-		도시지역
신설	소로	2	56	8	국지 도로	134	남해읍 아산리 258-3	남해읍 아산리 242-4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1	8	집산 도로	378	미조면 미조리 산152-6	미조면 미조리 140-27	일반 도로	-		미조지구
변경	소로	2	57	8	집산 도로	378	미조면 미조리 산152-6	미조면 미조리 140-27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2	2	8	집산 도로	48	미조면 미조리 170-32	미조면 미조리 산54-5	일반 도로	-		미조지구
변경	소로	2	58	8	집산 도로	48	미조면 미조리 170-32	미조면 미조리 산54-5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2	89	8	보조 간선 도로	1,568	남해읍 선소리 67-3	남해읍 입현리 397-1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호
변경	소로	2	59	8	보조 간선 도로	1,801	남해읍 선소리 196-5	남해읍 입현리 388-3	일반 도로	-		군도1호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15)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0	8	보조 간선 도로	1,080	설천면 금음리 653-2	남양리 73-2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2호
변경	소로	2	60	8	보조 간선 도로	1,080	설천면 금음리 653-2	설천면 남양리 73-2	일반 도로	-		군도2호
기정	소로	2	91	8	보조 간선 도로	4,310	금음리 745-2	설천면 노량리 439-19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2호
변경	소로	2	61	8	보조 간선 도로	6,655	설천면 금음리 745-2	설천면 노량리 443-16	일반 도로	-		군도2호
기정	소로	2	92	8	보조 간선 도로	1,496	고현면 도마리 699-5도	설천면 비란리 142-3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3호
변경	소로	2	62	8	보조 간선 도로	1,496	고현면 도마리 699-5	설천면 비란리 154-3	일반 도로	-		군도3호
기정	소로	2	93	8	보조 간선 도로	6,566	고현면 이어리 512-5도	서면 중현리 1432-18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4호
변경	소로	2	63	8	보조 간선 도로	6,566	고현면 이어리 512-5	서면 중현리 1432-6	일반 도로	-		군도4호
기정	소로	2	94	8	보조 간선 도로	4,262	대정리 555-11	남면 상가리 906-5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5호
변경	소로	2	64	8	보조 간선 도로	4,262	서면 대정리 555-11	남면 상가리 903-3	일반 도로	-		군도5호
기정	소로	2	95	8	보조 간선 도로	662	남면 죽전리 1011-4도	남면 당항리 418-2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5호
변경	소로	2	65	8	보조 간선 도로	1,612	남면 연죽리 1010-2	남면 당항리 1340-2	일반 도로	-		군도5호
폐지	소로	2	96	8	보조 간선 도로	251	남면 당항리 1478-2	남면 석교리 1152-1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5호
기정	소로	2	98	8	보조 간선 도로	2,716	대정리 674-1	서면 서상리 487-3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6호
변경	소로	2	66	8	보조 간선 도로	3,087	서면 대정리 555-4	서면 서상리 634-3	일반 도로	-		군도6호

남 해 군 공 보

(1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99	8	보조 간선 도로	2,422	상주면 상주리 1991-6도	상주면 양아리 1946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7호
변경	소로	2	67	8	보조 간선 도로	6,274	상주면 상주리 2207	상주면 양아리 산39-2	일반 도로	-		군도7호
기정	소로	2	100	8	보조 간선 도로	4,914	남해읍 입현리 1323-7도	이동면 다정리 89-2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8호
변경	소로	2	68	8	보조 간선 도로	4,914	남해읍 입현리 1323-7	이동면 다정리 89-2	일반 도로	-		군도8호
기정	소로	2	102	8	보조 간선 도로	392	미조면 송정리 1328-6도	미조면 송정리 1218-1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소로	2	69	8	보조 간선 도로	392	미조면 송정리 1328-2	미조면 송정리 1218-1	일반 도로	-		
폐지	소로	2	103	8	보조 간선 도로	120	미조면 송정리 산340-29	미조면 송정리 산348-23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9호
기정	소로	2	104	8	보조 간선 도로	1,621	미조면 송정리 산325-2도	미조면 미조리 산56-7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9호
변경	소로	2	70	8	보조 간선 도로	1,621	미조면 송정리 산325-2	미조면 미조리 산56-7	일반 도로	-		군도9호
기정	소로	2	105	8	보조 간선 도로	3,851	남면 임포리 510-2도	남면 흥현리 156-6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0호
변경	소로	2	71	8	보조 간선 도로	3,851	남면 임포리 520-2	남면 흥현리 156-6	일반 도로	-		군도10호
기정	소로	2	106	8	보조 간선 도로	6,538	삼동면 봉화리 986-5	삼동면 봉화리 2149답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1호
변경	소로	2	72	8	보조 간선 도로	6,538	삼동면 봉화리 986-5	삼동면 봉화리 2242	일반 도로	-		군도11호
기정	소로	2	107	8	보조 간선 도로	7,865	이동면 난읍리 1796-3도	삼동면 동천리 산400-2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2호
변경	소로	2	73	8	보조 간선 도로	7,864	이동면 난읍리 1794-1	삼동면 동천리 산400-2	일반 도로	-		군도12호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17)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08	8	보조 간선 도로	3,366	삼동면 금송리 909-2답	삼동면 동천리 1553-1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3호
변경	소로	2	74	8	보조 간선 도로	3,366	삼동면 금송리 690-1	삼동면 동천리 1552-1	일반 도로	-		군도13호
기정	소로	2	109	8	보조 간선 도로	5,960	삼동면 동천리 1758-2도	삼동면 동천리 818-5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3호
변경	소로	2	75	8	보조 간선 도로	5,960	삼동면 동천리 1657-1	삼동면 동천리 818-5	일반 도로	-		군도13호
기정	소로	2	110	8	보조 간선 도로	1,463	삼동면 금송리 516-1전	삼동면 금송리 1412-27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3호
변경	소로	2	76	8	보조 간선 도로	2,054	삼동면 지족리 291-19	삼동면 금송리 526-11	일반 도로	-		군도13호
기정	소로	2	112	8	보조 간선 도로	2,304	창선면 당항리 674-5도	창선면 울도리 455-2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4호
변경	소로	2	77	8	보조 간선 도로	2,226	창선면 당항리 산127-1	창선면 울도리 455-3	일반 도로	-		군도14호
기정	소로	2	113	8	보조 간선 도로	3,342	창선면 오용리 989-4도	창선면 진동리 1063-23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5호
변경	소로	2	78	8	보조 간선 도로	3,342	창선면 오용리 989-4	창선면 진동리 1232-1	일반 도로	-		군도15호
기정	소로	2	116	8	보조 간선 도로	2,913	창선면 동대리 509-5도	창선면 서대리 801-12답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7호
변경	소로	2	79	8	보조 간선 도로	2,913	창선면 동대리 509-1	창선면 서대리 737-4	일반 도로	-		군도17호
기정	소로	2	117	8	보조 간선 도로	1,371	창선면 오용리 396-9도	창선면 오용리 산80-1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군도19호
변경	소로	2	80	8	보조 간선 도로	1,376	창선면 오용리 1350	창선면 오용리 산80-1	일반 도로	-		군도19호
기정	소로	2	120	8	보조 간선 도로	122	미조면 송정리 1125-4도	미조면 송정리 1188-4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12-73호 (2012.09.05.)	군도9호

남 해 군 공 보

(18)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81	8	보조 간선 도로	356	미조면 송정리 1125-4	미조면 송정리 1188-4	일반 도로	-		군도9호
기정	소로	2	121	9	국지 도로	56	평리 1087-1	평리 1084-4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12-73호 (2012.09.05.)	도시지역
변경	소로	2	82	9	국지 도로	54	남해읍 평리 1087-5	남해읍 평리 1084-4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2	122	8	보조 간선 도로	2,127	상주면 상주리 산302-11입	상주면 양아리 813전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12-73호 (2012.09.05.)	군도18호
변경	소로	2	83	8	보조 간선 도로	4,526	상주면 상주리 산302-11입	상주면 양아리 797-4	일반 도로	-		군도18호
기정	소로	2	123	8~ 20	주간 선도 로	12,370	남해읍 입현리 1399-3도 (도시계획구역남 측)	이동면 신전리 산251-5도	일반 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국도19호 (국도77호중복)
변경	소로	2	84	8~ 20	주간 선도 로	26,308	남해읍 입현리 1639-7	미조면 미조리 530	일반 도로	-		국도19호 (국도77호중복)
폐지	소로	2	124	8	주간 선도 로	470	상주면 상주리 2011-7	상주면 상주리 1937-1	일반 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국도19호 (국도77호중복)
폐지	소로	2	125	8	주간 선도 로	4,770	상주면 상주리 398-4	미조면 미조리 530	일반 도로	-	경고 제2009-63 (2009.02.05.)	국도19호 (국도77호중복)
기정	소로	2	126	8	주간 선도 로	10,153	고현면 대사리 909-2도	서면남상리 1588-2도	일반 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국도77호 (지방도1024호 중복)
변경	소로	2	85	8	주간 선도 로	10,153	고현면 대사리 904-1	서면 남상리 1591-1	일반 도로	-		국도77호 (지방도1024호 중복)
기정	소로	2	127	8	주간 선도 로	10,957	창선면 대벽리 5-1도	삼동면 지족리 291-11유	일반 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국도3호
변경	소로	2	86	8	주간 선도 로	30,250	창선면 대벽리 산1-40	미조면 송정리 1451	일반 도로	-		국도3호
폐지	소로	2	128	8	주간 선도 로	18,420	삼동면 지족리 160-1	미조면 송정리 1451	일반 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국도3호
기정	소로	2	129	8	주간 선도 로	6,393	서면 남상리 1593-4도	서면 서상리 1291-3도	일반 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지방도1024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2	87	8	주간선도로	41,405	서면 남상리 1591-1	이동면 무림리 산 177-2	일반도로	-		지방도1024호
폐지	소로	2	130	8	주간선도로	34,424	서면 서상리 722-22	이동면 무림리 산177-2	일반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지방도1024호
기정	소로	2	131	8~20	주간선도로	5,920	이동면 무림리 885-2도	삼동면 지족리 1217도	일반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지방도1024호
변경	소로	2	88	8~20	주간선도로	6,142	이동면 무림리 915-4	삼동면 지족리 388-2	일반도로	-		지방도1024호
기정	소로	2	132	8	주간선도로	14,978	창선면 지족리 280-3도	창선면 대벽리	일반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지방도1024호
변경	소로	2	89	8	주간선도로	15,490	창선면 지족리 280-3	창선면 대벽리 22-2	일반도로	-		지방도1024호
폐지	소로	2	133	8	주간선도로	260	창선면 대벽리 산37-9	창선면 대벽리 22-2	일반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지방도1024호
기정	소로	2	134	8	주간선도로	17,322	창선면 수산리 284-2도	창선면 부윤리 4045답	일반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지방도1024호
변경	소로	2	90	8	주간선도로	17,322	창선면 진동리 1232-1	창선면 가인리 25-4	일반도로	-		지방도1024호
폐지	소로	2	135	8	주간선도로	235	창선면 대벽리 산1-40	창선면 대벽리 산9-1	일반도로	-	경고 제2009-63호 (2009.02.05.)	국도3호
기정	소로	2	136	8	국지도로	880	소로2-72	소로2-89	일반도로		남해군공고 제2016-465호 (2016.06.15.)	농어촌도로 (남해203호)
변경	소로	2	122	8	국지도로	880	소로2-48	소로2-59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123	8	국지도로	260	설천면 비란리 1117	설천면 비란리 15-54	일반도로	-	남해고 제2014-63호 (2014.09.01.)	농어촌도로 (설천101호)
변경	소로	2	91	8	국지도로	5,201	설천면 비란리 1037-2	남해읍 선소리 90-3	일반도로	-		
폐지	소로	2	124	8	국지도로	417	소로2-72	남해읍 차산리 463-23	일반도로	-	남해고 제2014-63호 (2014.09.01.)	농어촌도로 (남해101호)

남 해 군 공 보

(2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25	8	국지 도로	162	이동면 신전리 산116-38	이동면 신전리 산107-2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14-63호 (2014.09.01.)	농어촌도로 (이동215호)
변경	소로	2	92	8	국지 도로	2,485	이동면 신전리 산71-6	이동면 신전리 112-2	일반 도로	-		
기정	소로	2	126	8	국지 도로	215	남해읍 차산리 759-5	남해읍 차산리 705-3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14-63호 (2014.09.01.)	농어촌도로 (남해206호)
변경	소로	2	93	8	국지 도로	215	남해읍 차산리 759-5	남해읍 차산리 705-3	일반 도로	-		농어촌도로 (남해206호)
기정	소로	2	127	8	보조 간선 도로	720	남해읍 입현리 388-3	소로2-100 입현리 370-2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14-73호 (2014.10.27.)	군도8호
변경	소로	2	94	8	보조 간선 도로	720	남해읍 입현리 388-3	남해읍 입현리 370-3	일반 도로	-		군도8호
기정	소로	2	19	8	국지 도로	625	설천면 문항리 752-6	설천면 문항리 1079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15-10호 (2015.02.06.)	농어촌도로 (설천101호)
변경	소로	2	95	8	국지 도로	625	설천면 문항리 751-7	설천면 문항리 619	일반 도로	-		농어촌도로 (설천101호)
폐지	소로	2	20	8~9	국지 도로	125	고현면 도마리 1899	고현면 도마리 30-1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15-10호 (2015.02.06.)	농어촌도로 (고현101호)
신설	소로	2	96	8	집산 도로	4,777	설천면 노량리 662	설천면 문의리 1463-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97	8	집산 도로	1,079	설천면 문의리 666-3	설천면 금음리 64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98	8	집산 도로	4,484	설천면 금음리 630-5	설천면 문항리 산125-4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99	8	집산 도로	4,378	설천면 문항리 895-1	설천면 비란리 1084-2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00	8	집산 도로	145	고현면 대사리 900-3	고현면 대사리 904-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01	8	집산 도로	2,947	서면 정포리 1110	서면 중현리 167-1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02	8	집산 도로	191	남면 당항리 1438-2	남면 당항리 1440-3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03	8	집산 도로	57	남면 당항리 1440-3	남면 당항리 2069	일반 도로	-		
신설	소로	2	104	8	집산 도로	1,827	이동면 화계리 317-2	이동면 신전리 1556	일반 도로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신설	소로	2	105	8	집산도로	2,075	이동면 석평리 831-6	이동면 초음리 6-3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06	8	집산도로	8,864	이동면 석평리 841-7	삼동면 지족리 291-19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07	8	집산도로	62	이동면 무림리 921-2	이동면 무림리 915-4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08	8	집산도로	2,158	이동면 무림리 540-4	이동면 난음리 1024-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09	8	집산도로	185	삼동면 지족리 291-19	삼동면 지족리 1204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10	8	집산도로	175	삼동면 지족리 409-4	삼동면 지족리 267-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11	9	집산도로	882	삼동면 봉화리 1036-4	삼동면 봉화리 1159-3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12	9	집산도로	503	삼동면 물건리 380-6	삼동면 물건리 1074-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13	8	국지도로	421	삼동면 물건리 515-3	삼동면 물건리 484-7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14	8	국지도로	304	상주면 상주리 2196	상주면 상주리 1058-10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15	8	국지도로	73	상주면 상주리 1228-2	상주면 상주리 1238-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16	8	국지도로	739	상주면 상주리 1226-3	상주면 상주리 543-27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17	8	국지도로	111	상주면 상주리 576-8	상주면 상주리 588-3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18	8	국지도로	1,770	미조면 미조리 산152-6	미조면 미조리 168-44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19	8	국지도로	828	미조면 미조리 170-32	미조면 미조리 180-3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20	8	국지도로	2,346	창선면 동대리 1038	창선면 당저리 53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21	8	국지도로	314	창선면 대벽리 142	창선면 대벽리 산1-30	일반도로	-		
신설	소로	2	125	8	국지도로	317	남면 죽전리 331-3	남면 죽전리 506-2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300	남해읍 아산리 426-2	남해읍 서번리 357-2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479	서번리 282-5	평리 1211	일반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1	6	국지도로	479	남해읍 서번리 282-5	남해읍 평리 1211-1	일반도로	-		도시지역

남 해 군 공 보

(2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13	아산리 417	아산리 330-1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2	6	국지 도로	394	남해읍 아산리 415-2	남해읍 아산리 493-2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4	6	국지 도로	278	평리 1203	서변리 490-10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3	6	국지 도로	288	남해읍 평리 1203	남해읍 서변리 490-10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3	6	4	특수 도로	114	남해읍 북변리 362-16	남해읍 북변리 339	보행자 전용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폐지	소로	3	7	4	특수 도로	270	남해읍 남변리 544-1	남해읍 남변리 280-13	보행자 전용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폐지	소로	3	8	4	특수 도로	22	남해읍 남변리 278-6	남해읍 남변리 277-11	보행자 전용 도로	-	경고 제235호 (2000.10.30.)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9	6	국지 도로	99	아산리 373-4	아산리 351-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4	6	국지 도로	99	남해읍 아산리 373-4	남해읍 아산리 351-2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10	6	국지 도로	251	아산리 335-2	아산리 317-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5	6	국지 도로	471	남해읍 아산리 974-2	남해읍 아산리 350-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폐지	소로	3	11	6	국지 도로	375	남해읍 아산리 330-1	남해읍 아산리 144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12	6	국지 도로	146	아산리 830-1	아산리 967-2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6	6	국지 도로	146	남해읍 아산리 830-1	남해읍 아산리 924-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13	6	국지 도로	446	아산리 1040	아산리 966	일반 도로	-	경고 제391호 (1993.11.25.)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7	6	국지 도로	446	남해읍 아산리 1039-2	남해읍 아산리 924-1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14	6	국지 도로	118	남변리 470-4	남변리 255-7	일반 도로	-	경고 제127호 (1977.01.27.)	도시지역
변경	소로	3	8	6	국지 도로	118	남해읍 남변리 501-5	남해읍 남변리 255-9	일반 도로	-		도시지역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275	소2-2호선	남측구역계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9	6	국지 도로	284	소2-2호선	남측구역계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88	105-9도	632-4도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88	105-9도	632-4도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3	4	국지 도로	54	소3-1호선	소3-5호선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11	4	국지 도로	54	소3-1호선	소3-5호선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4	4	국지 도로	106	835도	100-10도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12	4	국지 도로	106	835도	100-10도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5	4	국지 도로	346	832도	834-2제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13	4	국지 도로	346	832도	834-2제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6	4	국지 도로	48	96-14대	100-10도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14	4	국지 도로	48	96-14대	100-10도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7	4	국지 도로	111	소1-1호선	소3-5호선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15	4	국지 도로	111	소1-1호선	소3-5호선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8	4	국지 도로	142	96-5대	104-17대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16	4	국지 도로	142	96-5대	104-17대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9	4	국지 도로	110	104-16대	104-71대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17	4	국지 도로	110	104-16대	104-71대	일반 도로	-		미조지구

남 해 군 공 보

(2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 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0	4	국지 도로	259	85-6전	104-31대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18	4	국지 도로	259	85-6전	104-31대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11	4	국지 도로	71	104-12대	104-28대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19	4	국지 도로	71	104-12대	104-28대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12	4	국지 도로	54	104-9대	104-84대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20	4	국지 도로	54	104-9대	104-84대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13	4	국지 도로	342	839-1대	639대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21	4	국지 도로	342	839-1대	639대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14	4	국지 도로	420	464-2도	611-8도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22	4	국지 도로	420	464-2도	611-8도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15	4	국지 도로	54	632-6대	638대	일반 도로	-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미조지구
변경	소로	3	23	4	국지 도로	54	632-6대	638대	일반 도로	-		미조지구
기정	소로	3	15	6	국지 도로	280	창선면 수산리 283-10	창선면 수산리 497-38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14-63호 (2014.09.01.)	농어촌도로 (창선201호)
변경	소로	3	24	6	국지 도로	304	창선면 수산리 284-2	창선면 수산리 497-38	일반 도로	-		농어촌도로 (창선201호)
기정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40	서면 노구리 산50-4	서면 노구리 산55-7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14-63호 (2014.09.01.)	농어촌도로 (서면301호)
변경	소로	3	25	6	국지 도로	315	서면 노구리 758-3	서면 노구리 산55-7	일반 도로	-		농어촌도로 (서면301호)
기정	소로	3	17	7.5	보조 간선 도로	250	창선면 대벽리 6-15번지	창선면 대벽리 산9-42번지	일반 도로	-	남해고 제2015-3호 (2015.01.09.)	대벽교차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변경	소로	3	26	7.5	보조간선도로	250	창선면 대벽리 6-15	창선면 대벽리 산9-42	일반도로	-		대벽교차로
기정	소로	3	18	7.5	보조간선도로	226	창선면 대벽리 산9-38번지	창선면 대벽리 6-15번지	일반도로	-	남해고 제2015-3호 (2015.01.09.)	대벽교차로
변경	소로	3	27	7.5	보조간선도로	226	창선면 대벽리 산9-38	창선면 대벽리 6-15	일반도로	-		대벽교차로
신설	소로	3	28	6	국지도로	619	설천면 금음리 1086-2	설천면 문항리 94-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29	6	국지도로	436	설천면 문항리 1211-6	설천면 문항리 376-4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0	6	국지도로	2,816	고현면 대사리 731	고현면 대사리 36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1	6	국지도로	1,395	고현면 포상리 979-2	고현면 옏곡리 866-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2	6	국지도로	1,231	고현면 옏곡리 972-12	고현면 옏곡리 196-9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3	5	국지도로	549	서면 증현리 1526-1	서면 증현리 1441-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4	6	집산도로	2,651	남해읍 평리 826-14	남해읍 입현리 1655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5	6	집산도로	1,545	남해읍 입현리 산90-1	남해읍 평리 산296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6	6	국지도로	1,918	이동면 초음리 2110-4	이동면 초음리 6-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7	6	국지도로	3,887	남면 죽전리 1173-2	남면 당항리 548-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8	6	국지도로	330	남면 당항리 378-6	남면 죽전리 359-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39	6	국지도로	200	남면 당항리 1492-7	남면 당항리 1054-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40	6	국지도로	830	남면 당항리 1477-3	남면 당항리 1228-2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41	6	국지도로	373	삼동면 지족리 280-2	삼동면 지족리 54-6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42	6	국지도로	88	삼동면 지족리 259-2	삼동면 지족리 266-11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43	6	국지도로	89	삼동면 지족리 207-4	삼동면 지족리 1206	일반도로	-		

남 해 군 공 보

(2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 급	류 별	번호	폭원 (m)								
신 설	소 로	3	44	6	국지 도로	1,375	삼동면 물건리 257-2	삼동면 동천리 2056	일반 도로	-		
신 설	소 로	3	45	6	집산 도로	4,484	창선면 수산리 508-2	창선면 지족리 883	일반 도로	-		
신 설	소 로	3	46	6	국지 도로	362	창선면 대벽리 산1-52	창선면 대벽리 178-24	일반 도로	-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중로1-2호선	중로1-3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중로1-9호선	중로1-4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8,980m → 14,647m	○현황반영(기개설된 국립공원내 지방도1024호선)에 따른 노선변경
중로1-17호선	중로1-5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중로2-1호선	중로2-1호선	○노선변경 -L = 1,781m → 1,786m	○기·중점 변경에 따른 노선확장
중로2-2호선	중로2-2호선	○노선변경 -L = 1,293m → 1,064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중로2-4호선	중로2-4호선	○노선변경 -L = 662m → 669m	○대로1-1호선 도로 폭 축소에 따른 노선변경
-	중로2-5호선	○신설 -B = 15m, L = 112m	○현황을 반영한 중로2-2호선 노선분리에 따른 노선신설
중로3-2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중로3-3호선	중로3-2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022m → 787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노선변경
중로3-5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중로3-6호선	-	○노선폐지	○소로1-2와 합병되어 노선폐지
중로3-7호선	중로3-3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중로3-8호선	중로3-4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81m → 86m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중로3-10호선	중로3-5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	중로3-6호선	○신설 -B = 12m -L = 1,136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중로3-7호선	○신설 -B = 12m -L = 1,066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중로3-8호선	○신설 -B = 12m -L = 446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소로1-1호선	소로1-1호선	○노선변경 -L = 313m → 331m	○완충녹지 폐지에 따른 기점변경

남해군공보

(28)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2호선	소로1-2호선	○노선변경 -L = 246m → 395m	○기정 중로3-6과의 합병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1-3호선	소로1-3호선	○노선변경 -L = 716m → 790m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1-5호선	소로1-4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	소로1-6호선	○신설 -B = 11m -L = 529m	○기정 대로3-1호선 노선축소에 따라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소로1-1호선	소로1-7호선	○노선명 변경(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	소로1-8호선	○신설 -B = 10m -L = 1,802m	○기개설된 국립공원내 도로(국도19호선)의 도시계획시설반영
-	소로1-9호선	○신설 -B = 10m -L = 1,269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1-10호선	○신설 -B = 10m -L = 446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1-11호선	○신설 -B = 10m -L = 591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소로2-1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2호선	소로2-1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3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4호선	소로2-2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09m → 112m	○기정 대로3-1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5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6호선	소로2-3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16m → 54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노선축소
소로2-8호선	소로2-4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61m → 269m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9호선	소로2-5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0호선	소로2-6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62m → 440m	○기정 소로2-65와의 합병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11호선	소로2-7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2호선	소로2-8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3호선	소로2-9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4호선	소로2-123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5호선	소로2-10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6호선	소로2-11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7호선	소로2-12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8호선	소로2-13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9호선	소로2-14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302m → 241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노선축소
소로2-20호선	소로2-15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21호선	소로2-16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22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23호선	소로2-17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360m → 363m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24호선	소로2-18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25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26호선	소로2-19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27호선	소로2-20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28호선	소로2-21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72m → 271m	○기정 소로2-22호선 폐지에 따른 노선확장 및 연장 오차정정
소로2-29호선	소로2-22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30호선	소로2-23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32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33호선	소로2-24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448m → 208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노선축소
소로2-34호선	소로2-25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35호선	소로2-26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341m → 332m	○기정 소로2-33호선 폐지에 따른 노선확장 및 연장 오차정정
소로2-36호선	소로2-27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37호선	소로2-28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75m → 133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노선축소
소로2-39호선	소로2-29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40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일부변경후 소로3-2와 합병되어 노선폐지

남 해 군 공 보

(3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41호선	소로2-30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044m → 1,051m	○기정 소로2-87호선 폐지에 따른 노선확장 및 연장 오차정정
소로2-42호선	소로2-31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88m → 123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노선축소
소로2-44호선	소로2-32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28m → 147m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른 노선축소
소로2-45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47호선	소로2-33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90m → 150m	○기정 소로3-3호선의 일부구간 합병을 통한 노선확장
소로2-48호선	소로2-34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49호선	소로2-35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47m → 244m	○기정 소로2-40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노선확장 및 연장오차정정
소로2-51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52호선	소로2-36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53호선	소로2-37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54호선	소로2-38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55호선	소로2-39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56호선	소로2-40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57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59호선	소로2-41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61호선	소로2-42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62호선	소로2-43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64호선	소로2-44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65호선	-	○노선폐지	○기정 소로2-19호선 노선축소에 따라 소로2-4호선과 합병되어 노선폐지
소로2-66호선	소로2-124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67호선	소로2-45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69호선	소로2-46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78m → 224m	○기정 중로3-2호선 폐지에 따라 기개설된 도로를 반영한 선형변경
소로2-70호선	소로2-47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45m → 159m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교통계획을 위한 노선변경
소로2-71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72호선	소로2-48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437m → 1,450m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73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74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75호선	소로2-49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76호선	소로2-50호선	○노선변경 및 관리번호 변경	○기정 소로2-87호선 폐지로 인한 기점부 변경(가각 삭제)
소로2-77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78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80호선	소로2-51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81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82호선	소로2-52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83호선	소로2-53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84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85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86호선	소로2-54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87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88호선	소로2-55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	소로2-56호선	○신설 -B = 8m, L = 134m	○기정 소로2-33호선에서 노선분리됨에 따라 신규지정
소로2-1호선	소로2-57호선	○노선명변경(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2호선	소로2-58호선	○노선명변경(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89호선	소로2-59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568m → 1,801m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90호선	소로2-60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91호선	소로2-61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4,310m → 6,655m	○현황반영(기개설된 국립공원내도로)에 따른 노선확장

남 해 군 공 보

(3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92호선	소로2-62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93호선	소로2-63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94호선	소로2-64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95호선	소로2-65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662m → 1,612m	○현황반영 및 지정 소로2-96과의 합병에 따른 노선 확장
소로2-96호선	-	○노선폐지	○소로2-64과합병되어노선폐지
소로2-98호선	소로2-66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716m → 3,087m	○현황도로반영에따른노선확장
소로2-99호선	소로2-67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422m → 6,274m	○현황반영(기개설된 국립공원내도로)에 따른 노선 확장
소로2-100호선	소로2-68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02호선	소로2-69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03호선	-	○노선폐지	○송정관광지 조성계획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소로2-104호선	소로2-70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05호선	소로2-71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06호선	소로2-72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07호선	소로2-73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7,865m → 7,864m	○현황도로를 반영한 선형변경
소로2-108호선	소로2-74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09호선	소로2-75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10호선	소로2-76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463m → 2,054m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112호선	소로2-77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304m → 2,226m	○지정 소로2-127호선 선형변경에 따른 노선축소
소로2-113호선	소로2-78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16호선	소로2-79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17호선	소로2-80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371m → 1,376m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120호선	소로2-81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22m → 356m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121호선	소로2-82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56m → 54m	○지정 대로3-1호선 노선변경에 따른 노선축소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33)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22호선	소로2-83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127m → 4,526m	○현황반영(현황도로및국립공원내도로)에 따른 노선 확장
소로2-123호선	소로2-84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2,370m → 26,308m	○현황반영(현황도로,국립공원내도로) 및 지정 소로 2-124, 소로2-125와의 합병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124호선	-	○노선폐지	○소로2-83호선과 합병되어 노선폐지
소로2-125호선	-	○노선폐지	○소로2-83호선과 합병되어 노선폐지
소로2-126호선	소로2-85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27호선	소로2-86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0,957m → 30,250m	○현황도로 반영 및 지정 소로2-128, 소로2-135호선과의 합병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128호선	-	○노선폐지	○소로2-85호선과 합병되어 노선폐지
소로2-129호선	소로2-87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6,393m → 41,405m	○현황도로 반영 및 지정 소로2-130호선과의 합병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130호선	-	○노선폐지	○소로2-86호선과 합병되어 노선폐지
소로2-131호선	소로2-88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5,920m → 6,142m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132호선	소로2-89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4,978m → 15,490m	○현황도로 반영 및 지정 소로2-133호선과의 합병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133호선	-	○노선폐지	○소로2-88호선과 합병되어 노선폐지
소로2-134호선	소로2-90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35호선	-	○노선폐지	○소로2-86호선과 합병되어 노선폐지
소로2-136호선	소로2-122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23호선 (농어촌도로설 천101)	소로2-91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60m → 5,201m	○현황도로 반영 및 지정 소로2-124, 소로2-20호선과의 합병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124호선 (농어촌도로남 해101)	-	○노선폐지	○소로2-90호선과 합병되어 노선폐지
소로2-125호선 (농어촌도로이 동215)	소로2-92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62m → 2,485m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2-126호선 (농어촌도로남 해206)	소로2-93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27호선	소로2-94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9호선 (농어촌도로설 천101)	소로2-95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소로2-98호선 신설에 따른 기점부 변경
소로2-20호선 (농어촌도로고 현101)	-	○노선폐지	○소로2-90호선과 합병되어 노선폐지
-	소로2-96호선	○신설 -B = 8m, L = 4,777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남 해 군 공 보

(3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97호선	○신설 -B = 8m, L = 1,079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98호선	○신설 -B = 8m, L = 4,484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99호선	○신설 -B = 8m, L = 4,378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00호선	○신설 -B = 8m, L = 145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01호선	○신설 -B = 8m, L = 2,947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02호선	○신설 -B = 8m, L = 191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03호선	○신설 -B = 8m, L = 57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04호선	○신설 -B = 8m, L = 1,827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05호선	○신설 -B = 8m, L = 2,075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06호선	○신설 -B = 8m, L = 8,864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07호선	○신설 -B = 8m, L = 62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08호선	○신설 -B = 8m, L = 2,158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09호선	○신설 -B = 8m, L = 185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10호선	○신설 -B = 8m, L = 175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11호선	○신설 -B = 9m, L = 882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12호선	○신설 -B = 9m, L = 503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13호선	○신설 -B = 8m, L = 421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14호선	○신설 -B = 8m, L = 304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15호선	○신설 -B = 8m, L = 73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16호선	○신설 -B = 8m, L = 739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17호선	○신설 -B = 8m, L = 111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2-118호선	○신설 -B = 8m, L = 1,770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19호선	○신설 -B = 8m, L = 828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20호선	○신설 -B = 8m, L = 2,346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21호선	○신설 -B = 8m, L = 314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2-125호선	○신설 -B = 8m, L = 317m	○마을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도로신설
소로3-1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3-2호선	소로3-1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3호선	소로3-2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13m → 394m	○소로2-33호선과 일부구간 합병되어 노선축소 및 현황도로를 반영한 선형변경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3-4호선	소로3-3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78m → 288m	○기정 대로3-1호선 폭원축소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3-6호선	-	○노선폐지	○현황여건상 도로개설이 어려운 미개설구간에 대한 노선폐지
소로3-7호선	-	○노선폐지	○현황여건상 도로개설이 어려운 미개설구간에 대한 노선폐지
소로3-8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3-9호선	소로3-4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10호선	소로3-5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51m → 471m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3-11호선	-	○노선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기결정된 노선폐지
소로3-12호선	소로3-6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기정 소로2-40호선 폐지로 인한 노선변경(가각삭제)
소로3-13호선	소로3-7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기정 소로2-87호선 폐지로 인한 기점부 변경(가각삭제)
소로3-14호선	소로3-8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1호선	소로3-9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75m → 284m (미조지구)	○현황도로를 반영한 선형변경 및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2호선	소로3-10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3호선	소로3-11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4호선	소로3-12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5호선	소로3-13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남 해 군 공 보

(3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6호선	소로3-14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7호선	소로3-15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8호선	소로3-16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9호선	소로3-17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10호선	소로3-18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11호선	소로3-19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12호선	소로3-20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13호선	소로3-21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14호선	소로3-22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15호선	소로3-23호선	○노선명 변경 (미조지구)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15호선	소로3-24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80m → 304m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3-16호선	소로3-25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140m → 315m	○현황도로 반영에 따른 노선확장
소로3-17호선	소로3-26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18호선	소로3-27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	소로3-28호선	○신설 -B = 6m, L = 619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29호선	○신설 -B = 6m, L = 436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30호선	○신설 -B = 6m, L = 2,816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31호선	○신설 -B = 6m, L = 1,395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32호선	○신설 -B = 6m, L = 1,231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33호선	○신설 -B = 5m, L = 549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34호선	○신설 -B = 6m, L = 2,651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35호선	○신설 -B = 6m, L = 1,545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36호선	○신설 -B = 6m, L = 1,918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37호선	○신설 -B = 6m, L = 3,887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38호선	○신설 -B = 6m, L = 330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39호선	○신설 -B = 6m, L = 200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40호선	○신설 -B = 6m, L = 830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41호선	○신설 -B = 6m, L = 373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42호선	○신설 -B = 6m, L = 88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43호선	○신설 -B = 6m, L = 89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44호선	○신설 -B = 6m, L = 1,375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45호선	○신설 -B = 6m, L = 4,484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	소로3-46호선	○신설 -B = 6m, L = 362m	○기개설된 도로의 도시계획시설 반영

나. 항만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어항법)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물건항	국가어항	삼동면 물건리	1,037,065	-	1,037,065	-	건교부고시 (1986.3.1)
기정	2	미조항	국가어항	미조면 미조리	1,048,540	-	1,048,540	-	건교부고시 (1971.12.21)
기정	3	선소항	지방어항	남해읍 선소리	117,067	-	117,067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4	원천항	지방어항	이동면 신전리	134,528	-	134,528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5	지족항	지방어항	삼동면 지족리	32,562	-	32,562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6	은점항	지방어항	삼동면 물건리	220,140	-	220,140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7	항도항	지방어항	미조면 송정리	152,888	-	152,888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8	항촌항	지방어항	남면 선구리	136,476	-	136,476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9	유포항	지방어항	서면 노구리	49,913	-	49,913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10	서상항	지방어항	서면 서상리	68,825	-	68,825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11	동갈화항	지방어항	고현면 갈화리	68,396	-	68,396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12	당저항	지방어항	창선면 당저리	114,349	-	114,349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13	장포항	지방어항	창선면 진동리	353,826	-	353,826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14	적량항	지방어항	창선면 진동리	428,588	-	428,588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15	냉천항	지방어항	창선면 당항리	76,354	-	76,354	경고제2009-63호 (2009.02.05.)	

남 해 군 공 보

(38)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기정	16	광천항	지방어항	창선면 광천리	46,161	-	46,161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17	심천항	어촌 정주어항	남해읍 심천리	112,023	-	112,023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18	토촌항	어촌 정주어항	남해읍 토촌리	77,903	-	77,903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19	섬호항	어촌 정주어항	남해읍 입현리	55,054	-	55,054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20	초양항	어촌 정주어항	이동면 초음리	73,156	-	73,156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21	광두항	어촌 정주어항	이동면 초음리	29,744	-	29,744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22	고모항	어촌 정주어항	이동면 초음리	34,282	-	34,282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23	용소항	어촌 정주어항	이동면 용소리	37,285	-	37,285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24	화계항	어촌 정주어항	이동면 화계리	14,689	-	14,689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25	금평항	어촌 정주어항	이동면 신전리	64,930	-	64,930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26	고잔항	어촌 정주어항	삼동면 영지리	40,038	-	40,038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27	북섬항	어촌 정주어항	삼동면 영지리	61,893	-	61,893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28	와현항	어촌 정주어항	삼동면 지족리	39,094	-	39,094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29	지족2항	어촌 정주어항	삼동면 지족리	26,017	-	26,017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30	금송항	어촌 정주어항	삼동면 금송리	50,007	-	50,007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31	전도항	어촌 정주어항	삼동면 금송리	69,853	-	69,853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32	북병항	어촌 정주어항	삼동면 금송리	30,644	-	30,644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33	노루목항	어촌 정주어항	삼동면 동천리	77,425	-	77,425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34	양화금항	어촌 정주어항	삼동면 동천리	54,343	-	54,343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35	대지포항	어촌 정주어항	삼동면 물건리	30,691	-	30,691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36	노구항	어촌 정주어항	미조면 송정리	27,804	-	27,804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37	가인포항	어촌 정주어항	미조면 송정리	24,267	-	24,267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38	초전항	어촌 정주어항	미조면 송정리	32,708	-	32,708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39	답하항	어촌 정주어항	미조면 미조리	48,695	-	48,695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40	설리항	어촌 정주어항	미조면 송정리	33,050	-	33,050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41	송남항	어촌 정주어항	미조면 송정리	32,804	-	32,804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42	조도항	어촌 정주어항	미조면 미조리	62,791	-	62,791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43	호도항	어촌 정주어항	미조면 미조리	25,804	-	25,804	경고제2009-63호 (2009.02.05.)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39)

기정	44	두곡항	어촌 정주어항	남면 당항리	44,465	-	44,465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45	월포항	어촌 정주어항	남면 석교리	19,850	-	19,850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46	속호항	어촌 정주어항	남면 석교리	43,490	-	43,490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47	흥현항	어촌 정주어항	남면 흥현리	49,763	-	49,763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48	가천항	어촌 정주어항	남면 흥현리	56,183	-	56,183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49	선구항	어촌 정주어항	남면 선구리	31,006	-	31,006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50	사촌항	어촌 정주어항	남면 임포리	39,767	-	39,767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51	유구항	어촌 정주어항	남면 평산리	51,993	-	51,993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52	평산2항	어촌 정주어항	남면 평산리	24,200	-	24,200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53	평산항	어촌 정주어항	남면 평산리	75,082	-	75,082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54	덕월항	어촌 정주어항	남면 덕월리	33,345	-	33,345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55	구미항	어촌 정주어항	남면 덕월리	42,014	-	42,014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56	장항항	어촌 정주어항	서면 서상리	35,859	-	35,859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57	예계항	어촌 정주어항	서면 서상리	18,215	-	18,215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58	상남항	어촌 정주어항	서면 작장리	25,704	-	25,704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59	작장항	어촌 정주어항	서면 작장리	16,599	-	16,599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60	남상항	어촌 정주어항	서면 남상리	17,452	-	17,452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61	염해항	어촌 정주어항	서면 남상리	80,297	-	80,297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62	노구항	어촌 정주어항	서면 노구리	25,189	-	25,189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63	정포항	어촌 정주어항	서면 정포리	55,941	-	55,941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64	화전항	어촌 정주어항	고현면 갈화리	114,218	-	114,218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65	서갈화항	어촌 정주어항	고현면 갈화리	21,337	-	21,337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66	목동항	어촌 정주어항	설천면 금음리	98,505	-	98,505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67	문항항	어촌 정주어항	설천면 문항리	79,661	-	79,661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68	모천항	어촌 정주어항	설천면 문항리	161,430	-	161,430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69	고사항	어촌 정주어항	설천면 진목리	33,997	-	33,997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70	진목항	어촌 정주어항	설천면 진목리	42,251	-	42,251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71	식포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가인리	40,797	-	40,797	경고제2009-63호 (2009.02.05.)

남 해 군 공 보

(4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기정	72	동대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동대리	50,197	-	50,197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73	근유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동대리	27,042	-	27,042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74	당항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당항리	31,034	-	31,034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75	단항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대벽리	68,528	-	68,528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76	후리 망골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대벽리	20,680	-	20,680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77	대벽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대벽리	48,677	-	48,677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78	소벽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울도리	31,913	-	31,913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79	울도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울도리	95,612	-	95,612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80	고순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울도리	51,011	-	51,011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81	서대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서대리	98,995	-	98,995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82	보천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서대리	36,496	-	36,496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83	사포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광천리	37,181	-	37,181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84	신흥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지족리	93,882	-	93,882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85	지족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지족리	45,149	-	45,149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86	구도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부윤리	53,056	-	53,056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87	대곡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진동리	53,590	-	53,590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88	천포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가인리	97,151	-	97,151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89	가인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가인리	80,274	-	80,274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90	고두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가인리	26,673	-	26,673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91	연포항	어촌 정주어항	창선면 가인리	194,730	-	194,730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92	동비항	어촌 정주어항	설천면 비란리	40,516	-	40,516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93	도마항	어촌 정주어항	고현면 도마리	80,922	-	80,922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94	이어항	어촌 정주어항	고현면 이어리	105,821	-	105,821	경고제2009-63호 (2009.02.05.)	
기정	95	금포항	어촌 정주어항	상주면 상주리	39,153	-	39,153	경고제2009-63호 (2009.02.05.)	

다.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남해읍 서변리 491 일원	6,580	-	6,580	경고제391호 (1993.11.25.)	
기정	2	주차장	남해읍 북변리 324 일원	6,860	-	6,860	경고 제391호 (1993.11.25.)	
기정	3	주차장	남면 흥현리 997-4 일원	3,423	-	3,423	남해고 제2014-75호 (2014.10.17.)	
기정	4	주차장	남면 선구리 1050-1 일원	1,321	-	1,321	남해고 제2015-61호 (2015.07.16.)	
변경	5	주차장	미조면 미조리 102-10 일원	1,884	-	1,884	남해고 제2009-13호 (2009.02.05.)	
기정	6	주차장	이동면 신전리 산118-13 일원	3,677	-	3,677	남해고 제2016-32호 (2016.05.04.)	
신설	7	주차장	상주면 상주리 1227 일원	-	증)6,677	6,677	남해고 제2008-21호 (2008.05.22.)	
신설	8	주차장	상주면 상주리 1241-1 일원	-	증)4,679	4,679	남해고 제2008-21호 (2008.05.22.)	
신설	9	주차장	창선면 대벽리 160 일원	-	증)18,280	18,280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주차장	○관리번호 변경 - 1 → 5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7	주차장	○신설 A=6,677㎡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결정된 기반시설을 신규로 결정코자 함
8	주차장	○신설 A=4,679㎡	"
9	주차장	○신설 A=18,280㎡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수립된 주차장을 신규로 지정코자 함

라. 자동차 정류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자동차 정류장	여객자동차 터미널	남해읍 북변리	9,000	-	9,000	경고 제391호 (1993.11.25.)	

② 공간시설

가.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남해읍 차산리	1,500	-	1,500	경고 제8호 (2000.01.15.)	

나.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남산 공원	근린공원	남해읍 서변리	267,040	-	267,040	건고 제406호 (1973.10.12.)	
기정	2	봉황산 공원	근린공원	남해읍 아산리	303,920	-	303,920	건고 제406호 (1973.10.12.)	
기정	3	차산공원	근린공원	남해읍 차산리	263,297	-	263,297	건고 제406호 (1973.10.12.)	
기정	4	선소공원	근린공원	남해읍 선소리	76,490	-	76,490	건고 제406호 (1973.10.12.)	
기정	5	아산공원	어린이공원	남해읍 아산리 408-3 일원	1,500	-	1,500	건고 제391호 (1993.11.25.)	
폐지	6	남변1 공원	어린이공원	남해읍 남변리 244 일원	1,490	감)1,49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남변1공원	○폐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제4항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의 군계획시설 해제권고에 따라 주변 가로망 폐지로 인한 공원폐지

다. 유원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1	유원지	삼동면 봉화리 산506번지 일원	-	증)103,181	103,181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유원지	○신설 (A=103,181㎡)	◦당초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으로 경과조치되어 기 결정된 지역에 대하여, 현재 조성되어 이용중인 자연학습장의 이용형태와 부합하며 다양한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금회 군계획시설(유원지)로 신규 지정코자 함

1)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조서

가) 총괄표

구 분	면 적(㎡)	법 적 기 준
유원지 면적	103,181.00	
건축면적	2,021.64	유원지 면적의 1.95%
건축연면적	2,526.22	유원지 면적의 2.45%

나) 토지이용계획

구 분	부지면적(㎡)	구성비(%)	비 고
계	103,181	100.0	
유희시설	1,030	1.0	
휴양시설	1,356	1.3	
특수시설	11,353	11.0	
편익시설	101	0.1	
관리시설	11,560	11.2	
녹 지	77,781	75.4	

남해군공보

(4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다) 세부시설 결정조서

구 분		부지면적(㎡)	시설규모(㎡)		비고
			건축면적	연면적	
합 계		103,181	2,021.64	2,526.22	
유희 시설	소계	1,030	-	-	
	미니썰매장	1,030	-	-	
휴양 시설	소계	1,356	-	-	
	모험놀이터	1,356	-	-	
특수 시설	소계	11,353	1,856.04	2,360.62	
	동물/식물원	1,146	-	-	
	자생화단지	2,655	-	-	
	광장	452	-	-	
	나비주제관	2,765	1,626.80	2,131.38	
	나비증식관	410	229.24	229.24	
	야생화단지	3,925	-	-	
편의 시설	소계	101	62.97	62.97	
	매점/음식점	101	62.97	62.97	
관리 시설	소계	11,560	102.63	102.63	
	도로	7,303	-	-	
	주차장1	2,262	-	-	
	주차장2	153	-	-	
	오수처리	158	-	-	
	매표소	58	55.42	55.42	
	화장실/창고	123	47.21	47.21	
	장애인편의시설	26	-	-	
	입구광장	1,477	-	-	
녹지	77,781	-	-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45)

라) 도로 결정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신설	소로	2	1	8	국지 도로	212	삼동면 봉화리 산508-5	삼동면 봉화리 산507-4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1	1.8~ 4.0	특수 도로	444	삼동면 봉화리 산507-2	소로3-2	보행로			
신설	소로	3	2	4	특수 도로	135	삼동면 봉화리 산519-2	소로3-4	보행로			
신설	소로	3	3	3.8	특수 도로	18	소로3-2	삼동면 봉화리 산519-2	보행로			
신설	소로	3	4	3	특수 도로	141	삼동면 봉화리 산507-2	소로3-1	보행로			
신설	소로	3	5	2.3	특수 도로	37	소로3-4	소로3-1	보행로			
신설	소로	3	6	2.3	특수 도로	435	소로3-1	소로3-1	보행로			
신설	소로	3	7	1.5	특수 도로	870	소로3-6	소로3-6	보행로			

■ 변경 사유서

변경전도로명	변경후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	소로2-1호선	○신설(B=8, L=212)	○유원지 결정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3-1호선	○신설(B=1.8~4, L=444)	○유원지 결정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3-2호선	○신설(B=3.8, L=135)	○유원지 결정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3-3호선	○신설(B=3.8, L=18)	○유원지 결정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3-4호선	○신설(B=2.9, L=141)	○유원지 결정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3-5호선	○신설(B=2.3, L=37)	○유원지 결정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3-6호선	○신설(B=2.3, L=435)	○유원지 결정에 따른 노선신설
-	소로3-7호선	○신설(B=1.5, L=870)	○유원지 결정에 따른 노선신설

③ 유통 및 공급시설

가.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아산정수장	남해읍 아산리 1052-2 일원	6,190	-	6,190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2	봉성정수장	남해읍 평현리 1624-1	3,531	-	3,531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남 해 군 공 보

(4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3	난음정수장	이동면 난음리 산116-2	5,312	-	5,312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4	지족정수장	삼동면 지족리 551-2	1,266	-	1,266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5	향도정수장	미조면 송정리 산125-4	3,447	-	3,447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변경	6	남면정수장	남면 당항리 1070-5 일원	6,146	-	6,146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변경	7	대곡정수장	고현면 대곡리 953 일원	3,481	-	3,481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8	창선정수장	창선면 옥천리 905 일원	4,321	-	4,321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변경	9	선원정수장	고현면 포상리 1444-1	407	-	407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10	노구정수장	서면 노구리 26-1	332	-	332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11	봉성가압장	남해읍 입현리 1081	270	-	270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12	창선가압장	창선면 상죽리 603-4	142	-	142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13	남면가압장	남면 평산리 543-1	61	-	61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14	연곡가압장	창선면 오용리 341-1	350	-	350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15	송정배수지	미조면 송정리 775	331	-	331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변경	16	봉성수원지	남해읍 평현리 1501 일원	48,628	-	48,628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17	난음수원지	이동면 난음리 산127-3 일원	30,450	-	30,450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변경	18	향도수원지	미조면 송정리 산114-12 일원	75,331	-	75,331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9	남면수원지	남면 당항리 산58-10 일원	31,068	-	31,068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20	대곡수원지	고현면대곡리 1171-1일원	27,452	-	27,452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21	포상수원지	고현면 포상리 산114 일원	101,538	-	101,538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변경	22	동천배수지	삼동면 동천리 산398-2 일원	1,336	감)454	882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변경	23	벽련배수지	상주면 양아리 151-1 일원	335	증)528	863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24	창선배수지	창선면 옥천리 904-1 일원	376	-	376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25	율도배수지	창선면 율도리 61 일원	973	-	973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26	율도가압장	창선면 동대리 1-3 일원	117	-	117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기정	27	금음가압장	설천면 금음리 770-1 일원	96	-	96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변경	28	무림가압장	이동면 무림리 산184-2	97	증)300	397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변경	29	동천가압장	삼동면 동천리 산398-2 일원	283	감)42	241	남해고 제2012-43호 (2012.05.17.)	
신설	30	작장가압장	서면 작장리 113-3	-	증)40	40		
신설	31	성산가압장	고현면 도마리 640-25	-	증)40	40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남면정수장	○위치변경	◦위치착오에 따른 정정
7	대곡정수장	○시설명 변경	◦시설명 변경(도마정수장→대곡정수장)
9	선원정수장	○시설명 변경	◦시설명 변경(고현정수장→선원정수장)
16	봉성수원지	○시설명 변경	◦시설명 변경(평현수원지→봉선수원지)
18	항도수원지	○시설명 변경	◦시설명 변경(송정수원지→항도수원지)
19	남면수원지	○시설명 변경	◦시설명 변경(당항수원지→남면수원지)
22	동천배수지	○면적감소(감454㎡) A = 1,336㎡ → 882㎡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23	벽련배수지	○면적증가(증528㎡) A = 335㎡ → 863㎡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28	무림가압장	○면적증가(증300㎡) A = 97㎡ → 397㎡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29	동천가압장	○면적감소(감42㎡) A = 283㎡ → 241㎡	◦시설명 변경(송수 및 봉화가압장→동천가압장)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30	작장가압장	○ 신설 A=40㎡	◦가압장 신설
31	성산가압장	○ 신설 A=40㎡	◦가압장 신설

나.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남해시장	상설 시장	남해읍 북변리	5,230	-	5,230	경고 제101호 (1978.04.20.)	
신설	2	시장	정기 시장	고현면 대사리 768 일원	-	증)2,315	2,315	경고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시장	○신설 A=2,315㎡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결정된 시장을 신규로 결정코자 함

4 공공·문화 체육시설

가.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남해 초등학교	초등학교	남해읍 북변리	16,533	감)59	16,474	경고 제391호 (1993.11.25.)	
기정	2	해양 초등학교	초등학교	남해읍 남변리	15,420	-	15,420	경고 제391호 (1993.11.25.)	
변경	3	남해 중학교	중학교	남해읍 북변리	18,837	감)3,100	15,737	경고 제234호 (1994.11.01.)	
변경	4	남해 여중학교	중학교	남해읍 서변리	11,890	-	11,890	경고 제112호 (1985.07.30.)	
기정	5	남해제일 고등학교	고등학교	남해읍 북변리	38,282	-	38,282	경고 제109호 (1996.07.01.)	
신설	7	이동 초등학교	초등학교	이동면 무림리, 석평리 일원	-	증)15,401	15,401	남해고 제1995-191호 (1995.09.05.)	
신설	8	이동 중학교	중학교	이동면 무림리 1315 일원	-	증)24,393	24,393	남해고 제1995-191호 (1995.09.05.)	
		남해 고등학교	고등학교						
신설	9	상주 초등학교	초등학교	상주면 상주리 1174 일원	-	증)11,669	11,669	경고 제2008-156호 (2008.04.24.)	
신설	10	상주 중학교	중학교	상주면 상주리 590-1 일원	-	증)8,853	8,853	경고 제2008-156호 (2008.04.24.)	
신설	11	지족 초등학교	초등학교	삼동면 지족리 255 일원	-	증)10,850	10,850	경고 (1992.04.)	
신설	12	남수 중학교	중학교	삼동면 지족리 192-1 일원	-	증)30,668	30,668	경고 (1992.04.)	
		경남해양 고등학교	고등학교						
기정	13	삼동 초등학교	초등학교	삼동면 동천리 1104-2 일원	14,915	-	14,915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기정	14	물건 중학교	중학교	삼동면 물건리 166-1 일원	9,700	-	9,7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5	미조 초등학교	초등학교	미조면 미조리 465-1 일원	12,535	-	12,535	남해고 제2003-15호 (2003.06.03.)	
기정	16	미조 중학교	중학교	미조면 미조리 400 일원	23,970	-	23,97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7	해성 중학교	중학교	남면 평산리 315 일원	29,840	증)5,269	35,109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남 해 군 공 보

(5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18	남명 초등학교	초등학교	남면 당항리 1410 일원	-	증)15,027	15,027	남해고 제1997-54호 (1997.11.12.)	
신설	19	성명 초등학교	초등학교	서면 서상리 655-1 일원	-	증)16,927	16,927	남해고 제1994-85호 (1994.04.20.)	
신설	20	고현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현면 대사리 618 일원	-	증)19,905	19,905	남해고 제1997-15호 (1997.04.08.)	
기정	21	고현 중학교	중학교	고현면 포상리 152 일원	15,210	-	15,21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신설	22	정보산업 고등학교	고등학교	고현면 대사리 741 일원	-	증)18,067	18,067	남해고 제1997-15호 (1997.04.08.)	
기정	23	도마 초등학교	초등학교	고현면 도마리 137 일원	15,610	-	15,61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기정	24	설천 초등학교	초등학교	설천면 남양리 71 일원	13,125	-	13,125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기정	25	설천 중학교	중학교	설천면 금음리 795 일원	12,365	-	12,365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기정	26	창선 초등학교	초등학교	창선면 상죽리 265 일원	16,705	-	16,705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기정	27	창선 중학교	중학교	창선면 상죽리 170 일원	21,310	-	21,31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창선 고등학교	고등학교						
기정	28	꽃내 중학교	중학교	삼동면 동천리 1105 일원	23,560	-	23,560	남해고 제2016-33호 (2016.05.04.)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남해초등학교	○면적감소(감59㎡) A = 16,533㎡ → 16,474㎡	○현황여건을 반영하여 학교시설 제척
3	남해중학교	○관리번호 변경 - 4 → 3 ○면적감소(감3,100㎡) A = 18,837㎡ → 15,737㎡	○현황여건을 반영하여 학교구역 조정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51)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남해여중학교	○관리번호 변경 - 5 → 4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7	이동초등학교	○신설 A=15,401㎡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결정된 학교를 신규로 결정 코자 함
8	이동중학교 남해고등학교	○신설 A=24,393㎡	"
9	상주초등학교	○신설 A=11,669㎡	"
10	상주중학교	○신설 A=8,853㎡	"
11	지족초등학교	○신설 A=10,850㎡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결정된 학교를 신규로 결정 코자 함
12	남수중학교 경남해양고등학교	○신설 A=30,668㎡	"
15	미조초등학교	○관리번호 변경 - 1 → 15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7	해성중학교	○면적증가(증5,269㎡) A = 29,840㎡ → 35,109㎡	◦현재 학교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기결정된 학교경계를 결정(변경)하고자 함
18	남명초등학교	○신설 A=15,027㎡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결정된 학교를 신규로 결정 코자 함
19	성명초등학교	○신설 A=16,927㎡	"
20	고현초등학교	○신설 A=19,905㎡	"
22	정보산업고등학교	○신설 A=18,067㎡	"

나.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남해군청	군 청	남해읍 서변리	8,442	-	8,442	경고 제391호 (1993.11.25.)	
변경	2	남해보건소	보건소	남해읍 차산리 645-1 일원	5,790	증)1,30 5	7,095	경고 제116호 (1997.05.01.)	
기정	3	종합사회복지관	복지관	남해읍 아산리 355 일원	3,442	-	3,442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4	농업기술센터	군 청	이동면 다정리 906 일원	12,538	-	12,538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기정	5	부산기상대 관측소	기상청	이동면 다정리 797-2 일원	1,297	-	1,297	-	
기정	6	남해소방서	소방서	남해읍 평리 1092-1 일원	8,598	-	8,598	경고 제2010-637호 (2010.07.01.)	
기정	7	선거관리사무소	공공청사	남해읍 심천리 980-3 일원	1,650	-	1,650	경고 제2011-135호 (2011.04.21.)	
변경	8	미조면사무소	면사무소	미조면 미조리 102	1,397	증)632	2,029	남해고 제2003-15호 (2009.02.05.)	
변경	9	미조파출소	파출소	미조면 미조리 105-14	559	-	559	경고 제2009-13호 (2009.02.05.)	
신설	10	미조우체국	우체국	미조면 미조리 102	-	증)792	792	-	
신설	11	미조보건지소	보건지소	미조면 미조리 104-75	-	증)260	260	-	
신설	12	이동면사무소	면사무소	무림리 1021-1 일원	-	증)1,930	1,930	남해고 제1995-191호	
신설	13	이동치안센터	파출소	무림리 921-3	-	증)403	403	남해고 제1995-191호	
신설	14	이동우체국	우체국	무림리 1133-3 일원	-	증)697	697	남해고 제1995-191호	
신설	15	이동보건지소	보건지소	무림리 1042 일원	-	증)1,904	1,904	남해고 제1995-191호	
신설	16	삼동면사무소	면사무소	삼동면 지족리 257-2 일원	-	증)2,070	2,070	-	
신설	17	삼동파출소	파출소	삼동면 지족리 286 일원	-	증)610	610	-	
신설	18	삼동우체국	우체국	삼동면 지족리 258-3	-	증)473	473	-	
신설	19	삼동보건지소	보건지소	삼동면 지족리 266-10 일원	-	증)1,188	1,188	-	
신설	20	남면사무소	면사무소	남면 당항리 1487 일원	-	증)4,030	4,030	남해고 제1997-54호	
신설	21	남면파출소	파출소	남면 당항리 1485-3 일원	-	증)457	457	남해고 제1997-54호	
신설	22	남면보건지소	보건지소	남면 당항리 1441-16 일원	-	증)2,250	2,250	남해고 제1997-54호	
신설	23	남면 소방파출소	소방 파출소	남면 당항리 1440 일원	-	증)2,025	2,025	경고 제2009-13호 (2009.02.05.)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4	서면사무소	면사무소	서면 서상리 522-3 일원	-	증)2,253	2,253	남해고 제1994-85호 (1994.04.20.)	
신설	25	서면우체국	우체국	서면 서상리 1185-5 일원	-	증)212	212	남해고 제1994-85호 (1994.04.20.)	
신설	26	서면치안센터	파출소	서면 서상리 683 일원	-	증)958	958	남해고 제1995-174호 (1995.08.17.)	
신설	27	고현면사무소	면사무소	고현면 대사리 703-6 일원	-	증)2,449	2,449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신설	28	고현파출소	파출소	고현면 대사리 911-8	-	증)366	366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신설	29	고현소방지서	소방 파출소	고현면 대사리 911-8 일원	-	증)293	293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신설	30	고현 우체국	우체국	고현면 대사리 758-3 일원	-	증)259	259	경고 제1995-212호 (1995.10.05.)	
신설	31	고현보건지소	보건 지소	고현면 대사리 674 일원	-	증)1,259	1,259	경고 제2009-13호 (2009.02.05.)	
신설	32	상주면사무소	면사무소	상주면 상주리 1061-3 일원	-	증)1,890	1,890	남해고 제2008-21호 (2008.05.22.)	
신설	33	상주치안센터	파출소	상주면 상주리 1042-2 일원	-	증)861	861	남해고 제2008-21호 (2008.05.22.)	
신설	34	상주보건지소	보건지소	상주면 상주리 1161-4 일원	-	증)884	884	남해고 제2008-21호 (2008.05.22.)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남해보건서	○면적증가(증1,305㎡) A=5,790㎡→7,095㎡	○현재 보건소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기결정된 부지경계를 결정(변경)하고자 함
8	미조면사무소	○관리번호 변경(1→8) ○면적증가(증632㎡) A=1,397㎡→2,029㎡	○현황여건을 반영한 면사무소 위치변경 및 면적변경
9	미조파출소	○관리번호 변경 - 2 → 9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남 해 군 공 보

(5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미조우체국	○신설 A=792㎡	◦기조성된 공공청사를 신규로 결정코자 함
11	미조보건지소	○신설 A=260㎡	◦기조성된 공공청사를 신규로 결정코자 함
12	이동면사무소	○신설 A=1,930㎡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결정된 공공청사를 신규로 결정코자 함
13	이동치안센터	○신설 A=403㎡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결정된 공공청사를 신규로 결정코자 함
14	이동우체국	○신설 A=697㎡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결정된 공공청사를 신규로 결정코자 함
15	이동보건지소	○신설 A=1,904㎡	"
16	삼동면사무소	○신설 A=2,070㎡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조성된 공공청사를 신규로 결정코자 함
17	삼동파출소	○신설 A=610㎡	"
18	삼동우체국	○신설 A=473㎡	"
19	삼동보건지소	○신설 A=1,188㎡	"
20	남면사무소	○신설 A=4,030㎡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결정된 공공청사를 신규로 결정코자 함
21	남면파출소	○신설 A=457㎡	"
22	남면보건지소	○신설 A=2,250㎡	"
23	남면소방파출소	○신설 A=2,025㎡	"
24	서면사무소	○신설 A=2,253㎡	"
25	서면우체국	○신설 A=212㎡	"
26	서면치안센터	○신설 A=958㎡	"
27	고현면사무소	○신설 A=2,449㎡	"
28	고현파출소	○신설 A=366㎡	"
29	고현소방지서	○신설 A=293㎡	"
30	고현우체국	○신설 A=259㎡	"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1	고현보건지소	○신설 A=1,259㎡	"
32	상주면사무소	○신설 A=1,890㎡	"
33	상주치안센터	○신설 A=861㎡	"
34	상주보건지소	○신설 A=884㎡	"

다. 문화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유배박물관	문화시설	남해읍 남변리 545 일원	37,589	-	37,589	남해고제2009-37호 (2009.4.16)	
신설	2	종합복지회관	문화시설	상주면 상주리 1059-1 일원	-	증)1,857	1,857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종합복지회관	○신설 A=1,857㎡	◦쾌적하고 안정된 농어촌 정주생활공간의 조성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지역 내 균형발전촉진과 지역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금회 종합복지회관을 신설 하고자 함

라.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남해읍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남해읍 서변리 212번지 일원	29,929	-	29,929	경고 제194호 (1985.12.5)	
기정	2	남면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남면 당항리 1400번지 일원	25,903	-	25,903	남해고 제2002-36호 (2002.10.1)	
기정	3	미조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미조면 송정리 1284번지 일원	26,161	-	26,161	남해고 제2006-34호 (2006.6.29)	
기정	4	서상 스포츠파크	종합 운동시설	서면 서상리 1182-1 일원	223,005	-	223,005	경고 제1998-49호 (1998.3.14)	
신설	5	상주 체육시설	공설운동장	상주면 상주리 1860 일원	-	증)82,830	82,830	환경부고시 제2004-67호 (2004.05.11.)	
변경	6	체육시설	골프장	창선면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1,331,102	-	1,331,102	남해고 제2010-32호 (2010.5.31)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상주체육시설	○신설 A=82,830㎡	◦본 대상지는 2004년 5월 한려해상국립공원내 체육시설로 기 결정되었으나 국립공원구역에서 해제된 이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이 누락되어 금회 군계획시설로 신규 지정하고자 함
6	체육시설	○관리번호 변경 - 7 → 6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마. 연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연구시설	이동면 다정리 872 일원	16,326	-	16,326	남해고 제2009-10호 (2009.2.2)	

바.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연꽃어린이집	남해읍 북변리	1,296	-	1,296	경고 제116호 (1997.5.1)	

㉔ 방재시설

가. 하천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기정	1	평천	지방2급	남해읍 평리 (내금저수지)	남해읍 평리 (봉천합류점)	-	1.88	5~30	62,500	경고 제271호 (1982.11.29.)	봉천합류
기정	2	봉천	지방2급	남해읍 아산리	남해읍 남변리	-	2.3	7~40	57,5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기정	3	입현천	지방2급	이동면 다정리	남해읍 입현리	-	2.2	13~22	36,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기정	4	무림천	지방2급	이동면 무림리 (성현천합류점)	이동면 무림리 (남해합류점)	-	2.0	12~29	78,000	경고 제271호 (1982.11.29.)	
기정	5	화천	지방2급	삼동면 봉화리 (내산저수지)	삼동면 동천리 (남해안 하구)	-	7.5	30~45	371,859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기정	6	삼화천	지방2급	삼동면 봉화리	삼동면 (화천합류점)	-	1.5	18~20	23,408 (13,186)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57)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기정	7	영지천	지방2급	삼동면 영지리	삼동면 영지리 (남해합류점)	-	2.55	12~20	62,610	경고 제271호 (1982.11.29.)	
기정	8	상덕천	지방2급	남면 상가리 1221답	남면 상가리 433-10전	-	2.7	8~30	50,083 (21,794)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기정	9	임포천	지방2급	남면 임포리	남면 선구리	-	2	7~30	67,615	경고 제271호 (1982.11.29.)	
기정	10	정포천	지방2급	서면 중현리 121-2유	서면 정포리 1077-30제	-	2.85	6~24	41,695 (38,283)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기정	11	대사천	지방2급	고현면 대사리	고현면 포상리	-	2.33	18~34	47,733 (40,045)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기정	12	대곡천	지방2급	고현면 대곡리	고현면 도마리	-	2.12	18~21	48,492 (20,085)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기정	13	창선천	지방2급	옥천리 820유 옥천저수지	수산리103- 1제 동대만	-	3.97	4~30	78,944 (65,053)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기정	14	서상천	지방2급	서면 서상리	서면 대정리	-	4.5	25~81	32,833 (160,031)	경고 제271호 (1982.11.29.)	하천예정지 (지정면적)
기정	27	북변천	소하천	남해읍 북변리 336-1	남해읍 남변리 118-1	-	0.85	7	5,9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27	북변천	소하천	남해읍 북변리 362-8	남해읍 남변리 118-2	-	0.57	3~10	6,627		
기정	28	구 시골천	소하천	남해읍 심천리 1275	남해읍 심천리 964	-	1.00	6	6,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28	구 시골천	소하천	남해읍 심천리 1123	남해읍 심천리 964	-	0.90	2~8	8,458		
기정	29	심천천	소하천	남해읍 심천리 1149	남해읍 심천리 903	-	1.95	11	21,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29	심천천	소하천	남해읍 심천리 1149	남해읍 심천리 903	-	1.90	4~19	26,462		
기정	30	아산천	소하천	남해읍 아산리 671	남해읍 서변리 275-1	-	1.17	11~12	13,2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0	아산천	소하천	남해읍 아산리 606-1	남해읍 서변리 275-1	-	1.16	4~17	12,281		

남 해 군 공 보

(58)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기정	31	목골천	소하천	남해읍 평현리 684-2	남해읍 평현리 1344	-	0.75	9~12	7,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1	목골천	소하천	남해읍 평현리 789	남해읍 평현리 102	-	1.04	3~20	9,418		
기정	32	양지천	소하천	남해읍 평현리 158-1	남해읍 평현리 167	-	1.50	10	15,01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2	양지천	소하천	남해읍 평현리 834	남해읍 평현리 167	-	1.55	4~18	19,414		
기정	33	오동천	소하천	남해읍 아산리 1322	남해읍 아산리 1225	-	0.90	7.4~2 6.1	20,9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3	오동천	소하천	남해읍 아산리 1332	남해읍 아산리 1225	-	0.99	8~42	25,721		
기정	34	봉성천	소하천	남해읍 평현리 1610-1	서면 대정리 634	-	2.45	7.5~2 2.2	47,2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4	봉성천	소하천	남해읍 평현리 1610-1	서면 대정리 634	-	2.43	11~42	54,159		
기정	35	신비천	소하천	남해읍 평리 543	남해읍 평리 795	-	0.70	3.4~6. 1	4,4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5	신비천	소하천	남해읍 평리 543	남해읍 평리 795	-	0.70	3~8	4,921		
기정	36	골안천	소하천	남해읍 평리 1576	남해읍 평리 826-5	-	1.00	9	9,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6	골안천	소하천	남해읍 평리 1574	남해읍 평리 826-5	-	1.08	4~11	10,594		
기정	37	석평천	소하천	이동면 석평리 산66-2	이동면 석평리 818-6	-	1.90	3~14. 7	20,14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7	석평천	소하천	이동면 석평리 933	이동면 석평리 818-6	-	1.70	8~10	22,417		
기정	38	봉곡천	소하천	이동면 무림리 산106-1	이동면 무림리 177	-	1.00	15~18	15,1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8	봉곡천	소하천	이동면 무림리 24	이동면 무림리 177	-	0.83	11~28	10,408		
기정	39	성현천	소하천	이동면 무림리 1771	이동면 무림리 344	-	1.25	2.5~1 5.7	9,81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9	성현천	소하천	이동면 무림리 1769	이동면 무림리 344	-	1.20	11~48	11,836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59)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기정	40	원천천	소하천	이동면 신전리 1317-6	이동면 신전리 1092-4	-	0.57	13~14	7,916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0	원천천	소하천	이동면 신전리 1317-6	이동면 신전리 1092-4	-	0.75	6~35	1,551		
기정	41	화계천	소하천	이동면 용소리 69	이동면 용소리 380-3	-	1.25	13	16,2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1	화계천	소하천	이동면 용소리 6	이동면 용소리 380-3	-	1.51	2~16	17,673		
기정	42	안골천	소하천	이동면 용소리 881	이동면 용소리 529	-	1.30	6	7,8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2	안골천	소하천	이동면 용소리 881	이동면 용소리 529	-	1.30	1~12	8,734		
기정	43	용소천	소하천	이동면 용소리 산75-1	이동면 용소리 1208-1	-	1.13	3.3~2 0.1	13,4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3	용소천	소하천	이동면 용소리 산75-20	이동면 용소리 1208-1	-	1.20	3~21	12,387		
기정	44	안지천	소하천	이동면 용소리 산97	이동면 용소리 1260	-	0.73	7	5,11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4	안지천	소하천	이동면 용소리 1014-1	이동면 용소리 1260	-	0.75	3~19	7,943		
기정	45	사무중천	소하천	이동면 용소리 1505	이동면 용소리 1270-1	-	0.85	3.2~1 7.8	5,58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5	사무중천	소하천	이동면 용소리 1505	이동면 용소리 1270-1	-	0.85	3~13	7,801		
기정	46	등모천	소하천	이동면 난음리 산42-1	이동면 난음리 1164-23	-	2.70	8~14	32,34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6	등모천	소하천	이동면 난음리 16	이동면 무림리 1164-23	-	2.63	2~36	23,695		
기정	47	장전천	소하천	이동면 난음리 산86-1	이동면 난음리 1613	-	1.02	10	12,29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7	장전천	소하천	이동면 난음리 산96-1	이동면 난음리 1613	-	1.32	3~21	9,892		

남 해 군 공 보

(6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기정	48	정거천	소하천	이동면 석평리 산95-2	이동면 무림리 1103-13	-	2.23	8~10	20,4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8	정거천	소하천	이동면 석평리 산95-2	이동면 무림리 1103-13	-	2.27	3~19	22,978		
기정	49	신보탄 천	소하천	상주면 상주리 산270-8	상주면 상주리 1995	-	1.00	8~9	9,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9	신보탄 천	소하천	상주면 상주리 산270-8	상주면 상주리 1995	-	1.27	1~13	10,404		
기정	50	시문천	소하천	삼동면 영지리 산307	삼동면 영지리 1252	-	1.04	8	8,32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50	시문천	소하천	삼동면 영지리 산307	삼동면 영지리 1252	-	1.02	3~18	10,123		
기정	51	쇠석골 천	소하천	삼동면 지족리 793-4	삼동면 지족리 1156-4	-	0.95	6	5,7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51	쇠석골 천	소하천	삼동면 지족리 산 75-7	삼동면 지족리 1156-3	-	0.97	3~8	8,616		
기정	52	금송천	소하천	삼동면 금송리 산228	삼동면 금송리 726	-	1.65	7~8	13,1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52	금송천	소하천	삼동면 금송리 1078	삼동면 금송리 726	-	1.67	3~14	18,377		
기정	53	둔촌천	소하천	삼동면 금송리 431	삼동면 금송리 38-2	-	1.90	9	17,2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53	둔촌천	소하천	삼동면 금송리 410	삼동면 금송리 38-2	-	2.11	3~37	19,705		
기정	54	전도천	소하천	삼동면 금송리 469	삼동면 금송리 547-3	-	0.98	8	8,1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54	전도천	소하천	삼동면 금송리 469	삼동면 금송리 547-3	-	0.98	3~11	13,127		
기정	55	장골천	소하천	삼동면 봉화리 666	삼동면 봉화리 431	-	1.56	8	12,46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55	장골천	소하천	삼동면 봉화리 660	삼동면 봉화리 산48-5	-	1.62	2~14	12,315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61)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기정	56	복곡천	소하천	삼동면 봉화리 산419-1	삼동면 봉화리 1496	-	0.78	10	7,82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56	복곡천	소하천	삼동면 봉화리 1874	삼동면 봉화리 1496	-	0.83	3~14	9,271		
기정	57	본담천	소하천	삼동면 봉화리 1782-12	삼동면 봉화리 1608	-	0.57	6	3,4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57	본담천	소하천	삼동면 봉화리 1781-12	삼동면 봉화리1608	-	0.64	2~9	5,807		
기정	58	은점천	소하천	삼동면 물건리 769-2	삼동면 물건리 777-1	-	0.60	3~10. 2	6,6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58	은점천	소하천	삼동면 물건리 769-2	삼동면 물건리 724	-	0.60	3~13	7,628		
기정	59	지족천	소하천	삼동면 지족리 754-1	삼동면 지족리 294-11	-	1.73	8~10	15,43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59	지족천	소하천	삼동면 지족리 654	삼동면 지족리 340-4	-	1.77	3~16	16,542		
기정	60	깨밭골 천	소하천	삼동면 동천리 119	삼동면 동천리 66	-	1.00	9	9,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60	깨밭골 천	소하천	삼동면 동천리 119	삼동면 동천리 67	-	1.04	3~36	11,620		
기정	61	물건천	소하천	삼동면 물건리 565-57	삼동면 물건리 484-1	-	0.55	4~7	2,7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61	물건천	소하천	삼동면 물건리 산 125-8	삼동면 물건리 483	-	0.56	2~7	2,904		
기정	62	가인포 천	소하천	미조면 송정리 산53-10	미조면 송정리 20	-	0.70	7	4,93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62	가인포 천	소하천	미조면 송정리 산53-13	미조면 송정리 18-2	-	0.77	2~12	5,266		
기정	63	향도천	소하천	미조면 송정리 산125-12	미조면 송정리 391-7	-	1.52	10	15,21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63	향도천	소하천	미조면 송정리 산126-2	미조면 송정리 391-4	-	1.60	4~21	18,903		
기정	64	천하천	소하천	미조면 송정리 산200-2	미조면 송정리 1380	-	1.00	6~20. 1	18,46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남 해 군 공 보

(6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 번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변경	64	천하천	소하천	미조면 송정리 산204-1	미조면 송정리 1381-2	-	1.06	6~20	17,748		
기정	65	우형천	소하천	남면 당항리 산58-10	남면 당항리 2056-1	-	1.43	8	11,44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65	우형천	소하천	남면 당항리 989	남면 당항리 2056-1	-	1.41	4~12	16,269		
기정	66	두곡천	소하천	남면 당항리 산275-4	남면 당항리 1334	-	1.15	6	6,9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66	두곡천	소하천	남면 당항리 산275-4	남면 당항리 1334	-	1.18	2~11	9,014		
기정	67	금장천	소하천	남면 당항리 189	남면 석교리 47-5	-	1.15	7~10	13,98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67	금장천	소하천	남면 당항리 189	남면 석교리 47-5	-	1.75	3~17	12,043		
기정	68	석교천	소하천	남면 당항리 산74-1	남면 석교리 136	-	2.19	6~11	21,36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68	석교천	소하천	남면 당항리 737-5	남면 석교리 136	-	2.34	2~18	20,576		
기정	69	재경천	소하천	남면 석교리 1401-1	남면 석교리 137	-	1.13	10~11	11,79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69	재경천	소하천	남면 석교리 1409	남면 석교리 136	-	1.16	5~15	12,076		
기정	70	홍현천	소하천	남면 홍현리 산98-1	남면 홍현리 11	-	2.19	6~12	21,81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70	홍현천	소하천	남면 홍현리 산71	남면 홍현리 9-9	-	2.59	2~23	25,925		
기정	71	가천천	소하천	남면 홍현리 838-2	남면 홍현리 797	-	0.60	6	3,6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71	가천천	소하천	남면 홍현리 1353	남면 홍현리 797	-	0.78	3~36	7,032		
기정	72	밤내골천	소하천	남면 임포리 산42-4	남면 임포리 1242	-	0.95	3~10.2	9,04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72	밤내골천	소하천	남면 평산리 953	남면 임포리 1242	-	0.90	3~14	9,117		
기정	73	운석천	소하천	남면 임포리 667	남면 임포리 536	-	0.55	2.4~4	3,51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임포천합류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63)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변경	73	운석천	소하천	남면 임포리 산241	남면 임포리 537	-	0.62	1~19	4,520		
기정	74	어전골 천	소하천	남면 임포리 산209	남면 임포리 188-1	-	0.80	2.5~5. 2	6,2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임포천합 류
변경	74	어전골 천	소하천	남면 임포리 106-2	남면 임포리 188-1	-	0.78	1~12	5,528		
기정	75	오리천	소하천	남면 평산리 605	남면 평산리 282-1	-	1.30	7	9,13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75	오리천	소하천	남면 평산리 848	남면 덕월리 170-11	-	1.80	3~39	19,204		
기정	76	우지곡 천	소하천	남면 평산리 773	남면 죽전리 1153-5	-	1.70	10	17,06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76	우지곡 천	소하천	남면 평산리 773	남면 죽전리 1153-5	-	1.70	4~50	31,284		
기정	77	평산천	소하천	남면 평산리 1435	남면 평산리 2008-2		0.60	6	3,6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77	평산천	소하천	남면 평산리 1437-3	남면 평산리 2454-2	-	0.62	1~7	2,800		
기정	78	유구천	소하천	남면 평산리 1243-1	남면 평산리 2117	-	0.64	6	3,84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78	유구천	소하천	남면 평산리 1343	남면 평산리 2106-1	-	0.64	2~8	3,263		
기정	79	덕월천	소하천	남면 덕월리 790-2	남면 덕월리 391-1		0.65	6	3,9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79	덕월천	소하천	남면 덕월리 791-1	남면 덕월리 363-5	-	0.63	2~23	3,496		
기정	80	어원천	소하천	남면 상가리 산62-1	남면 상가리 1025	-	0.51	3.5~1 1.6	4,1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상덕천합 류
변경	80	어원천	소하천	남면 상가리 산62	남면 상가리 1025	-	0.50	4~13	4,525		
기정	81	남구천	소하천	남면 상가리 537-1	남면 상가리 783	-	0.80	3.6~8. 1	5,99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상덕천합 류
변경	81	남구천	소하천	남면 상가리 923	남면 상가리 785	-	0.79	4~8	10,028		
기정	82	죽전천	소하천	남면 죽전리 67-4	남면 당항리 2056-4	-	0.98	8~9	7,8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82	죽전천	소하천	남면 죽전리 9-3	남면 당항리 270-6	-	1.02	4~16	7,923		

남 해 군 공 보

(6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기정	83	채양천	소하천	남면 죽전리 793	남면 평산리 4-1	-	1.54	8~9	12,33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83	채양천	소하천	남면 죽전리 794	남면 평산리 4-1	-	1.60	4~15	18,092		
기정	84	울곡천	소하천	남면 죽전리 751	남면 죽전리 1228	-	1.60	8~9	12,82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84	울곡천	소하천	남면 죽전리 751	남면 죽전리 1228	-	1.59	4~16	17,412		
기정	85	연죽천	소하천	서면 연죽리 1290	서면 연죽리 919-2	-	1.15	18	20,7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85	연죽천	소하천	서면 연죽리 1221	서면 연죽리 918	-	1.22	6~69	38,204		
기정	86	절골천	소하천	서면 연죽리 1343	서면 연죽리 1019	-	0.75	10.6~ 45	24,66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연죽천합 류
변경	86	절골천	소하천	서면 연죽리 1343	서면 연죽리 1019	-	0.70	13~41	20,590		
기정	87	동정천	소하천	서면 대정리 58	서면 대정리 305	-	1.46	10~11	14,62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시상천합 류
변경	87	동정천	소하천	서면 대정리 58	서면 대정리 305	-	1.50	5~16	19,709		
기정	88	금곡천	소하천	서면 대정리 1529	서면 대정리 1392	-	0.53	6	3,2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88	금곡천	소하천	서면 대정리 1514	서면 대정리 1392	-	0.51	2~5	5,307		
기정	89	삼밭천	소하천	서면 서호리 300	서면 서호리 777	-	0.94	6	5,6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89	삼밭천	소하천	서면 서호리 300-1	서면 서호리 903-5	-	0.94	2~10	6,716		
기정	90	석제천	소하천	서면 서호리 38	서면 서호리 779-18	-	0.74	6	4,42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90	석제천	소하천	서면 서호리 12	서면 서호리 779-18	-	0.72	3~9	7,561		
기정	91	중앙천	소하천	서면 서호리 168	서면 서상리 1196	-	1.80	6.3~1 8.4	28,6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91	중앙천	소하천	서면 서호리 175	서면 서상리 1196-2	-	1.73	6~49	25,106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65)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기정	92	장항천	소하천	서면 서상리 131	서면 서상리 1165-1	-	1.05	5.81~1 4.9	14,7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92	장항천	소하천	서면 서상리 156	서면 서상리 1165-3	-	1.02	6~12	15,880		
기정	93	예계천	소하천	서면 작장리 13	서면 작장리 136	-	0.60	2.42~1 0.9	6,13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93	예계천	소하천	서면 작장리 16-2	서면 작장리 136	-	0.58	2~18	4,828		
기정	94	빠돈천	소하천	서면 작장리 354	서면 작장리 204	-	0.60	2.4~8	5,06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94	빠돈천	소하천	서면 작장리 358-2	서면 작장리 204	-	0.50	2~26	6,684		
기정	95	작장천	소하천	서면 작장리 1185	서면 작장리 1501	-	0.90	8	7,2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95	작장천	소하천	서면 작장리 1185	서면 작장리 1501	-	0.88	1~14	5,808		
기정	96	중리천	소하천	서면 남상리 900	서면 남상리 1473-2	-	1.10	4.6~2 5	17,67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96	중리천	소하천	서면 남상리 287	서면 남상리 1473-1	-	1.09	5~21	13,688		
기정	97	염해천	소하천	서면 남상리 산25-5	서면 남상리 1636	-	0.90	11~12	10,2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97	염해천	소하천	서면 남상리 705	서면 남상리 1804-3	-	1.06	3~17	9,459		
기정	98	유포천	소하천	서면 노구리 27	서면 노구리 936-2	-	1.90	18	34,2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98	유포큰 내천	소하천	서면 노구리 26	서면 노구리 936-2	-	1.92	8~29	33,900		
기정	99	노구천	소하천	서면 노구리 672	서면 노구리 384-9	-	1.33	5~8	8,8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99	노구천	소하천	서면 노구리 625	서면 노구리 384-9	-	1.36	2~7	7,994		
기정	100	회룡천	소하천	서면 노구리 302-1	서면 중현리 1455-3	-	0.70	4.8~8. 8	5,29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00	회룡천	소하천	서면 중현리 1512-3	서면 중현리 384-59	-	0.68	5~20	6,835		

남 해 군 공 보

(6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기정	101	큰내천	소하천	서면 노구리 99	서면 노구리 939-1		1.35	2.8~9. 7	9,9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01	유포천	소하천	서면 노구리 96	서면 노구리 939-1	-	1.49	3~7	12,460		
기정	102	회룡 중앙천	소하천	서면 중현리 1241	서면 중현리 1455-6	-	0.80	2~11. 2	4,79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02	회룡 중앙천	소하천	서면 중현리 1224	서면 중현리 1417-4	-	0.84	4~11	6,169		
기정	103	도산천	소하천	서면 중현리 443-2	서면 중현리 248	-	0.80	5	4,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03	도산천	소하천	서면 중현리 463	서면 중현리 255-1	-	0.72	4~26	9,709		
기정	104	중현하 천	소하천	서면 중현리 산135-6	서면 중현리 666-1	-	0.59	6	3,5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04	중현1 천	소하천	서면 중현리 655-10	서면 중현리 882-5	-	0.65	1~23	4,437		
기정	105	중현상 천	소하천	서면 중현리 687	서면 중현리 969	-	0.60	2.1~5	4,47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05	중현2 천	소하천	서면 중현리 684-1	서면 중현리 968-9	-	0.59	2~24	4,529		
기정	106	이어천	소하천	고현면 이어리 산18-2	고현면 이어리 259-3	-	1.20	7~8	8,6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06	이어천	소하천	고현면 이어리 320	고현면 이어리 157-6	-	1.27	2~30	11,302		
기정	107	대계천	소하천	고현면 대곡리 1417	고현면 대곡리 1052	-	1.05	9	9,4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07	대계천	소하천	고현면 대곡리 1410	고현면 대곡리 935-5	-	1.09	3~21	10,002		
기정	108	종자골 천	소하천	고현면 도마리 1435	고현면 도마리 698-7	-	0.70	2.5~6	4,58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08	종자골 천	소하천	고현면 도마리 1440-2	고현면 도마리 698-7	-	0.73	1~20	7,503		
기정	109	질개천	소하천	고현면 도마리 1754-1	고현면 도마리 1887-2	-	2.10	10~15	25,7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67)

구 번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변경	109	질개천	소하천	고현면 도마리 1735	고현면 도마리 1887-2	-	1.84	5~22	30,513		
기정	110	오곡천	소하천	고현면 오곡리 1599	고현면 포상리 594-1	-	1.79	14~19	25,58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10	오곡천	소하천	고현면 오곡리 1446	고현면 포상리 594-1	-	1.75	3~18	24,496		
기정	111	관당천	소하천	고현면 오곡리 485	고현면 오곡리 843-3	-	1.06	6~11	9,81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11	관당천	소하천	고현면 오곡리 485	고현면 오곡리 843-3	-	1.10	2~10	13,109		
기정	112	포상천	소하천	고현면 포상리 1408-1	고현면 포상리 64	-	1.19	11~14	15,02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12	포상천	소하천	고현면 포상리 1408	고현면 포상리 64	-	1.25	5~19	14,495		
기정	113	달실천	소하천	고현면 포상리 1675	고현면 포상리 1712	-	0.89	10	9,4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13	달실천	소하천	고현면 포상리 1675	고현면 포상리 1712-6	-	0.93	4~26	11,922		
기정	114	동남치 천	소하천	고현면 남치리 687-1	고현면 남치리 611-1	-	0.60	1~6.9	5,08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14	동남치 천	소하천	고현면 남치리 686	고현면 남치리 611-4	-	0.56	1~9	3,403		
기정	115	뒷고랑 천	소하천	고현면 남치리 산68-4	고현면 남치리 405	-	0.65	1.5~7. 3	3,47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15	뒷고랑 천	소하천	고현면 남치리 산68-4	고현면 남치리 405	-	0.64	1~11	4,631		
기정	116	서당골 천	소하천	고현면 남치리 282	고현면 남치리 598-3	-	1.20	15	18,01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16	서당골 천	소하천	고현면 남치리 284-2	고현면 남치리 465	-	1.22	4~39	10,158		
기정	117	북남치 천	소하천	고현면 남치리 1113-1	고현면 남치리 430-1	-	1.00	2.7~8. 7	5,7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17	북남치 천	소하천	고현면 남치리 1113-1	고현면 남치리 430-1	-	0.99	1~15	7,946		

남 해 군 공 보

(68)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기정	118	대동천	소하천	고현면 대사리 201	고현면 대사리 519-1	-	0.60	2.5~4. 2	3,03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대사천합 류
변경	118	대동천	소하천	고현면 대사리 211	고현면 대사리 519-1	-	0.69	2~7	4,021		
기정	119	음지천	소하천	고현면 차면리 197-1	고현면 차면리 88-2	-	0.53	6	3,2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19	음지천	소하천	고현면 차면리 195-2	고현면 차면리 88-2	-	0.58	2~15	4,968		
기정	120	소차면 천	소하천	고현면 차면리 13	고현면 차면리 104-4	-	1.17	7	8,19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20	소차면 천	소하천	고현면 차면리 39-2	고현면 차면리 104-2	-	1.01	3~45	8,001		
기정	121	차면천	소하천	고현면 차면리 산50-7	고현면 차면리 112-1	-	0.91	7	8,7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21	차면천	소하천	고현면 차면리 산50-7	고현면 차면리 723-2	-	1.32	3~24	11,680		
기정	122	신촌천	소하천	고현면 갈화리 403	고현면 갈화리 185-5	-	0.75	6	4,5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22	신촌천	소하천	고현면 갈화리 405-1	고현면 갈화리 185-5	-	0.72	5~10	8,055		
기정	123	갈화천	소하천	고현면 갈화리 875	고현면 갈화리 1274-15	-	0.85	11	9,3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23	갈화천	소하천	고현면 갈화리 875	고현면 갈화리 1274-15	-	1.13	4~13	11,659		
기정	124	비란천	소하천	설천면 비란리 1015-1	설천면 비란리 1106	-	1.22	8~10	14,64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24	비란천	소하천	설천면 비란리 110	설천면 비란리 1116	-	1.45	3~16	19,804		
기정	125	동비천	소하천	설천면 비란리 376	설천면 비란리 8-25	-	0.80	3~11	6,07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25	동비천	소하천	설천면 비란리 292-1	설천면 비란리 8-25	-	0.99	2~12	7,539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69)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기정	126	진목천	소하천	설천면 진목리 산198-2	설천면 진목리 1154	-	1.80	10~12	18,93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26	진목천	소하천	설천면 진목리 1607	설천면 진목리 1149	-	1.78	4~28	21,428		
기정	127	가는골 천	소하천	설천면 진목리 629	설천면 진목리 70	-	1.03	6	6,18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27	가는골 천	소하천	설천면 진목리 698	설천면 진목리 70	-	1.05	2~7	7,736		
기정	128	고사천	소하천	설천면 진목리 591	설천면 진목리 61	-	1.50	8~9	13,145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28	고사천	소하천	설천면 진목리 521-2	설천면 진목리 61	-	1.48	2~16	13,787		
기정	129	솔골천	소하천	설천면 문항리 1017	설천면 문항리 693	-	0.60	5	3,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29	솔골천	소하천	설천면 문항리 1017	설천면 문항리 693	-	0.58	1~4	2,553		
기정	130	산밀천	소하천	설천면 문항리 1128-7	설천면 문항리 516-1	-	1.00	8	8,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30	산밀천	소하천	설천면 문항리 1107	설천면 문항리 516-1	-	1.03	3~13	11,542		
기정	131	문항천	소하천	설천면 문항리 1270	설천면 문항리 422-1	-	0.96	8	7,7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31	문항천	소하천	설천면 문항리 1270	설천면 문항리 422-1	-	0.91	2~7	6,561		
기정	132	화룡천	소하천	설천면 금음리 1682	설천면 문항리 150	-	1.00	11	11,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32	화룡천	소하천	설천면 금음리 1682	설천면 문항리 150	-	1.01	4~12	10,233		
기정	133	남양천	소하천	설천면 남양리 528	설천면 금음리 652-10	-	1.59	9~16	41,98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33	남양천	소하천	설천면 남양리 537-4	설천면 금음리 652-10	-	2.99	2~31	30,249		
기정	134	문의천	소하천	설천면 문의리 691	설천면 문의리 176-19	-	1.38	8~11	13,03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남 해 군 공 보

(7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 번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변경	134	문의천	소하천	설천면 문의리 691	설천면 문의리 176-19	-	1.45	2~14	12,599		
기정	135	상신천	소하천	창선면 상신리 488	창선면 상신리 1-7	-	1.35	6~11	11,57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35	상신천	소하천	창선면 상신리 539	창선면 상신리 1-7	-	1.35	2~21	14,076		
기정	136	동대천	소하천	창선면 동대리 908-3	창선면 동대리 485	-	1.11	8	8,88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36	동대천	소하천	창선면 동대리 908-1	창선면 동대리 485-2	-	1.11	3~12	9,871		
기정	137	발음천	소하천	창선면 동대리 산138	창선면 동대리 461-3	-	0.65	1.7~5. 4	3,13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37	발음천	소하천	창선면 동대리 760	창선면 동대리 461-6	-	0.55	2~24	3,682		
기정	138	발음내 천	소하천	창선면 동대리 824-3	창선면 동대리 369-4	-	0.78	9	7,02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38	발음내 천	소하천	창선면 동대리 824-3	창선면 동대리 416-2	-	0.78	4~17	6,591		
기정	139	공유천	소하천	창선면 동대리 산25-1	창선면 동대리 174-4	-	0.60	6	3,6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39	공유천	소하천	창선면 동대리 112	창선면 동대리 174-9	-	0.50	3~11	4,103		
기정	140	대인 대끝천	소하천	창선면 동대리 산114-26	창선면 동대리 194-1	-	0.55	2.3~7. 5	4,03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40	대인 대끝천	소하천	창선면 동대리 산27-1	창선면 동대리 193-1	-	0.55	2~25	4,760		
기정	141	당항큰 천	소하천	창선면 당항리 744-1	창선면 당항리 639	-	0.60	9	5,4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41	당항큰 천	소하천	창선면 당항리 704	창선면 당항리 639-6	-	0.60	4~9	4,757		
기정	142	당항천	소하천	창선면 당항리 387	창선면 당항리 248	-	0.80	2.8~1 0.7	4,805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구 번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변경	142	당항천	소하천	창선면 당항리 384	창선면 당항리 246-2	-	0.74	4~24	5,303		
기정	143	냉천천	소하천	창선면 당항리 55	창선면 당항리 238	-	0.60	2.8~8. 4	3,7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43	냉천천	소하천	창선면 당항리 산30-5	창선면 당항리 238	-	0.55	3~15	3,813		
기정	144	큰고랑천	소하천	창선면 대벽리 338	창선면 대벽리 525-2	-	0.65	2~10. 6	4,27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44	큰고랑천	소하천	창선면 대벽리 338	창선면 대벽리 525-5	-	0.65	3~22	5,313		
기정	145	대벽천	소하천	창선면 대벽리 1031	창선면 대벽리 846	-	1.00	8	8,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45	대벽천	소하천	창선면 대벽리 1014	창선면 대벽리 856-3	-	0.85	3~24	6,981		
기정	146	큰내골천	소하천	창선면 대벽리 산144-1	창선면 대벽리 607-7	-	0.60	6	3,6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46	큰내골천	소하천	창선면 대벽리 719	창선면 대벽리 606	-	0.55	3~12	3,360		
기정	147	소벽천	소하천	창선면 울도리 산35-1	창선면 울도리 367-2	-	0.80	7	5,6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47	소벽천	소하천	창선면 울도리 산35-1	창선면 울도리 367-7	-	0.83	3~11	5,044		
기정	148	울도천	소하천	창선면 울도리 122	창선면 울도리 681-1	-	0.75	10	7,5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48	울도천	소하천	창선면 울도리 118	창선면 울도리 681-1	-	0.75	3~26	7,113		
기정	149	고순천	소하천	창선면 울도리 806	창선면 울도리 771-3	-	0.50	5	2,5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49	고순천	소하천	창선면 울도리 796	창선면 울도리 770-9	-	0.56	2~25	3,925		
기정	150	서대천	소하천	창선면 서대리 313	창선면 서대리 1063-4	-	1.10	11	12,1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남 해 군 공 보

(7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 번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변경	150	서대천	소하천	창선면 서대리 320	창선면 서대리 762-7	-	1.16	5~21	15,926		
기정	151	보천천	소하천	창선면 서대리 958	창선면 서대리 1289	-	0.60	3.2~7	4,23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51	보천천	소하천	창선면 서대리 산207-1	창선면 서대리 1074-1	-	0.60	2~19	5,042		
기정	152	광천천	소하천	창선면 광천리 80-2	창선면 광천리 673-1	-	1.10	7	7,7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52	광천천	소하천	창선면 광천리 산41-1	창선면 광천리 974	-	1.10	4~35	7,703		
기정	153	사포천	소하천	창선면 광천리 143-2	창선면 광천리 548	-	0.50	3.5~7.1	2,9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53	사포천	소하천	창선면 광천리 산113	창선면 광천리 547	-	0.50	3~23	4,156		
기정	154	신흥천	소하천	창선면 광천리 산158	창선면 지족리 845	-	0.70	2.6~6.6	5,85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54	신흥천	소하천	창선면 광천리 산161-2	창선면 지족리 846-1	-	0.64	3~40	5,934		
기정	155	청산천	소하천	창선면 지족리 13-2	창선면 당저리 538	-	0.55	2.1~1.0.6	4,3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55	청산천	소하천	창선면 지족리 13-2	창선면 당저리 80	-	0.57	3~24	5,196		
기정	156	옥천천	소하천	창선면 옥천리 650	창선면 옥천리 320	-	1.35	6~10	13,5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56	옥천천	소하천	창선면 옥천리 649	창선면 옥천리 320	-	1.33	3~10	10,681		
기정	157	옥천들천	소하천	창선면 옥천리 490	창선면 옥천리 424	-	0.86	7~9	7,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57	옥천들천	소하천	창선면 옥천리 120-2	창선면 옥천리 424	-	0.85	2~16	8,055		
폐지	158	연곡천	소하천	창선면 오용리 186	창선면 오용리 1281-20	-	2.65	12~21	44,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기정	159	언적골천	소하천	창선면 오용리 308-1	창선면 오용리 529	-	0.81	8	6,44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59	언적골천	소하천	창선면 오용리 309-2	창선면 오용리 720	-	0.80	3~22	19,049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73)

구 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점	종 점	주 요 경과 지					
기정	160	오용천	소하천	창선면 오용리 838	창선면 오용리 1015	-	0.90	5	4,49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연곡천합류
변경	160	오용천	소하천	창선면 오용리 824	창선면 오용리 996	-	0.83	1~14	4,749		
기정	161	식포천	소하천	창선면 가인리 681-1	창선면 가인리 615-31	-	1.00	6	6,0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61	식포천	소하천	창선면 가인리 산168	창선면 가인리 615-34	-	0.88	2~19	8,205		
기정	162	개린개 천	소하천	창선면 가인리 318-1	창선면 가인리 146-67	-	0.77	5~8	4,4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62	개린개 천	소하천	창선면 가인리 산203-6	창선면 가인리 146-3	-	0.86	3~22	8,498		
기정	163	남방골 천	소하천	창선면 진동리 357	창선면 진동리 708-14	-	0.80	9	7,14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63	남방골 천	소하천	창선면 진동리 1282	창선면 진동리 산190-4	-	0.87	2~12	7,344		
기정	164	대곡천	소하천	창선면 진동리 산153-3	창선면 진동리 698-12	-	0.60	8	4,8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64	대곡천	소하천	창선면 진동리 산153-3	창선면 진동리 708-2	-	0.60	3~13	4,211		
신설	165	벽련천	소하천	상주면 양아리 1694-4	상주면 양아리 1916-1	-	0.65	1~7	3,490		
신설	166	소량천	소하천	상주면 양아리 산231	상주면 양아리 633	-	0.93	2~13	7,110		
신설	167	대량천	소하천	상주면 양아리 1092	상주면 양아리 840	-	0.67	2~7	3,439		
신설	168	전골들 천	소하천	상주면 상주리 산 368-1	상주면 상주리 1671-1	-	1.05	2~17	8,794		
신설	169	노량천	소하천	설천면 노량리 196-3	설천면 노량리 439-18	-	0.72	2~6	3,360		
신설	170	덕신천	소하천	설천면 덕신리 212-3	설천면 덕신리 1351-2	-	2.05	4~19	28,901		
신설	171	월곡천	소하천	설천면 덕신리 1522	설천면 덕신리 1574-4	-	0.53	2~9	3,463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7	북변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28	구시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29	심천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30	아산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31	목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32	양지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33	오동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34	봉성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35	신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36	골안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37	석평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38	봉곡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39	성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40	원천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41	화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42	안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43	용소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44	안지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45	사무중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46	등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47	장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48	정거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49	신보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50	시문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51	쇠석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52	금송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53	둔촌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54	전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55	장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56	복곡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57	본담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58	은점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59	지죽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60	깨밭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61	물건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62	가인포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63	항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64	천하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65	우형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66	두곡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67	금장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68	석교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69	재경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70	홍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71	가천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72	밤내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73	운석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4	어전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75	오리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76	우지곡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77	평산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78	유구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79	덕월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80	어월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81	남구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82	죽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83	채양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84	율곡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85	연죽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86	질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87	동정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88	금곡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89	삼밭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90	석제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91	중앙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92	장항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93	예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94	빠돈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95	작장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96	중리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97	염해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98	유포큰내천	◦하천명 변경 (유포천→유포큰내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99	노구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00	회룡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01	유포천	◦하천명 변경 (큰내천→유포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02	회룡중앙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03	도산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04	중현1천	◦하천명 변경 (중현하천→중현1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05	중현2천	◦하천명 변경 (중현상천→중현2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06	이어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07	대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08	종자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09	질개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10	오곡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11	관당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12	포상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13	달실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14	동남치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남 해 군 공 보

(7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5	뒷고랑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16	서당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17	북남치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18	대동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19	음지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20	소차면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21	차면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22	신촌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23	갈화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24	비란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25	동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26	진목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27	가는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28	고사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29	솔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30	산밑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31	문향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32	화룡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33	남양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34	문의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35	상신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36	동대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37	밭음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38	밭음내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39	곤유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40	대인 대끝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41	당향큰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42	당향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43	냉천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44	큰고랑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45	대벽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46	큰내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47	소벽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48	울도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49	고순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50	서대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51	보천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52	광천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53	사포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54	신흥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55	청산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56	옥천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57	옥천들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58	연곡천	◦폐지	◦지방하천과 중복되어 기 결정된 소하천 폐지
159	언적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60	오용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61	식포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62	개린개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77)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3	남방골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64	대곡천	◦하천구역 변경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변경에 따른 구역변경
165	벽련천	◦신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군계획시설 반영
166	소량천	◦신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군계획시설 반영
167	대량천	◦신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군계획시설 반영
168	전골들천	◦신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군계획시설 반영
169	노량천	◦신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군계획시설 반영
170	덕신천	◦신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군계획시설 반영
171	월곡천	◦신설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된 하천의 군계획시설 반영

나. 저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오동	저수지	남해읍 아산리 산4-34 일원	45,951	-	45,951	경고 제234 (1994.11.01.)	상수원
기정	2	옥천	저수지	창선면 옥천리 1023 일원	48,992	-	48,992	남해고 제99-15 (1999.05.17.)	상수원
폐지	3	상심천	저수지	남해읍 심천리 1243 일원	3,354	감) 3,35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4	모산	저수지	남해읍 심천리 550-2 일원	6,531	감) 6,531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5	아산촌	저수지	남해읍 아산리 1362-2 일원	2,672	감) 2,672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	아산	저수지	남해읍 아산리 90-1 일원	56,610	-	56,61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폐지	7	대입현 1	저수지	남해읍 입현리 1175 일원	10,630	감) 10,63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8	대입현 2	저수지	남해읍 입현리 1051 일원	5,297	감) 5,297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9	토촌	저수지	남해읍 입현리 772 일원	6,623	감) 6,62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0	섬호	저수지	남해읍 입현리 137-3 일원	3,874	감) 3,87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1	외금	저수지	남해읍 평리 1578-1 일원	3,403	감) 3,40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	내금	저수지	남해읍 평리 859 일원	35,148	-	35,148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남 해 군 공 보

(78)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3	신촌	저수지	남해읍 평현리 527-1 일원	5,352	감) 5,352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5	남해대 곡	저수지	남해읍 평현리 840 일원	29,167	-	29,167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6	차산	저수지	남해읍 차산리 669-2 일원	15,290	-	15,29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폐지	16	보량	저수지	이동면 석평리 937 일원	4,698	감) 4,698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7	청룡	저수지	이동면 석평리 694 일원	3,180	감) 3,18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7	석평	저수지	이동면 석평리 291 일원	24,265	-	24,265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폐지	19	원천	저수지	이동면 신전리 1285-3 일원	463	감) 46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8	복곡	저수지	이동면 신전리 21 일원	70,260	-	70,26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9	신전1	저수지	이동면 신전리 541 일원	1,004	-	1,004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폐지	22	정지	저수지	이동면 다정리 1355-1 일원	1,500	감) 1,50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10	다정	저수지	이동면 다정리 1236 일원	76,781	-	76,781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11	다천	저수지	이동면 다정리 524 일원	9,064	-	9,064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12	난곡	저수지	이동면 난음리 267 일원	12,006	-	12,006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13	난등	저수지	이동면 난음리 1063 일원	14,512	-	14,512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14	난문	저수지	이동면 난음리 1224 일원	8,057	-	8,057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15	무림	저수지	이동면 무림리 1622 일원	3,738	-	3,738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16	골안	저수지	이동면 무림리 1772 일원	2,724	-	2,724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17	성현	저수지	이동면 무림리 297 일원	7,022	-	7,022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79)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8	봉곡	저수지	이동면 무림리 63 일원	4,812	-	4,812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변경	19	용문곡	저수지	이동면 용소리 산75-5 일원	3,244	-	3,244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변경	20	용소1	저수지	이동면 용소리 1318-1 일원	863	-	863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변경	21	용소2	저수지	이동면 용소리 1153 일원	8,946	-	8,946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변경	22	봉전	저수지	이동면 용소리 135 일원	6,093	-	6,093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변경	23	초양	저수지	이동면 초음리 667 일원	15,029	-	15,029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변경	24	광두	저수지	이동면 초음리 984 일원	14,107	-	14,107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변경	25	장평	저수지	이동면 초음리 1570 일원	30,328	-	30,328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변경	26	초음	저수지	이동면 초음리 1350 일원	10,035	-	10,035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폐지	40	강촌	저수지	삼동면 영지리 2072-1 일원	3,323	감) 3,32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41	뒤린개	저수지	삼동면 영지리 1240-1 일원	1,185	감) 1,185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42	수곡	저수지	삼동면 영지리 698-2 일원	3,360	감) 3,36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27	고잔	저수지	삼동면 영지리 965 일원	8,691	-	8,691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변경	28	시문1	저수지	삼동면 영지리 909 일원	3,166	-	3,166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변경	29	시문2	저수지	삼동면 영지리 930 일원	8,061	-	8,061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변경	30	영지	저수지	삼동면 영지리 941 일원	3,380	-	3,380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폐지	47	양지	저수지	삼동면 봉화리 289 일원	2,781	감) 2,781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남 해 군 공 보

(8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1	갈곡	저수지	삼동면 봉화리 684 일원 영지리 83 일원	116,34 3	-	116,343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32	내산	저수지	삼동면 봉화리 2118 일원	289,01 6	-	289,016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폐지	50	금송	저수지	삼동면 금송리 1078 일원	13,626	감) 13,626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51	전도	저수지	삼동면 금송리 461 일원	3,964	감) 3,96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52	동천	저수지	삼동면 동천리 832 일원	8,093	감) 8,09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53	와현	저수지	삼동면 지족리 791 일원	2,664	감) 2,66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54	지족	저수지	삼동면 지족리 751 일원	36,345	감) 36,345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55	물건	저수지	삼동면 물건리 268 일원	3,150	감) 3,15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56	금양	저수지	상주면 상주리 873 일원	10,967	감) 10,967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57	초전	저수지	미조면 송정리 639-1 일원	4,880	감) 4,88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58	송상	저수지	미조면 송정리 1288 일원	3,217	감) 3,217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59	송남	저수지	미조면 송정리 산241-8 일원	3,763	감) 3,76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60	우형	저수지	남면 당항리 1944-3 일원	3,066	감) 3,066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61	중보	저수지	남면 당항리 1845 일원	6,362	감) 6,362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3	당항	저수지	남면 당항리 799 일원	4,103	-	4,103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34	두곡	저수지	남면 당항리 269 일원	6,586	-	6,586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35	산요	저수지	남면 당항리 78 일원	4,755	-	4,755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6	성화	저수지	남면 당항리 611 일원	6,878	-	6,878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촌공 사소관
폐지	66	재경	저수지	남면 석교리 1409 일원	12,092	감)12,092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67	숙호	저수지	남면 흥현리 452 일원	3,323	감)3,32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68	흥현1	저수지	남면 흥현리 산79-1 일원	1,604	감)1,60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69	흥현2	저수지	남면 흥현리 1074 일원	4,468	감)4,468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70	흥현3	저수지	남면 흥현리 1083 일원	2,924	감)2,92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71	가천	저수지	남면 흥현리 1014 일원	6,434	감)6,43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72	운암1	저수지	남면 임포리 78일원	7,047	감)7,047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73	평산	저수지	남면 평산리 673 일원	2,510	감)2,51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74	오리	저수지	남면 평산리 634 일원	3,983	감)3,98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75	유구	저수지	남면 평산리 932일원, 임포리 1077 일원	4,489	감)4,489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76	구미	저수지	남면 덕월리 858-2 일원	2,501	감)2,501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77	상가	저수지	남면 상가리 1213 일원	20,467	감)20,467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78	배당	저수지	남면 상가리 486 일원	9,490	감)9,49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79	가마	저수지	남면 상가리 1087 일원	3,755	감)3,755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80	율곡	저수지	남면 죽전리 495 일원	5,310	감)5,31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81	율곡2	저수지	남면 죽전리 539-1 일원	2,336	감)2,336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남 해 군 공 보

(8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82	채양	저수지	남면 죽전리 834 일원	5,460	감) 5,46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83	양지	저수지	남면 죽전리 454-3 일원	1,270	감) 1,27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84	죽전	저수지	남면 죽전리 68 일원	5,197	감) 5,197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85	금곡	저수지	서면 대정리 1536 일원	4,006	감) 4,006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86	서호상	저수지	서면 서호리 230-1 일원	3,964	감) 3,96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87	서호하	저수지	서면 서호리 257 일원	3,512	감) 3,512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88	서호동 편	저수지	서면 서호리 67 일원	3,420	감) 3,42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89	서상	저수지	서면 서상리 1521-2 일원	3,067	감) 3,067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90	장항	저수지	서면 서상리 133 일원	3,443	감) 3,44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91	작장	저수지	서면 작장리 산36-1 일원	29,988	감) 29,988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92	중리	저수지	서면 남상리 479 일원	4,574	감) 4,57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7	남상	저수지	서면 남상리 산153 일원	95,417	-	95,417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폐지	94	노구	저수지	서면 노구리 485 일원	4,034	감) 4,03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95	중현	저수지	서면 중현리 691 일원	7,493	감) 7,49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96	회룡	저수지	서면 중현리 1533-2일원, 노구리 302-1 일원	3,394	감) 3,39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97	도산	저수지	서면 중현리 26 일원	3,456	감) 3,456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98	우물	저수지	서면 중현리 181 일원	6,920	감) 6,92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99	정포	저수지	서면 정포리 885 일원	5,004	감)5,00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8	연죽	저수지	서면 연죽리 925 일원	79,469	-	79,469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폐지	101	이어신	저수지	고현면 이어리 323 일원	2,110	감)2,11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39	이어	저수지	고현면 이어리 702 일원	3,958	-	3,958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폐지	103	대곡1	저수지	고현면 대곡리 728 일원	2,139	감)2,139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0	대곡	저수지	고현면 대곡리 896 일원	50,072	-	50,072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폐지	105	도산구	저수지	고현면 도마리 1753 일원	5,420	감)5,42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06	도산신	저수지	고현면 도마리 1772-6 일원	2,641	감)2,641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07	광명	저수지	고현면 오곡리 1616-2 일원	4,679	감)4,679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08	관당구	저수지	고현면 오곡리 462-1 일원	5,020	감)5,02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1	오곡	저수지	고현면 오곡리 1629 일원	16,648	-	16,648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폐지	110	선원	저수지	고현면 포상리 345 일원	7,828	감)7,828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11	천동	저수지	고현면 포상리 1643-1 일원, 갈화리 97-1 일원	2,870	감)2,87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12	북남치	저수지	고현면 남치리 967 일원	2,538	감)2,538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2	남치	저수지	고현면 남치리 775 일원	91,507	-	91,507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폐지	114	방월상	저수지	고현면 대사리 1227 일원	4,771	감)4,771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15	큰차면	저수지	고현면 차면리 292 일원	5,273	감)5,27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남 해 군 공 보

(8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16	소차면	저수지	고현면 차면리 182 일원	6,774	감)6,77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17	갈화신	저수지	고현면 갈화리 1103 일원	3,109	감)3,109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18	갈화구	저수지	고현면 갈화리 780 일원	7,862	감)7,862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19	갈화	저수지	고현면 갈화리 403 일원	21,251	감)21,251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20	정태	저수지	설천면 비란리 1028 일원	4,056	감)4,056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21	동비구	저수지	설천면 비란리 361-1 일원	2,783	감)2,78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22	동비신	저수지	설천면 비란리 492 일원	6,140	감)6,14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23	동비	저수지	설천면 비란리 390 일원	13,663	감)13,66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24	고사	저수지	설천면 진목리 510 일원	12,716	감)12,716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변경	43	진목	저수지	설천면 진목리 1614 일원	11,883	-	11,883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44	도래모	저수지	설천면 진목리 1347 일원	12,735	-	12,735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변경	45	길가	저수지	설천면 진목리 1029 일원	3,155	-	3,155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소관
폐지	128	문항구	저수지	설천면 문항리 347-3 일원	5,970	감)5,97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29	문항신	저수지	설천면 문항리 1270 일원	4,464	감)4,46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30	모천구	저수지	설천면 문항리 1037-1 일원	7,469	감)7,469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31	모천신	저수지	설천면 문항리 1111 일원	20,248	감)20,248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32	옥동신	저수지	설천면 금음리 1682 일원	6,959	감)6,959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33	옥동구	저수지	설천면 금음리 1678 일원	4,449	감)4,449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34	문의구	저수지	설천면 문의리 623 일원	3,348	감) 3,348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35	상신	저수지	창선면 상신리 202-2 일원	4,183	감) 4,18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36	곤유	저수지	창선면 동대리 824-3 일원	2,930	감) 2,93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37	당항	저수지	창선면 동대리 912 일원	2,524	감) 2,52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38	당항	저수지	창선면 당항리 717 일원	2,082	감) 2,082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39	대벽	저수지	창선면 대벽리 933-1 일원	1,245	감) 1,245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40	단항1	저수지	창선면 대벽리 338 일원	1,810	감) 1,81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41	단항2	저수지	창선면 대벽리 431-1 일원	4,152	감) 4,152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42	율도	저수지	창선면 율도리 629-3 일원	5,036	감) 5,036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43	고순	저수지	창선면 율도리 769 일원	1,820	감) 1,82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44	서대1	저수지	창선면 서대리 320 일원	5,021	감) 5,021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45	사포	저수지	창선면 광천리 151 일원	4,585	감) 4,585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46	광천	저수지	창선면 광천리 886-4 일원	3,184	감) 3,18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47	청산	저수지	창선면 지족리 216 일원	2,375	감) 2,375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48	지족	저수지	창선면 지족리 13-2 일원	3,683	감) 3,68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49	연곡	저수지	창선면 오용리 1127 일원	15,638	감) 15,638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50	가인	저수지	창선면 가인리 319일원	4,744	감) 4,74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51	대곡2	저수지	창선면 진동리 741-3 일원	4,433	감) 4,43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남 해 군 공 보

(8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6	적골	저수지	창선면 옥천리 988 일원	10,867	-	10,867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 소관
변경	47	옥천	저수지	창선면 옥천리 837 일원	102,72 6	-	102,726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 소관
변경	48	갈곡	저수지	창선면 옥천리 138-2 일원	4,268	-	4,268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 소관
변경	49	사시곡	저수지	창선면 상죽리 354 일원	5,065	-	5,065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 소관
변경	50	장곡	저수지	창선면 상죽리 576-4 일원	10,109	-	10,109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농 촌 공 사 소관

■ 변경 사유서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상심천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4	모산	○ 폐지	"
5	아산촌	○ 폐지	"
3	아산	○ 관리번호 변경 - 6 → 3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7	대입현1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8	대입현2	○ 폐지	"
9	토촌	○ 폐지	"
10	섬호	○ 폐지	"
11	외금	○ 폐지	"
4	내금	○ 관리번호 변경 - 12 → 4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3	신촌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5	남해대곡	○ 관리번호 변경 - 14 → 5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6	차산	○ 관리번호 변경 - 15 → 6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6	보량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17	청룡	○ 폐지	"
7	석평	○ 관리번호 변경 - 18 → 7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9	원천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8	복곡	○ 관리번호 변경 - 20 → 8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9	신전1	○ 관리번호 변경 - 21 → 9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2	정지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10	다정	○ 관리번호 변경 - 23 → 10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1	다천	○ 관리번호 변경 - 24 → 11	"
12	난곡	○ 관리번호 변경 - 25 → 12	"
13	난동	○ 관리번호 변경 - 26 → 13	"
14	난문	○ 관리번호 변경 - 27 → 14	"
15	무림	○ 관리번호 변경 - 28 → 15	"
16	골안	○ 관리번호 변경 - 29 → 16	"
17	성현	○ 관리번호 변경 - 30 → 17	"
18	봉곡	○ 관리번호 변경 - 31 → 18	"
19	용문곡	○ 관리번호 변경 - 32 → 19	"
20	용소1	○ 관리번호 변경 - 33 → 20	"
21	용소2	○ 관리번호 변경 - 34 → 21	"
22	봉전	○ 관리번호 변경 - 35 → 22	"
23	초양	○ 관리번호 변경 - 36 → 23	"
24	광두	○ 관리번호 변경 - 37 → 24	"
25	장평	○ 관리번호 변경 - 38 → 25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6	초음	○ 관리번호 변경 - 39 → 26	"
40	강촌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41	뒤린개	○ 폐지	"
42	수곡	○ 폐지	"
27	고잔	○ 관리번호 변경 - 43 → 27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8	시문1	○ 관리번호 변경 - 44 → 28	"

남 해 군 공 보

(88)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9	시문2	○ 관리번호 변경 - 45 → 29	"
30	영지	○ 관리번호 변경 - 46 → 30	"
47	양지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31	갈곡	○ 관리번호 변경 - 48 → 31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32	내산	○ 관리번호 변경 - 49 → 32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50	금송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51	전도	○ 폐지	"
52	동천	○ 폐지	"
53	와현	○ 폐지	"
54	지족	○ 폐지	"
55	물건	○ 폐지	"
56	금양	○ 폐지	"
57	초전	○ 폐지	"
58	송상	○ 폐지	"
59	송남	○ 폐지	"
60	우형	○ 폐지	"
61	중보	○ 폐지	"
33	당항	○ 관리번호 변경 - 62 → 33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34	두곡	○ 관리번호 변경 - 63 → 34	"
35	산요	○ 관리번호 변경 - 64 → 35	"
36	성화	○ 관리번호 변경 - 65 → 36	"
66	재경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67	숙호	○ 폐지	"
68	홍현1	○ 폐지	"
69	홍현2	○ 폐지	"
70	홍현3	○ 폐지	"
71	가천	○ 폐지	"
72	운암1	○ 폐지	"
73	평산	○ 폐지	"
74	오리	○ 폐지	"
75	유구	○ 폐지	"
76	구미	○ 폐지	"
77	상가	○ 폐지	"
78	배당	○ 폐지	"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9	가마	○ 폐지	"
80	울곡	○ 폐지	"
81	울곡2	○ 폐지	"
82	채양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83	양지	○ 폐지	"
84	죽전	○ 폐지	"
85	금곡	○ 폐지	"
86	서호상	○ 폐지	"
87	서호하	○ 폐지	"
88	서호동편	○ 폐지	"
89	서상	○ 폐지	"
90	장항	○ 폐지	"
91	작장	○ 폐지	"
92	중리	○ 폐지	"
37	남상	○ 관리번호 변경 - 93 → 37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94	노구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95	중현	○ 폐지	"
96	회룡	○ 폐지	"
97	도산	○ 폐지	"
98	우물	○ 폐지	"
99	정포	○ 폐지	"
38	연죽	○ 관리번호 변경 - 100 → 38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01	이어신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39	이어	○ 관리번호 변경 - 102 → 39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03	대곡1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40	대곡	○ 관리번호 변경 - 104 → 40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남 해 군 공 보

(9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5	도산구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106	도산신	○ 폐지	"
107	광명	○ 폐지	"
108	관당구	○ 폐지	"
41	오곡	○ 관리번호 변경 - 109 → 41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10	선원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111	천동	○ 폐지	"
112	북남치	○ 폐지	"
42	남치	○ 관리번호 변경 - 113 → 42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14	방월상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115	큰차면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116	소차면	○ 폐지	"
117	갈화신	○ 폐지	"
118	갈화구	○ 폐지	"
119	갈화	○ 폐지	"
120	정태	○ 폐지	"
121	동비구	○ 폐지	"
122	동비신	○ 폐지	"
123	동비	○ 폐지	"
124	고사	○ 폐지	"
43	진목	○ 관리번호 변경 - 125 → 43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44	도래모	○ 관리번호 변경 - 126 → 44	"
45	길가	○ 관리번호 변경 - 127 → 45	"
128	문향구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129	문향신	○ 폐지	"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0	모천구	○ 폐지	"
131	모천신	○ 폐지	"
132	옥동신	○ 폐지	"
133	옥동구	○ 폐지	"
134	문의구	○ 폐지	"
135	상신	○ 폐지	"
136	근유	○ 폐지	"
137	당항	○ 폐지	"
138	당항	○ 폐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43조제1항 규정에 따른 군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로서 저수지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 기결정된 시설을 폐지코자 함
139	대벽	○ 폐지	"
140	단항1	○ 폐지	"
141	단항2	○ 폐지	"
142	율도	○ 폐지	"
143	고순	○ 폐지	"
144	서대1	○ 폐지	"
145	사포	○ 폐지	"
146	광천	○ 폐지	"
147	청산	○ 폐지	"
148	지족	○ 폐지	"
149	연곡	○ 폐지	"
150	가인	○ 폐지	"
151	대곡2	○ 폐지	"
46	적골	○ 관리번호 변경 - 152 → 46	○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47	옥천	○ 관리번호 변경 - 153 → 47	"
48	갈곡	○ 관리번호 변경 - 154 → 48	"
49	사시곡	○ 관리번호 변경 - 155 → 49	"
50	장곡	○ 관리번호 변경 - 156 → 50	"

다. 유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성산 유수지	방재시설	고현면 도마리 702번지 일원	9,960	-	9,960	남해고 제2011-26호 (2011.06.30.)	

남 해 군 공 보

(9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⑥ 보건위생 시설

가. 공동묘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공설 공원묘지	서면 연죽리 산13-1번지 및 남해읍 평현리 일원	117,421	-	117,421	남해고 제1998-14호 (1998.06.08.)	

⑦ 환경기초 시설

가.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남해읍 하수처리장	남해읍 남변리 138	25,680	감)943	24,737	경고 제109호 (1996.07.01.)	하수종말 처리장
폐지	2	고현 하수도	고현면 대사리 667,668	2,652	감)2,652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하수종말 처리장
변경	2	이동 공공하수처리장	이동면 무림리 1163-1	4,727	-	4,727	-	
신설	3	상주공공 하수처리장	상주면 상주리 1434 일원	-	증)6,760	6,760	-	
변경	4	미조 공공하수처리장	미조면 미조리 38-1 일원	3,095	-	3,095	경고 제2007-423호 (2007.11.01.)	
폐지	5	양지 하수도	남면 죽전리 1182-2	658	감)658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6	사촌 하수도	남면 임포리 1173-32	220	감)22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7	운암 하수도	남면 임포리 517	263	감)26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8	가천 하수도	남면 흥현리 795	569	감)569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9	평산 하수도	남면 평산리 1666	340	감)34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0	흥현 하수도	남면 흥현리 78-6	266	감)266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1	유구 하수도	남면 평산리 2062,2062-1 2063-2	1,055	감)1,055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2	구미 하수도	남면 덕월리 1108-1,1107-5, 1109	1,072	감)1,072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3	선구 하수도	남면 선구리 681-6	190	감)19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4	석교 하수도	남면 석교리 1115	1,398	감)1,398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5	상가 하수도	남면 상가리 893	317	감)317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6	송정 하수도	미조면 송정리 1176-1	630	감)63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7	물건 하수도	삼동면 물건리 480-1	644	감)644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8	은점 하수도	삼동면 물건리 660	330	감)33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19	영지 하수도	삼동면 영지리 2989-2	67	감)67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20	삼동 하수도	삼동면 금송리 1412-9 ,1412-23,24	1,347	감)1,347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21	봉화 하수도	삼동면 봉화리 968-2,969-1, 969-6	616	감)616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22	금포 하수도	상주면 상주리 118-9,122	471	감)471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23	작장 하수도	서면 작장리 1032-2	243	감)243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24	대정 하수도	서면 서호리 778-13	1,865	감)1,865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25	봉우 하수도	설천면 금음리 652-7	1,286	감)1,286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26	고사 하수도	설천면 진목리 140-1	499	감)499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27	진목 하수도	설천면 진목리 1144	821	감)821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남 해 군 공 보

(9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28	문항 하수도	설천면 문항리 421	1,135	감)1,135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29	금음 하수도	설천면 문의리 70-9	1,856	감)1,856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30	모천 하수도	설천면 문항리 750-5,750-6	300	감)300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31	용소 하수도	이동면 용소리 401-1	67	감)67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32	신전 하수도	이동면 신전리 765-4	201	감)201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33	금평 하수도	이동면 신전리 945-2	398	감)398	-	남해고 제2009-10호 (2009.02.02.)	
폐지	34	화계 하수도	이동면 화계리 104-5	1,409	감)1,409	-	남해고 제2009-10 (2009.02.02.)	
폐지	35	다천 하수도	이동면 다정리 176-1	866	감)866	-	남해고 제2009-10 (2009.02.02.)	
폐지	36	냉천 하수도	창선면 당항리 185-2	621	감)621	-	남해고 제2009-10 (2009.02.02.)	
폐지	37	장포 하수도	창선면 진동리 576-3	2,192	감)2,192	-	남해고 제2009-10 (2009.02.02.)	
폐지	38	창선 하수도	창선면 수산리 119	1,299	감)1,299	-	남해고 제2009-10 (2009.02.02.)	
폐지	39	식포 하수도	창선면 가인리 615-45	280	감)280	-	남해고 제2009-10 (2009.02.02.)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남해읍 하수처리장	○면적감소(감943㎡) A = 25,680㎡ → 24,737㎡ ○시설명 변경	◦구적오차정정 ◦시설명 변경(남해읍하수도→남해읍 하수처리장)
2	고현 하수도	○폐지	◦500톤이하의 시설로 폐지
2	이동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번호 변경 - 4 → 2 ◦시설명 및 위치변경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시설명 변경(이동하수도→이동 공공하수처리장)
3	상주 공공하수처리장	○신설 A = 6,760㎡	◦기설치된 900톤이상의 하수처리시설로 신규지정
4	미조 공공하수처리장	◦관리번호 변경 - 3 → 4 ◦시설명 및 위치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시설명 변경(미조하수도→미조 공공하수처리장)
5	양지 하수도	○폐지	◦처리용량 500톤이하의 시설로 폐지
6	사촌 하수도	○폐지	"
7	운암 하수도	○폐지	"
8	가천 하수도	○폐지	"
9	평산 하수도	○폐지	"
10	흥현 하수도	○폐지	◦처리용량 500톤이하의 시설로 폐지
11	유구 하수도	○폐지	"
12	구미 하수도	○폐지	"
13	선구 하수도	○폐지	"
14	석교 하수도	○폐지	"
15	상가 하수도	○폐지	"
16	송정 하수도	○폐지	"
17	물건 하수도	○폐지	"
18	은점 하수도	○폐지	"
19	영지 하수도	○폐지	"
20	삼동 하수도	○폐지	"
21	봉화 하수도	○폐지	"
22	금포 하수도	○폐지	"
23	작장 하수도	○폐지	"
24	대정 하수도	○폐지	"
25	봉우 하수도	○폐지	"
26	고사 하수도	○폐지	"
27	진목 하수도	○폐지	"

남 해 군 공 보

(9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8	문항 하수도	○폐지	"
29	금음 하수도	○폐지	"
30	모천 하수도	○폐지	"
31	용소 하수도	○폐지	"
32	신전 하수도	○폐지	"
33	금평 하수도	○폐지	"
34	화계 하수도	○폐지	"
35	다천 하수도	○폐지	"
36	냉천 하수도	○폐지	"
37	장포 하수도	○폐지	"
37	장포 하수도	○폐지	"
38	창선 하수도	○폐지	"
39	식포 하수도	○폐지	"

나. 폐기물처리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폐기물 처리시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남해읍 남변리 11-1 일원	72,658	-	72,658	경고 제201호 (2000.9.30)	
변경	2	농축순환 자원화센터	폐기물 처리시설	남해군 이동면 다정리 산179번지	14,985	증)1,110	16,095	남해고 제2011-24호 (2011.6.16)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농축순환 자원화센터	○면적증가(증1,110㎡) A = 14,985㎡ → 16,095㎡ ○관리번호 변경 - 3 →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부지로의 진출입을 위한 도로개설이 완료됨에 따라 도로를 포함하여 사업구역을 변경하고자 함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다.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위생처리장	분뇨처리시설	남해읍 남변리 138-1번지 일원	5,500	-	5,500	남해고 제2009-10호 (2009.2.2)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97)

II.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총괄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평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남해읍 남변리 482번지 일원	15,864	-	15,864	남해군 고시 제2006-39호 (2006.8.19)	
폐지	1	무림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이동면 무림리, 석평리 일원	291,660	감)291,660	-	건고 제309호 (1987.7.2)	
폐지	2	북곡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이동면 신전리 산103번지 일원	22,543	감)22,543	-	건고 제519호 (1988.10.25)	
폐지	3	지족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상동면 지족리 255번지 일원	297,341	감)297,341	-	건고 제309호 (1987.7.2)	
변경	2	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미조면 미조리 일원	242,000	-	242,000	경고 제1995-212호 (1995.10.5)	
변경	3	송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미조면 송정리 일원	605,283	-	605,283	경고 1994-244호 (1995.10.5)	
폐지	6	당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남면 당항리, 죽전리 일원	209,300	감)209,300	-	건고제309호 (1987.7.2)	
폐지	7	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서면 서상리 일원	163,000	감)163,000	-	건고제309호 (1987.7.2)	
폐지	8	대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고현면 대사리 605번지 일원	327,190	감)327,190	-	경고 제1995-212호 (1995.10.5)	
변경	4	오곡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고현면 오곡리 일원	58,553	-	58,553	-	
변경	5	이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고현면 이어리 일원	10,050	-	10,050	남해군고시 제1995-251호 (1995.11.14)	
변경	6	남해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서면 서상리 1182-9번지 일원	45,478	-	45,478	경고 제1998-49호 (1998.3.14)	
변경	7	월포가족휴양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면 석교리 155번지 일원	62,115	-	62,115	남해군고시 제1999-59호 (1999.12.22)	
폐지	13	상동자연학습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상동면 봉화리 산507번지 일원	94,000	감)94,000	-	남해군고시 제2001-61호 (2001.11.12)	
변경	8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해군 상동면, 물건리, 봉화리 동천리 일원	276,165	-	276,165	경고 제2003-33호 (2003.12.10)	
변경	9	남해하모니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면 덕월리 316번지 일원	833,799	-	833,799	경고 제2004-19호 (2004.1.15)	
변경	10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이동면 신전리 735번지일원	59,870	-	59,870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1.1.16)	
폐지	17	상주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상주면 상주리 일원	669,477	감)669,477	-	경고 제2005-157호 (2005.5.26)	
변경	11	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창선면 상신리 1-1번지일원	205,400	-	205,400	경고 제2007-487호 (2007.11.29)	
폐지	19	연륙교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창선면 대벽리 일원	234,730	감)234,730	-	건고 제1998-433호	
변경	12	금송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상동면 금송리 873-9번지일원	48,360	-	48,360	경고 제2007-443호 (2007.11.08)	
변경	13	장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창선면 진동리 산243번지일원	1,940,284.5	-	1,940,284.5	남해군고시 제2010-32호 (2010.5.31)	
폐지	1	성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고현면 도마리 1879번지 일원	741,971	감)741,971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변경	14	대한야구캠프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서면 서상리 1182-3번지 일원	56,454	-	56,454	남해군고시 제2013-3호 (2013.1.7)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무림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2	복곡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개발계획 미수립지역으로 기결정 용도지구 폐지
3	지족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2	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4 → 2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3	송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5 → 3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6	당항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7	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8	대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
4	오곡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9 → 4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5	이어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0 → 5	"
6	남해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1 → 6	"
7	월포가족휴양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2 → 7	"
13	삼동자연학습장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군계획시설(유원지) 지정에 따른 폐지
8	독일마을원예예술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4 → 8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9	남해하모니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5 → 9	"
10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6 → 10	"
17	상주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11	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8 → 11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9	연륙교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 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12	금송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20 → 12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3	장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7 → 13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	성산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남해 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기 결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14	대한야구캠프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21 → 14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②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이동면 무림 지구단위계획(주거형) - 폐지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무림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이동면 무림리, 석평리 일원	291,660	감)291,660	-	건고 제309호 (1987.7.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무림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구 폐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91,660	감)291,660	-	-	
	주거용지	173,728	감)173,728	-	-	
	상업용지	10,828	감)10,828	-	-	
	녹지용지	1,561	감)1,561	-	-	
공공 시설 용 지	소계	105,543	감)105,543	-	-	
	도로	47,612	감)47,612	-	-	
	주차장	6,056	감)6,056	-	-	
	초등학교	15,401	감)15,401	-	-	
	중고등학교	24,393	감)24,393	-	-	
	면사무소	1,930	감)1,930	-	-	
	파출소	403	감)403	-	-	
	우체국	697	감)697	-	-	
	보건지소	1,782	감)1,782	-	-	
	어린이공원	6,917	감)6,917	-	-	
	교통광장	352	감)352	-	-	

남 해 군 공 보

(10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 폐지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5	6,023	47,529	1	1,333	13,527	2	567	4,663	22	3,980	29,339
중로	1	872	9,986	-	-	-	-	-	-	1	872	9,986
소로	24	5,008	37,543	1	1,333	13,527	2	567	4,663	21	3,108	19,353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중로	3	1	12	간선 도로	872	북측구역계	남측구역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1	1	10	집산 도로	1,333	소로2-1	중로3-1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2	1	8	집산 도로	515	중로3-1	동측구역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2	2	8	집산 도로	52	중로3-1	동측구역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43	중로3-1	동측구역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	6	국지 도로	132	중로3-1	서측구역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3	6	국지 도로	127	중로3-1	동측구역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4	6	국지 도로	61	소로3-3	소로2-1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5	6	-	87	중로3-1	소로2-1	-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6	6	국지 도로	248	중로3-1	소로1-1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3	7	6	-	145	소로1-1	소로3-5	-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8	6	국지 도로	87	소로1-1	소로3-14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9	6	국지 도로	44	소로1-1	소로3-10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0	6	국지 도로	268	소로1-1	소로3-14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1	6	국지 도로	148	소로3-13	소로3-14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2	6	국지 도로	112	중로3-1	소로3-13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3	6	국지 도로	166	중로3-1	소로3-18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4	6	국지 도로	361	중로3-1	소로1-1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5	6	국지 도로	65	소로1-1	소로3-16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6	6	국지 도로	139	소로3-10	소로3-14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22	소로3-19	소로3-18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8	6	국지 도로	465	소로1-1	소로1-1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9	6	국지 도로	98	소로3-14	소로3-18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0	6	국지 도로	88	소로3-18	소로1-1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1	6	국지 도로	102	소로3-18	소로1-1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호선	-	○노선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노선폐지
소로1-1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호선	-	○노선폐지	"
소로2-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5호선	-	○노선폐지	"
소로3-6호선	-	○노선폐지	"
소로3-7호선	-	○노선폐지	"
소로3-8호선	-	○노선폐지	"
소로3-9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0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5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6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7호선	-	○노선폐지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8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9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0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1호선	-	○노선폐지	"

②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주차장	이동면 무림리 1146대 일원	1,418	감)1,418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2	주차장	이동면 무림리 1464-1대 일원	1,297	감)1,297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3	주차장	이동면 무림리 1566임 일원	1,861	감)1,861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4	주차장	이동면 무림리 1657-3전 일원	1,480	감)1,480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주차장 폐지
2	주차장	○폐지	"
3	주차장	○폐지	"
4	주차장	○폐지	"

남 해 군 공 보

(10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2) 공간시설

① 광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광장	교통광장	이동면 석평리 802-6답 일원	352	감)352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광장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광장 폐지

②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공원	어린이공원	이동면 무림리 1480임 일원	1,370	감)1,370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2	공원	어린이공원	이동면 무림리 962전 일원	5,547	감)5,547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공원 폐지
2	공원	○폐지	"

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이동초등학교	초등학교	이동면 석평리 52-2학 일원	15,401	감)15,401	-	남해군고시 제1995-191호	
폐지	2	이동중학교	중고등학교	이동면 무림리 1315학 일원	24,393	감)24,393	-	남해군고시 제1995-191호	
		남해고등학교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이동초학교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학교 폐지
2	이동중학교 남해고등학교	○폐지	"

②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이동면사무소	면사무소	무림리 1021-1대 일원	1,930	감)1,930	-	남해군고시 제1995-191호	
폐지	2	화전지구대	파출소	무림리 921-3대	403	감)403	-	남해군고시 제1995-191호	
폐지	3	이동우체국	우체국	무림리 1133-3대 일원	697	감)697	-	남해군고시 제1995-191호	
폐지	4	이동보건지소	보건지소	무림리 1042전 일원	1,904	감)1,904	-	남해군고시 제1995-191호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이동면사무소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공공청사 폐지
2	화전지구대	○폐지	"
3	이동우체국	○폐지	"
4	이동보건지소	○폐지	"

남 해 군 공 보

(10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	173,689	감) 173,689	-	I-1	이동면 석평리 802-2주 일원	750	감)750	-	-
				I-2	이동면 석평리 19대 일원	5,655	감)5,655	-	-
				I-3	이동면 무림리 1160-2답 일원	7,900	감)7,900	-	-
				I-4	이동면 무림리 1236-3대 일원	2,815	감)2,815	-	-
				I-5	이동면 무림리 1209-4대 일원	2,355	감)2,355	-	-
				I-6	이동면 무림리 1218대 일원	7,945	감)7,945	-	-
				I-7	이동면 무림리 1114-2답 일원	1,590	감)1,590	-	-
				I-8	이동면 무림리 1124대 일원	7,975	감)7,975	-	-
				I-9	이동면 무림리 1144대 일원	8,136	감)8,136	-	-
				I-11	이동면 무림리 1038-12대 일원	2,175	감)2,175	-	-
				I-12	이동면 무림리 1033-8대 일원	9,753	감)9,753	-	-
				I-13	이동면 무림리 1466-2대 일원	2,000	감)2,000	-	-
				I-14	이동면 무림리 1050답 일원	13,966	감)13,966	-	-
				I-15	이동면 무림리 1016-2대 일원	10,715	감)10,715	-	-
				I-16	이동면 무림리 932대 일원	3,380	감)3,380	-	-
				I-17	이동면 무림리 927대 일원	11,450	감)11,450	-	-
				I-18	이동면 무림리 1478대 일원	6,128	감)6,128	-	-
				I-19	이동면 무림리 1540대 일원	4,000	감)4,000	-	-
				I-20	이동면 무림리 1062대 일원	9,825	감)9,825	-	-
				I-21	이동면 무림리 1570대 일원	5,825	감)5,825	-	-
				I-22	이동면 무림리 983대 일원	3,120	감),120	-	-
				I-23	이동면 무림리 974대 일원	12,785	감)12,785	-	-
				I-24	이동면 무림리 953대 일원	9,610	감)9,610	-	-
				I-25	이동면 무림리 914-5대 일원	2,975	감)2,975	-	-
				I-26	이동면 무림리 1589대 일원	10,055	감)10,055	-	-
				I-27	이동면 무림리 1650 전 일원	6,120	감)6,120	-	-
				I-28	이동면 무림리 947-1전 일원	4,686	감)4,686	-	-

2) 상업시설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	10,828	감)10,828	-	II-1	이동면 무림리 1140잡 일원	8,096	감)8,096	-	-
				II-2	이동면 무림리 1037-8대 일원	2,732	감)2,732	-	-

3) 녹지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I	1,561	감)1,561	-	III	이동면 무림리 1190-1답 일원	1,561	감)1,561	-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폐지

1) 주거용지

도면표시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I-1 ~ I-28	이동면 무림리, 석평리 일원	용 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율	150%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남 해 군 공 보

(108)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2) 상업용지

도면표시 번 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1 ~ II-2	이동면 무림리 1140잡, 1037-8 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율	150%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녹지용지

구 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I	무림리 1190-1 답 일원	용 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지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 이동면 복곡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 폐지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2	복곡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이동면 신전리 산103번지 일원	22,543	감)22,543	-	건고 제519호 (1988.10.2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복곡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지구단위계획 미수립지역으로 기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3. 삼동면 지족 지구단위계획(주거형) - 폐지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3	지족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삼동면 지족리 255번지 일원	297,341	감)297,341	-	건고 제309호 (1987.7.2)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지족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구 폐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97,341	감)297,341	-	-	
주거용지	164,973	감)164,973	-	-	
	주거용지	157,642	감)157,642	-	
	아파트용지	7,331	감)7,331	-	-
공공시설지	38,814	감)38,814	-	-	
공동이용시설지	26,363	감)26,363	-	-	
농외소득부업시설지	10,210	감)10,210	-	-	
도로용지	55,063	감)55,063	-	-	
기타	1,918	감)1,918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 폐지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42	7,025	55,063	-	-	-	5	994	9,709	37	6,031	45,354
대로	2	375	9,403	-	-	-	-	-	-	2	375	9,403
중로	2	775	10,053	-	-	-	1	251	3,765	1	524	6,288
소로	38	5,875	35,607	-	-	-	4	743	5,944	34	5,132	29,663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대로	3	1	25	주간선	135	388-4도	170답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대로	3	2	25	주간선	240	388-4도	291-7도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중로	2	1	15	보조간선	251	410-2 도	535-1 도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중로	3	1	12	보조간선	524	289-2 도	1205-3 학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2	1	8	집산도로	279	280-2 도	353-1 전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2	2	8	집산도로	109	326-1 전	342-1 잡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2	3	8	집산도로	205	383 답	326-1 전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2	4	8	집산도로	150	409-2 답	400 답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	7	국지도로	177	410-2 도	267-2 도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133	196-2 도	224-1 대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89	207-2 도	230-3 대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남 해 군 공 보

(11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3	25	5	국지 도로	60	462 답	466 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6	5	국지 도로	258	493-1 전	588 묘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7	5	국지 도로	35	502 대	507 대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8	5	국지 도로	163	489 답	589-2 답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9	5	국지 도로	85	491 답	583 묘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30	5	국지 도로	94	339-2 답	294-1 답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31	5	국지 도로	156	271-2 도	248-5 답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32	5	국지 도로	128	202-1 대	201-3 답	일반 도로	시장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33	4	국지 도로	127	236-1 대	229-16 대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34	4	국지 도로	117	228-2 대	222-3 대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35	5	국지 도로	67	329-2 전	323-1 대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4	6	국지 도로	86	259-2 도	266-3 대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5	6	국지 도로	624	224-1 대	342 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6	6	국지 도로	195	258-1 도	170 답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7	6	국지 도로	210	207-2 도	171 답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8	6	국지 도로	140	386-2 도	296 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3	9	6	국지 도로	44	301-1 답	300 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0	6	국지 도로	100	306-1대	308 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1	6	국지 도로	55	313-4 대	313-1 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3	6	국지 도로	100	310-2전	303 대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4	6	국지 도로	108	379-1 답	360-4 대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02	376-3 도	313-1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6	6	국지 도로	320	535-2 대	494-1 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7	7	국지 도로	438	386-2 도	592 답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8	6	국지 도로	99	533-4 전	528-4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9	6	국지 도로	87	532-3 전	524 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0	6	국지 도로	110	519 전	517 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1	6	국지 도로	83	393 대	406 답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2	6	국지 도로	86	396-1 답	402 답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3	6	국지 도로	254	417 답	443-2 전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4	5	국지 도로	202	438-2 대	475 답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대로3-1호선	-	○노선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노선폐지
대로3-2호선	-	○노선폐지	"
중로2-1호선	-	○노선폐지	"
중로3-1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호선	-	○노선폐지	
소로2-2호선	-	○노선폐지	"
소로2-3호선	-	○노선폐지	"
소로2-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5호선	-	○노선폐지	"
소로3-6호선	-	○노선폐지	"
소로3-7호선	-	○노선폐지	"
소로3-8호선	-	○노선폐지	"
소로3-9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0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3호선	-	○노선폐지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1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5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6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7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8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9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0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5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6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7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8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9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0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5호선	-	○노선폐지	"

다. 기타사항에 관한 관리계획결정(변경) 조서

1) 공공 및 공동이용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구분	가구번호	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5,723	감)65,723	-	
1	초 등 학 교	12	10,850	감)10,850	-	
2	중 고 등 학 교	1	20,850	감)20,850	-	
3	면 사 무 소	11	1,890	감)1,890	-	
4	우 체 국	11	479	감)479	-	
5	보 건 지 소	8	296	감)296	-	
6	어 촌 지 도 소	2	231	감)231	-	
7	수 협 공 판 장	4	383	감)383	-	
8	수 협 지 고	13	300	감)300	-	
9	지 서	13	620	감)620	-	
10	한 국 통 신	17	2,240	감)2,240	-	
11	한 국 전 력	10	675	감)675	-	
12	마 을 회 관	10	430	감)430	-	
13	공 동 구 판 장	7	3,845	감)3,845	-	
14	시 장	7	1,460	감)1,460	-	
15	내 외 정 류 장	33	1,620	감)1,620	-	
16	공 동 작 업 장	33	3,500	감)3,500	-	
17	보 관 창 고	34	1,564	감)1,564	-	
18	농 기 구 센 타	34	1,380	감)1,380	-	
19	공 동 회 관	35,36	7,970	감)7,970	-	
20	공 동 광 장	39	5,140	감)5,140	-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가구번호	가구면적 (㎡)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40,390	감)240,390	-		
1	20,850	감)20,850	-	지족리 192-3학 일원	
2	8,580	감)8,580	-	지족리 224-2 잡 일원	
3	6,200	감)6,200	-	지족리 212 대	
4	3,520	감)3,520	-	지족리 230-30 대 일원	
5	6,090	감)6,090	-	지족리 237-1 대 일원	
6	8,200	감)8,200	-	지족리 288-1 대 일원	
7	8,168	감)8,168	-	지족리 197-8 대 일원	
8	5,159	감)5,159	-	지족리 202-7 전 일원	
9	4,740	감)4,740	-	지족리 248-1 전 일원	
10	5,970	감)5,970	-	지족리 252 전 일원	
11	3,250	감)3,250	-	지족리 257-2 대 일원	
12	10,850	감)10,850	-	지족리 255 학 일원	
13	5,650	감)5,650	-	지족리 279-1전 일원	
14	5,170	감)5,170	-	지족리 291 답 일원	
15	3,830	감)3,830	-	지족리 341 전 일원	
16	5,870	감)5,870	-	지족리 339-3 대 일원	
17	2,240	감)2,240	-	지족리 294-4 대 일원	
18	10,210	감)10,210	-	지족리 349 전 일원	
19	7,331	감)7,331	-	지족리 317 전 일원	
20	1,632	감)1,632	-	지족리 319 전 일원	
21	9,070	감)9,070	-	지족리 331 전 일원	
22	3,050	감)3,050	-	지족리 296-2 대 일원	
23	2,110	감)2,110	-	지족리 301-1 답 일원	
24	4,100	감)4,100	-	지족리 309 전 일원	
25	3,380	감)3,380	-	지족리 384-1 전 일원	
26	2,000	감)2,000	-	지족리 312전 일원	
27	2,780	감)2,780	-	지족리 380-1 잡 일원	
28	2,690	감)2,690	-	지족리 360-1 답 일원	
29	1,600	감)1,600	-	지족리 374-1 대 일원	
30	6,120	감)6,120	-	지족리 533-3 전 일원	

남 해 군 공 보

(118)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가구번호	가구면적 (㎡)			위 치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31	3,840	감)3,840	-	지족리 409-2 답 일원	
32	3,880	감)3,880	-	지족리 408 대 일원	
33	7,560	감)7,560	-	지족리 402 답 일원	
34	4,370	감)4,370	-	지족리 397 답 일원	
35	4,490	감)4,490	-	지족리 528-1 전 일원	
36	5,490	감)5,490	-	지족리 521-3 전 일원	
37	7,130	감)7,130	-	지족리 449 대 일원	
38	3,590	감)3,590	-	지족리 558 전 일원	
39	5,140	감)5,140	-	지족리 495 전 일원	
40	5,920	감)5,920	-	지족리 500 대 일원	
41	3,710	감)3,710	-	지족리 463 답 일원	
42	2,800	감)2,800	-	지족리 492 전 일원	
43	3,760	감)3,760	-	지족리 483 대 일원	
44	2,100	감)2,100	-	지족리 591 답 일원	
45	2,930	감)2,930	-	지족리 589-1 답 일원	
46	3,270	감)3,270	-	지족리 582-3 대 일원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폐지

1) 아파트 용지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	19 (지족리 317 전 일원)	용도	지정용도	○ 주택법 제2조에 의한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15층 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도면표시 참조	

4. 미조면 미조 지구단위계획(주거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	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미조면 미조리 일원	242,000	-	242,000	경고 제1995-212호 (1995.1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미조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4 → 2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42,000	-	242,000	100.0	
주 거 용 지	113,065	감)2,678	110,387	45.6	
상 업 용 지	36,601	증)939	37,540	15.5	
녹 지 용 지	49,259	-	49,259	20.4	
공 공 시 설 용 지	43,075	증)1,739	44,814	18.5	
도로	26,700	증)55	26,755	11.1	
주차장	1,884	-	1,884	0.8	
초등학교	12,535	-	12,535	5.2	
면사무소	1,397	증)632	2,029	0.8	
파출소	559	-	559	0.2	
우체국	-	증)792	792	0.3	
보건지소	-	증)260	260	0.1	

남 해 군 공 보

(12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소 로	18	4,153	26,754	1	1,138	11,570	2	426	3,430	15	2,589	11,755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1	1	10	간선도로	1,138	남측구역계	서측구역계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1	7	10	간선도로	1,138	남측구역계	서측구역계	일방도로	-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378	산152-6임	140-27도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2	57	8	집산도로	378	산152-6임	140-27도	일방도로	-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48	170-32잡	산54-5도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2	58	8	집산도로	48	170-32잡	산54-5도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1	6	국지도로	275	소2-2호선	남측구역계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9	6	국지도로	284	소2-58호선	남측구역계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188	105-9도	632-4도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10	6	국지도로	188	105-9도	632-4도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54	소3-1호선	소3-5호선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11	4	국지도로	54	소3-9호선	소3-13호선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4	4	국지도로	106	835도	100-10도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12	4	국지도로	106	835도	100-10도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5	4	국지도로	346	832도	834-2제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변경	소로	3	13	4	국지로	346	832도	834-2제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6	4	국지로	48	96-14대	100-10도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14	4	국지로	48	96-14대	100-10도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7	4	국지로	111	소1-1호선	소3-5호선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15	4	국지로	111	소1-6호선	소3-13호선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8	4	국지로	142	96-5대	104-17대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16	4	국지로	142	96-5대	104-17대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9	4	국지로	110	104-16대	104-71대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17	4	국지로	110	104-16대	104-71대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10	4	국지로	259	85-6전	104-31대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18	4	국지로	259	85-6전	104-31대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11	4	국지로	71	104-12대	104-28대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19	4	국지로	71	104-12대	104-28대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12	4	국지로	54	104-9대	104-84대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20	4	국지로	54	104-9대	104-84대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13	4	국지로	342	839-1대	639대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21	4	국지로	342	839-1대	639대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14	4	국지로	420	464-2도	611-8도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22	4	국지로	420	464-2도	611-8도	일방도로	-		
기정	소로	3	15	4	국지로	54	632-6대	638대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변경	소로	3	23	4	국지로	54	632-6대	638대	일방도로	-		

남 해 군 공 보

(12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호선	소로1-7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2-1호선	소로2-57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2-2호선	소로2-58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1호선	소로3-9호선	○노선변경 및 노선명 변경 -L = 275m → 284m	○현황도로를 반영한 선형변경 및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2호선	소로3-10호선	○노선명 변경	°도로위계에 따른 노선명 변경
소로3-3호선	소로3-11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4호선	소로3-12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5호선	소로3-13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6호선	소로3-14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7호선	소로3-15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8호선	소로3-16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9호선	소로3-17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10호선	소로3-18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11호선	소로3-19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12호선	소로3-20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13호선	소로3-21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14호선	소로3-22호선	○노선명 변경	"
소로3-15호선	소로3-23호선	○노선명 변경	"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123)

②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주차장	미조면 미조리 102번지 일원	1,884	-	1,884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주차장	○관리번호 변경 - 1 → 5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5	미조 초등학교	초등학교	미조면 미조리 465-1학 일원	12,535	-	12,535	남해군고시 제2003-15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5	미조초등학교	○관리번호 변경 - 1 → 15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②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미조 면사무소	면사무소	미조면 미조리 104-19번지	1,397	증)632	2,029	남해군고시 제2003-15호 (2009.02.05.)	
변경	9	미조파출소	파출소	미조면 미조리 105-14번지	559	-	559	경고 제2009-13호 (2009.02.05.)	
신설	10	미조우체국	우체국	미조면 미조리 102	-	증)792	792		
신설	11	미조보건지소	보건지소	미조면 미조리 104-75	-	증)260	26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미조면사무소	○관리번호 변경(1→8) ○면적증가(증632㎡) A=1,397㎡→2,029㎡	◦현황여건을 반영한 면사무소 위치변경 및 면적변경
9	미조파출소	○관리번호 변경 - 2 → 9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0	미조우체국	○신설 A=792㎡	◦기조성된 공공청사를 신규로 결정코자 함
11	미조보건지소	○신설 A=260㎡	◦기조성된 공공청사를 신규로 결정코자 함

남 해 군 공 보

(12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위 치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	113,065	감)2,678	110,387	I - 1	544대 일원	15,695	-	15,695	
				I - 2	604대 일원	3,038	-	3,038	
				I - 3	655대 일원	5,876	-	5,876	
				I - 4	587대 일원	7,517	-	7,517	
				I - 5	575대 일원	4,906	-	4,906	
				I - 6	370대 일원	6,485	-	6,485	
				I - 7	294대 일원	10,010	-	10,010	
				I - 8	77-9대 일원	7,437	-	7,437	
				I - 9	78대 일원	7,385	-	7,385	
				I - 10	154대 일원	13,427	감)2,758	10,669	
				I - 11	94-8대 일원	2,362	-	2,362	
				I - 12	168대 일원	25,575	감)1,274	24,301	
				I - 13	170-5대 일원	607	-	607	
				I - 14	168-21잡 일원	2,745	증)1,354	4,099	

2) 상업시설용지

가구 번호	면적 (㎡)			도면 번호		위 치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	36,601	증)939	37,540	II - 1	II - 1	669대 일원	2,854	-	2,854	
				II - 2	II - 2	632-19잡 일원	3,300	-	3,300	
				II - 3	II - 3	105-7대 일원	3,681	-	3,681	
				II - 4	II - 4	104-7대 일원	2,655	-	2,655	
				II - 5	II - 5	104-2대 일원	389	감)63	326	
				II - 6	II - 6	104-8대 일원	1,174	-	1,174	
				II - 7	II - 7	104-9대 일원	1,494	-	1,494	
				II - 8	II - 8	104-57대 일원	1,885	-	1,885	
				II - 9	II - 9	104-11대 일원	2,125	-	2,125	
				II - 10	II - 10	104-87대 일원	926	-	926	
				II - 11	II - 11	104-78대 일원	997	-	997	
				II - 12	II - 12	104-12대 일원	311	증)4,877	5,188	
				II - 13	-	100-1대 일원	3,740	감)3,740	-	II - 12와 합병
				II - 14	II - 13	100-27대 일원	1,691	-	1,691	
				II - 15	II - 14	99-7대 일원	1,647	-	1,647	
				II - 16	II - 15	98대 일원	1,132	-	1,132	
				II - 17	II - 16	160대 일원	3,455	-	3,455	
				II - 18	II - 17	161대 일원	1,749	-	1,749	
				II - 19	II - 18	163-7대 일원	1,396	감)135	1,261	

3) 녹지용지 - 변경없음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II	49,259	III- 1	529-1도 일원	3,249	-
		III- 2	539-3임 일원	13,027	-
		III- 3	116전 일원	24,720	-
		III- 4	107-2잡 일원	1,620	-
		III- 5	104-27도 일원	160	-
		III- 6	75-4제 일원	2,100	-
		III- 7	169전 일원	4,383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기정>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1 ~ I-14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5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4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남 해 군 공 보

(12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 변경 >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 I-13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5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4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5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7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 상업용지
<기정>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획내용
II-1 ~ II-19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7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20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변경>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획내용
II-1 ~ II-18	용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7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시행령」 별표20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녹지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I-1 ~ III-7	용 도	지정용도	•녹지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5. 미조면 송정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 관리번호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3	송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미조면 송정리 일원	605,283	-	605,283	경고 1994-244호 (1995.10.5)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3	송정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5 → 3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 총괄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 고
계	605,283	100.0	
공공편익시설지구	105,640	17.5	
숙박시설지구	171,626	28.4	
상가시설지구	29,156	4.8	
운동오락지구	5,112	0.8	
휴양문화시설지구	31,745	5.2	
기타시설지구	262,004	43.3	

■ 세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입시설지구		시설지구 내 설치하는 시설			비 고
	면적(m ²)	비율(%)	시설명	면적(m ²)	비율(%)	
총면적	605,283	100.0	-	-	-	
공공편의 시설지구	105,640	17.5	소 계	105,640	100.0	
			오수처리장	2,828	2.7	가-3~4
			주 차 장	24,112	22.8	가-1~2
			도 로	75,423	71.4	-
			샤워탈의장/화장실	451	0.4	가-5
			관리사무실	2,390	2.3	가-6~7
			마을회관	436	0.4	가-8
숙박시설 지 구	171,626	28.4	소 계	171,626	100.0	
			관광숙박편의시설	171,626	100.0	나-1~16
상가시설 지 구	29,156	4.8	소 계	29,156	100.0	
			상 가	25,939	89.0	다-3~9
			음 식 점	3,217	11.0	다-1~2
운동오락 지 구	5,112	0.8	소 계	5,112	100.0	
			게이트볼장	1,065	20.8	라-1
			해수풀장	4,047	79.2	라-2
휴양문화 시설지구	31,745	5.2	소 계	31,745	100.0	
			야외공연장	498	1.6	마-1
			야 영 장	5,308	16.7	마-3~4
			청소년수련원	10,884	34.3	마-2
			전 망 대	6,492	20.4	마-7
			공원	8,563	27.0	마-5~6
기타시설 지 구	262,004	43.3	소 계	262,004	100.0	
			녹 지	262,004	100.0	바-1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131)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총괄표

류별	합계			1류			2류			3류		
	계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계	26	9,137	75,423	4	3,672	37,960	5	2,315	19,589	17	3,150	17,874
중로	1	80	991	-	-	-	-	-	-	1	80	991
소로	25	9,057	74,432	4	3,672	37,960	5	2,315	19,589	16	3,070	16,883

■ 도로 결정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 정 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80	소로1-1	소로2-5	일반 도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1	1	10	보조 간선도로	2,053	1125-4도	1009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95	1218-1도	소로2-2	일반 도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890	소로2-5	962-3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634	소로1-1	소로1-3	일반 도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2	1	8	보조 간선도로	565	소로1-1	산325-2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도로	444	소로1-1	소로3-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3	8	국지도로	131	소로2-1	소로2-4	일반 도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2	4	8	국지도로	713	소로1-1	소로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5	9	국지도로	462	소로2-4	소로1-3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	7	국지도로	578	소로1-1	727전	일반 도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73	소로3-6	소로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3	6~7	국지도로	805	소로2-2	1034-5잡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4	6	국지도로	87	소로1-1	1030양	일반 도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3	5	6	국지도로	55	소로3-3	소로3-13	일반 도로			

남 해 군 공 보

(13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3	6	6	국지도로	170	소로3-3	소로1-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7	6	국지도로	32	소로2-4	산327-1임	일반 도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3	8	6	국지도로	34	소로2-4	1462도	일반 도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3	9	6	국지도로	277	소로1-3	896-2임	일반 도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3	10	6	국지도로	157	소로1-1	산348-12임	일반 도로				
기정	소로	3	11	1.5	산책로	18	소로3-3	소로3-13	산책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3	12	6.0	국지도로	67	소로3-1	1230-1전	일반 도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3	13	3~4	산책로	678	소로3-3	산281-8임	산책로				
기정	소로	3	14	1.5	산책로	14	소로3-3	소로3-13	산책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3	15	2.0	산책로	13	소로3-3	소로3-13	산책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소로	3	16	1.5	산책로	12	소로3-3	소로3-13	산책로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② 주차장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가-1	주차장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139일원	20,931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가-2	주차장	남해군 미조면 송정리 1007-2일원	3,181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2) 공간시설

①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 고
					8,563		
기정	마-5	송정공원1	소공원	미조면 송정리 754	927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마-6	송정공원2	소공원	미조면 송정리 752	7,636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②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합 계					262,004		
기정	바-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369-1번지 일원	14,817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기정	바-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76-2번지 일원	47	"	
기정	바-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70번지 일원	397	"	
기정	바-4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136-1번지 일원	11,304	"	
기정	바-5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7-3번지 일원	1,331	"	
기정	바-6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7번지 일원	541	"	
기정	바-7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4번지 일원	445	"	
기정	바-8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3번지 일원	621	"	
기정	바-9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1063-1번지 일원	424	"	
기정	바-10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753번지 일원	3,123	"	
기정	바-1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748번지 일원	6,964	"	
기정	바-1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06-1번지 일원	2,782	"	
기정	바-1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05번지 일원	190	"	
기정	바-14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40-24번지 일원	778	"	
기정	바-15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50번지 일원	84,134	"	
기정	바-16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48-12번지 일원	6,518	"	
기정	바-17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857-6번지 일원	20,832	"	
기정	바-18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31번지 일원	9,646	"	
기정	바-19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837-6번지 일원	443	"	
기정	바-20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22-2번지 일원	113	"	
기정	바-21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54-2번지 일원	69,184	"	
기정	바-22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산324-1번지 일원	12,995	"	
기정	바-23	녹지	완충녹지	미조면 송정리 904번지 일원	14,375	"	

3) 환경기초시설

①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6	송정 하수도1	미조면 송정리 1176-1	1,430	남해고 제2009-10호 (2009.2.2.)	
기정	가-3	송정 하수도2	미조면 송정리 1018	1,398	남해고 제2015-31호 (2015.4.17.)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605,283	-	605,283	
공공 편익 시설 지구	가	소계	105,640	-	105,640	
		가-1	20,931	미조면 송정리 1139번지 일원	20,931	주차장
		가-2	3,181	미조면 송정리 1007-2번지 일원	3,181	주차장
		가-3	1,398	미조면 송정리 1018번지 일원	1,398	오수처리장
		가-4	1,430	미조면 송정리 1176-3번지 일원	1,430	오수처리장
		가-5	451	미조면 송정리 1175-6번지 일원	451	샤워탈의장/화장실
		가-6	1,063	미조면 송정리 1124-6번지 일원	1,063	관리사무소
		가-7	1,327	미조면 송정리 1067-15번지 일원	1,327	관리사무소
		가-8	436	미조면 송정리 1065번지 일원	436	마을회관
		-	75,423	-	75,423	도로
숙박 시설 지구	나	소계	171,626	-	171,626	
		나-1	7,073	미조면 송정리 1230-2번지 등 일원	7,07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2	25,852	미조면 송정리 1104번지 등 일원	25,852	관광숙박·휴게시설
		나-3	3,045	미조면 송정리 719-1번지 등 일원	3,045	관광숙박·휴게시설
		나-4	2,072	미조면 송정리 1036번지 등 일원	2,072	관광숙박·휴게시설
		나-5	4,827	미조면 송정리 1030번지 등 일원	4,82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6	18,687	미조면 송정리 855번지 등 일원	18,68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7	10,698	미조면 송정리 857번지 등 일원	10,698	관광숙박·휴게시설
		나-8	8,164	미조면 송정리 854번지 등 일원	8,164	관광숙박·휴게시설
		나-9	7,290	미조면 송정리 830번지 등 일원	7,29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0	6,157	미조면 송정리 839번지 등 일원	6,157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1	6,553	미조면 송정리 837번지 등 일원	6,55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2	7,480	미조면 송정리 848번지 등 일원	7,48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3	4,520	미조면 송정리 878번지 등 일원	4,52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4	10,813	미조면 송정리 1009번지 등 일원	10,813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5	26,760	미조면 송정리 903번지 등 일원	26,760	관광숙박·휴게시설
		나-16	21,635	미조면 송정리 896-1번지 등 일원	21,635	관광숙박·휴게시설
상가 시설 지구	다	소계	29,156		29,156	
		다-1	1,984	미조면 송정리 1122번지 일원	1,984	음식점
		다-2	1,233	미조면 송정리 1119번지 일원	1,233	음식점
		다-3	1,665	미조면 송정리 1126번지 등 일원	1,665	상 가
		다-4	634	미조면 송정리 1221번지 등 일원	634	상 가
		다-5	4,764	미조면 송정리 1226번지 등 일원	4,764	상 가
		다-6	560	미조면 송정리 1034-4번지 등 일원	560	상 가
		다-7	9,251	미조면 송정리 870번지 등 일원	9,251	상 가
		다-8	7,083	미조면 송정리 1019번지 등 일원	7,083	상 가
		다-9	1,982	미조면 송정리 1007-1번지 등 일원	1,982	상 가

구분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지		비 고
				위 치	면적(m ²)	
운동· 오락 시설 지구	라	소계	5,112		5,112	
		라-1	1,065	미조면 송정리 1167번지 일원	1,065	게이트볼장
		라-2	4,047	미조면 송정리 1038번지 일원	4,047	해수풀장
휴양 문화 시설 지구	마	소계	31,745		31,745	
		마-1	498	미조면 송정리 1175-6번지 일원	498	야외공연장
		마-2	10,884	미조면 송정리 1175-4번지 일원	10,884	청소년수련원
		마-3	4,063	미조면 송정리 1124-9번지 일원	4,063	야영장
		마-4	1,245	미조면 송정리 880번지 일원	1,245	야영장
		마-5	927	미조면 송정리 754번지 일원	927	공 원
		마-6	7,636	미조면 송정리 752번지 일원	7,636	공 원
		마-7	6,492	미조면 송정리 892번지 일원	6,492	전망대
기타 시설 지구	바	소계	262,004		262,004	
		바-1	262,004	미조면 송정리 1369번지 등 일원	262,004	녹 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관한 결정 조서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가 (공공 편 익시설지 구)	가-1 / 가-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권 장 용 도	주차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가-3 / 가-4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권 장 용 도	오수처리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1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5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권 장 용 도	샤워탈의장 / 화장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6 / 가-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권 장 용 도	관리사무소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가-8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 시설	
		권 장 용 도	마을회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나 (숙박 시 설 지구)	나-1 ~ 나-10 / 나-12 ~ 나-15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권 장 용 도	관광숙박편의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나 (숙박 시설 지구)	나-11 / 나-16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숙박시설	
			권 장 용 도	관광숙박·편의시설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다 (상가 시설 지구)	다-1 / 다-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권 장 용 도	음식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2층이하	
			최 저 한 도	-	
	다-3 ~ 다-9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권 장 용 도	상 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2층이하	
			최 저 한 도	-	
라 (운동 오락시설지구)	라-1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권 장 용 도	게이트볼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2층이하	
			최 저 한 도	-	
	라-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시설	
			권 장 용 도	해수풀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2층이하	
			최 저 한 도	-	

도면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마 (휴양 문 화시설지 구)	마-1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 설, 문화 및 집회시설
			권 장 용 도	야외공연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2층이하
	최 저 한 도		-	
	마-2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수련시설
			권 장 용 도	청소년수련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4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3 / 마-4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 설, 수련시설
			권 장 용 도	야영장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5 / 마-6	용도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공원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40%		
	용적률	100%		
	높이	최 고 한 도	2층 이하	
최 저 한 도		-		
마-7	용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 장 용 도	전망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바 (기타 시 설 지구)	용도	지 정 용 도	-	
		권 장 용 도	녹지	
		불 허 용 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최 고 한 도	-	
최 저 한 도		-		

6. 남면 당항 지구단위계획(주거형) - 폐지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6	당항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남면 당항리, 죽전리 일원	209,300	감)209,300	-	건고제309호 (1987.7.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당항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구 폐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09,300	감)209,300	-	-	
주거용지	98,700	감)98,700	-	-	
상업용지	10,370	감)10,370	-	-	
녹지용지	230	감)230	-	-	
공공시설용지	100,000	감)100,000	-	-	
도로	38,193	감)38,193	-	-	
주차장	11,590	감)11,590	-	-	
초등학교	15,027	감)15,027	-	-	
면사무소	4,030	감)4,030	-	-	
파출소	457	감)457	-	-	
보건지소	2,250	감)2,250	-	-	
소방파출소	2,025	감)2,025	-	-	
하수도	665	감)665	-	-	
어린이공원	1,223	감)1,223	-	-	
공원	24,540	감)24,540	-	-	

남 해 군 공 보

(14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 폐지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3	4,748	38,193	-	-	-	3	1,478	17,210	20	3,270	20,983
중 로	1	700	10,534	-	-	-	1	700	10,534	-	-	-
소 로	22	4,048	27,659	-	-	-	2	778	6,676	20	3,270	20,983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중로	2	1	15	보조간선	700	서측구역계	동측구역계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2	1	8	집산도로	158	중로2-1	소로3-1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2	2	8	집산도로	286	중로2-1	남측구역계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191	소로3-4	공원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2	4	8	국지도로	143	중로2-1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421	중로2-1	소로3-2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305	소로3-1	소로3-4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38	중로2-1	소로3-2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114	중로2-1	북측구역계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소로	3	5	6	국지도로	77	중로2-1	초등학교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6	6	국지도로	408	중로2-1	소로3-9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7	6	국지도로	49	중로2-1	소로3-6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8	6	국지도로	180	중로2-1	소로3-12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3	9	6	국지도로	426	중로2-1	소로3-6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0	6	국지도로	189	중로2-1	소로3-9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소로	3	11	6	국지도로	103	소로2-1	소로3-6	일반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소로	3	12	6	국지도로	144	소로2-2	소로3-13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3	6	국지도로	212	소로2-2	소로3-9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4	6	국지도로	144	소로3-10	소로3-9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5	6	국지도로	113	소로3-10	소로3-14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6	4	국지도로	113	소로3-19	소로3-8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7	4	국지도로	93	소로2-2	소로3-8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0	4	국지도로	141	소로2-2	소로3-6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호선	-	○노선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노선폐지
소로2-1호선	-	○노선폐지	"
소로2-2호선	-	○노선폐지	"
소로2-3호선	-	○노선폐지	"
소로2-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4호선	-	○노선폐지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4호선	-	○노선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노선폐지
소로3-5호선	-	○노선폐지	"
소로3-6호선	-	○노선폐지	"
소로3-7호선	-	○노선폐지	"
소로3-8호선	-	○노선폐지	"
소로3-9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0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5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6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7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0호선	-	○노선폐지	"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143)

②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주차장	남면 당항리 2083-1차 일원	3,062	감)3,062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2	주차장	남면 당항리 1374-2대 일원	1,717	감)1,717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3	주차장	남면 죽전리 390-1전 일원	531	감)531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4	주차장	남면 당항리 1462전 일원	6,280	감)6,280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주차장 폐지
2	주차장	○폐지	"
3	주차장	○폐지	"
4	주차장	○폐지	"

2) 공간시설

①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공원	어린이공원	남면 죽전리 611답 일원	1,223	감)1,223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2	공원	근린공원	남면 당항리 1473-2답 일원	23,985	감)23,985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공원 폐지
2	공원	○폐지	"

남 해 군 공 보

(14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남면 초등학교	초등학교	남면 당항리 1410학 일원	15,582	감)15,582		남해군고시 제1997-54호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남면 초등학교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학교 폐지

②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남면 사무소	면사무소	당항리 1487대 일원	4,030	감)4,030	-	남해군고시 제1997-54호	
폐지	2	남면 지구대	파출소	당항리 1485-3대 일원	457	감)457	-	남해군고시 제1997-54호	
폐지	3	남면 보건소	보건지소	당항리 1441-16전 일원	2,250	감)2,250	-	남해군고시 제1997-54호	
폐지	4	남면 소방파출소	소방파출소	당항리 1440전 일원	2,025	감)2,025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남면사무소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공공청사 폐지
2	남면지구대	○폐지	"
4	남면보건소	○폐지	"
5	남면소방파출소	○폐지	"

4) 환경기초시설

①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하수도	하수 종말처리장	남면 죽전리 417답 일원	665	감)665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수도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하수도 폐지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폐지

1) 주거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	98,700	감) 98,700	-	I-1	남면 죽전리 366-1답 일원	6,805	감)6,805	-	-
				I-2	남면 당항리 2080-1답 일원	6,848	감)6,848	-	-
				I-3	남면 죽전리 331-1답 일원	3,525	감)3,525	-	-
				I-4	남면 죽전리 374-2대 일원	3,450	감)3,450	-	-
				I-5	남면 당항리 2084-1대 일원	2,200	감)2,200	-	-
				I-6	남면 당항리 1441-1전 일원	616	감)616	-	-
				I-7	남면 당항리1473-8대 일원	11,915	감)11,915	-	-
				I-8	남면 죽전리 412잡 일원	3,430	감)3,430	-	-
				I-9	남면 죽전리 377-3대 일원	9,813	감)9,813	-	-
				I-10	남면 죽전리 382-4대 일원	2,055	감)2,055	-	-
				I-11	남면 죽전리 604-7대 일원	1,910	감)1,910	-	-
				I-12	남면 죽전리 1376-1전 일원	945	감)945	-	-
				I-13	남면 당항리 1384-2대 일원	4,815	감)4,815	-	-
				I-14	남면 당항리 1391전 일원	6,558	감)6,558	-	-
				I-15	남면 죽전리 391전 일원	4,085	감)4,085	-	-
				I-16	남면 죽전리 384-2대 일원	3,118	감)3,118	-	-
				I-17	남면 당항리 1373-1전 일원	5,405	감)5,405	-	-
				I-18	남면 죽전리 393전 일원	3,275	감)3,275	-	-
				I-19	남면 죽전리 585-1답 일원	480	감)480	-	-
				I-20	남면 죽전리 588대 일원	6,905	감)6,905	-	-
				I-21	남면 죽전리 386-1답 일원	3,287	감)3,287	-	-
				I-22	남면 죽전리 607답 일원	2,995	감)2,995	-	-
				I-23	남면 죽전리 612-1답 일원	4,265	감)4,265	-	-

2) 상업시설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	10,370	감) 10,370	-	II-1	남면 당항리 2085-4대 일원	1,754	감)1,754	-	-
				II-2	남면 당항리 1381-5잡 일원	1,356	감)1,356	-	-
				II-3	남면 당항리 1381-5잡 일원	7,260	감)7,260	-	-

3) 녹지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I	230	감)230	-	III	남면 당항리 1365답 일원	230	감)230	-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폐지

1) 주거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1 ~ I-23	용 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율	•150%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 상업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1 ~ II-3	용 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율	•150%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녹지용지

구 분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III	당항리 1365답 일원	용 도	지정용도	•녹지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용적율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7. 서면 서상 지구단위계획(주거형) - 폐지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7	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서면 서상리 일원	163,000	감)163,000	-	건고제309호 (1987.7.2)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구 폐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63,000	감)163,000	-	-	
주 거 용 지	95,066	감)95,066	-	-	
녹 지 용 지	1,983	감)1,983	-	-	
공공시설용지	65,951	감)65,951	-	-	
도로	34,324	감)34,324	-	-	
학교	16,927	감)16,927	-	-	
면사무소	2,253	감)2,253	-	-	
파출소	958	감)958	-	-	
우체국	212	감)212	-	-	
하수도	3,020	감)3,020	-	-	
경관녹지	7,687	감)7,687	-	-	
완충녹지	570	감)570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 폐지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7	3,939	34,324 (3,350)	2	1,033	11,913	-	-	-	15	2,906	22,411
중로	1	677	8,252	-	-	-	-	-	-	1	677	8,252
소로	16	3,262	26,072	2	1,033	11,913	-	-	-	14	2,229	14,159

():소로1-2호선 초과면적과 가각면적포함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중로	1	2	10~15	간선도로	680	동측지구계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파출소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중로	3	1	12	간선도로	677	동측지구계	서측지구계	일반도로	면사무소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1	1	10	집산도로	353	소로1-2	중로3-1	일반도로	학교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35	소로1-2	소로1-1	일반도로	파출소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28	소로1-2	소로3-11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600	중로3-1	중로3-1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107	중로3-1	소로3-12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5	6	국지도로	124	소로1-1	소로3-15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6	6	국지도로	195	소로1-1	소로3-6	일반도로	파출소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7	6	국지도로	96	소로3-3	소로3-10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8	6	국지도로	36	소로3-3	소로3-10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남 해 군 공 보

(15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3	9	6	국지 도로	287	소로3-3	소로3-4	일반 도로	면사 무소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0	6	국지 도로	63	소로3-12	소로3-8	일반 도로	-	건교부고시 제309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1	3	국지 도로	211	중로3-1	소로3-3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소로	3	12	3	국지 도로	203	소로3-3	중로3-1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소로	3	13	4	국지 도로	123	중로3-1	소로1-2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소로	3	14	4	국지 도로	121	소로1-2	중로3-1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2호선	-	○노선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노선폐지
중로3-1호선	-	○노선폐지	"
소로1-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5호선	-	○노선폐지	"
소로3-6호선	-	○노선폐지	"
소로3-7호선	-	○노선폐지	"
소로3-8호선	-	○노선폐지	"
소로3-9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0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4호선	-	○노선폐지	"

2) 공간시설

①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1	녹지	경관녹지	서상리 1183-1임 일원	4,467	감)4,467	-	남해군고시 제1994-85호 (1994.04.20.)	
폐지	2	녹지	경관녹지	서상리 722-4도 일원	1,370	감)1,370	-	남해군고시 제1994-85호 (1994.04.20.)	
폐지	3	녹지	경관녹지	서상리 1278임 일원	1,850	감)1,850	-	남해군고시 제1994-85호 (1994.04.20.)	
폐지	4	녹지	완충녹지	서상리 679-2전 일원	470	감)470	-	남해군고시 제1994-85호 (1994.04.20.)	
폐지	5	녹지	완충녹지	서상리 684답 일원	100	감)100	-	남해군고시 제1994-85호 (1994.04.2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녹지 폐지
2	녹지	○폐지	"
3	녹지	○폐지	"
4	녹지	○폐지	"
5	녹지	○폐지	"

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 정 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폐지	1	성명 초등학교	초등 학교	서상리 655-1학 일원	16,927	감)16,927	-	남해군고시 제1994-85호 (1994.04.20.)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성명초등학교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학교 폐지

남 해 군 공 보

(15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②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서면 사무소	면사 무소	서상리 522-3대 일원	2,253	감)2,253	-	남해군고시 제1994-85호 (1994.04.20.)	
폐지	2	서면 우체국	우체국	서상리 1185-3대 일원	212	감)212	-	남해군고시 제1994-85호 (1994.04.20.)	
폐지	3	서면 지구대	파출소	서상리 683답 일원	958	감)958	-	남해군고시 1995-174 (1995.08.17)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면사무소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공공청사 폐지
2	서면우체국	○폐지	"
3	서면지구대	○폐지	"

4) 환경기초시설

① 하수도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하수도	서상 마을 하수도	서상리 722-20잡	3,020	감)3,020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하수도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하수도 폐지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	95,066	감) 95,066	-	I-1	서상리 1286-5대 일원	4,160	감)4,160	-	-
				I-2	서상리 1253대 일원	8,648	감)8,648	-	-
				I-3	서상리 590-1답 일원	5,781	감)5,781	-	-
				I-4	서상리 550대 일원	5,432	감)5,432	-	-
				I-5	서상리 619-3창 일원	4,106	감)4,106	-	-
				I-6	서상리 599-2대 일원	5,564	감)5,564	-	-
				I-7	서상리 514-2대 일원	5,559	감)5,559	-	-
				I-8	서상리 487-1잡 일원	2,621	감)2,621	-	-
				I-9	서상리 1218대 일원	3,773	감)3,773	-	-
				I-10	서상리 613-1대 일원	6,098	감)6,098	-	-
				I-11	서상리 512답 일원	4,638	감)4,638	-	-
				I-12	서상리 1243대 일원	8,710	감)8,710	-	-
				I-13	서상리 1185-3대 일원	6,423	감)6,423	-	-
				I-14	서상리 641잡 일원	11,158	감)11,158	-	-
				I-15	서상리 1196대 일원	1,300	감)1,300	-	-
				I-16	서상리 672-1대 일원	8,196	감)8,196	-	-
				I-17	서상리 678대 일원	1,753	감)1,753	-	-
				I-18	서상리 685-1창 일원	1,146	감)1,146	-	-

2) 녹지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	1,983	감)1,983	-	II-1	서상리 1684천 일원	1,249	감)1,249	-	-
				II-2	서상리 1684천 일원	734	감)734	-	-

남 해 군 공 보

(15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폐지

1) 주거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분	계획내용		
I - 1 ~ I - 18	주 거 용 지	용 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율	• 150%	
		높이	• 4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2) 녹지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분	계획내용		
II - 1 ~ II - 2	녹 지 용 지	용 도	지정용도	• 녹지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8. 고현면 대사 지구단위계획(주거형) - 폐지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8	대사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고현면 대사리 605번지 일원	327,190	감)327,190	-	경고 제1995-212호 (1995.1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대사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구 폐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327,190	감)327,190	-	-	
주거용지	192,338	감)192,338	-	-	
상업용지	14,570	감)14,570	-	-	
녹지용지	27,970	감)27,970	-	-	
공공시설용지	89,777	감)89,777	-	-	
도로	40,115	감)40,115	-	-	
주차장	4,185	감)4,185	-	-	
초등학교	19,905	감)19,905	-	-	
고등학교	18,067	감)18,067	-	-	
면사무소	2,449	감)2,449	-	-	
파출소	366	감)366	-	-	
소방파출소	304	감)304	-	-	
우체국	310	감)310	-	-	
보건지소	1,511	감)1,511	-	-	
시장	2,315	감)2,315	-	-	
어린이공원	2,370	감)2,370	-	-	
완충녹지	415	감)415	-	-	

남 해 군 공 보

(15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 폐지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5	6,036	40,019	2	675	6,800	1	631	4,159	22	4,730	29,060
소 로	25	6,036	40,019	2	675	6,800	1	631	4,159	22	4,730	29,060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1	1	10	-	570	북측구역계	남측구역계	-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1	2	10	-	105	서측구역계	소1-1호선	-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2	1	8	집산도로	631	소1-1호선	소3-22호선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1	5	국지도로	254	소1-1호선	서측구역계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로	70	소1-1호선	소3-1호선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422	서측구역계	소3-4호선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구역 외: 969㎡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1,247	소1-1호선	동측구역계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5	6	국지도로	57	소1-1호선	시장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6	6	국지도로	53	소1-1호선	서측구역계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7	6	국지도로	75	소2-1호선	소3-10호선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8	6	국지도로	125	소2-1호선	소3-10호선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9	6	국지도로	53	소3-4호선	소3-3호선	일방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157)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3	10	6	국지 도로	247	소3-4호선	소3-11호선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11	6	국지 도로	158	소3-4호선	소3-8호선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12	6	국지 도로	167	소3-4호선	소3-13호선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13	6	국지 도로	462	소3-14호선	소3-11호선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14	6	국지 도로	412	소3-4호선	소3-4호선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15	6	국지 도로	136	소3-4호선	소3-14호선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소로	3	16	6	국지 도로	88	소3-4호선	소3-17호선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소로	3	17	6	국지 도로	180	소3-4호선	소3-14호선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18	6	국지 도로	126	소3-14호선	동측구역계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소로	3	19	6	국지 도로	95	소3-14호선	동측구역계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소로	3	20	6	국지 도로	91	소3-17호선	소3-14호선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소로	3	21	6	국지 도로	50	소3-14호선	동측구역계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소로	3	22	6	국지 도로	242	소2-1호선	소3-18호선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1-1호선	-	○노선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노선폐지
소로1-2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호선	-	○노선폐지	"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3-4호선	-	○노선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노선폐지
소로3-5호선	-	○노선폐지	"
소로3-6호선	-	○노선폐지	"
소로3-7호선	-	○노선폐지	"
소로3-8호선	-	○노선폐지	"
소로3-9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0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5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6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7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8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9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0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2호선	-	○노선폐지	"

②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주차장	고현면 대사리 890번지 일원	423	감)423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2	주차장	고현면 대사리 793번지 일원	600	감)600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3	주차장	고현면 대사리 489-4번지 일원	627	감)627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4	주차장	고현면 대사리 665번지 일원	2,535	감)2,535	-	남해군고시 제2010-49호 (2010.07.21.)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주차장 폐지
2	주차장	○폐지	"
3	주차장	○폐지	"
4	주차장	○폐지	"

2) 공간시설

①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녹지	완충 녹지	고현면 대사리 922-19도 일원	172	감)172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폐지	2	녹지	완충 녹지	고현면 대사리 904-11도 일원	243	감)243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녹지 폐지
2	녹지	○폐지	"

②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공 원	어린이공원	고현면 대사리 575-3번지 일원	2,370	감)2,370	-	남해군고시 제97-15호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공원 폐지

3) 유통 및 공급시설

① 시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시장	정기 시장	고현면 대사리 768번지 일원	2,315	감)2,315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장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시장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시장 폐지

4)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1	고현초등학교	초등학교	521-1학 일원	19,905	감)19,905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2	정보통신중·고등학교	고등학교	741학 일원	18,067	감)18,067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고현초등학교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학교 폐지
2	정보통신 중·고등학교	○폐지	"

②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고현면사무소	면사무소	고현면 대사리 703-6번지 일원	2,449	감)2,449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2	고현치안센터	파출소	고현면 대사리 911-8번지	366	감)366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3	고현소방지서	소방 파출소	고현면 대사리 911-8번지 일원	304	감)304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4	고현우체국	우체국	고현면 대사리 758-3번지 일원	310	감)310	-	경상남도고시 제1995-212호 (1995.10.05.)	
폐지	5	고현보건소	보건 지소	고현면 대사리 674번지 일원	1,511	감)1,511	-	경상남도고시 제2009-13호 (2009.02.05.)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고현면사무소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공공청사 폐지
2	고현치안센터	○폐지	"
3	고현소방지서	○폐지	"
4	고현우체국	○폐지	"
5	고현보건소	○폐지	"

남 해 군 공 보

(16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가구 및 획지 총괄표

구 분	가구번호	면 적 (㎡)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34,974	감)234,974	-	100.0	
주 거 용 지	I	192,501	감)192,501	-	81.9	
상 업 용 지	II	14,503	감)14,503	-	6.2	
녹 지 용 지	III	27,970	감)27,970	-	11.9	

2) 주거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	192,501	감) 192,501	-	I-1	고현면 대사리 897전 일원	5,840	감)5,840	-	
				I-2	고현면 대사리 913대 일원	5,590	감)5,590	-	
				I-3	고현면 대사리 664답 일원	6,826	감)6,826	-	
				I-4	고현면 대사리 684답 일원	5,902	감)5,902	-	
				I-5	고현면 대사리 883전 일원	7,766	감)7,766	-	
				I-6	고현면 대사리 832-10전 일원	13,140	감)13,140	-	
				I-7	고현면 대사리 848-1대 일원	17,840	감)17,840	-	
				I-8	고현면 대사리 868-1대 일원	6,162	감)6,162	-	
				I-9	고현면 대사리 861대 일원	5,837	감)5,837	-	
				I-10	고현면 대사리 803-2대 일원	4,475	감)4,475	-	
				I-11	고현면 대사리 769-2대 일원	2,151	감)2,151	-	
				I-12	고현면 대사리 711-8대 일원	4,591	감)4,591	-	
				I-13	고현면 대사리 737대 일원	3,174	감)3,174	-	
				I-14	고현면 대사리 786-5전 일원	8,582	감)8,582	-	
				I-15	고현면 대사리 786-10대 일원	20,627	감)20,627	-	
				I-16	고현면 대사리 627-3대 일원	1,023	감)1,023	-	
				I-17	고현면 대사리 520-5대 일원	198	감)198	-	
				I-18	고현면 대사리 520-11답 일원	1,439	감)1,439	-	
				I-19	고현면 대사리 142전 일원	10,002	감)10,002	-	
				I-20	고현면 대사리 164대 일원	1,405	감)1,405	-	
				I-21	고현면 대사리 566대 일원	8,823	감)8,823	-	
				I-22	고현면 대사리 477대 일원	8,115	감)8,115	-	
				I-23	고현면 대사리 190대 일원	8,700	감)8,700	-	
				I-24	고현면 대사리 466대 일원	3,678	감)3,678	-	
				I-25	고현면 대사리 273전 일원	11,810	감)11,810	-	
				I-26	고현면 대사리 488-2대 일원	651	감)651	-	
				I-27	고현면 대사리 490-11대 일원	2,840	감)2,840	-	
				I-28	고현면 대사리 503대 일원	1,480	감)1,480	-	
				I-29	고현면 대사리 498전 일원	4,300	감)4,300	-	
				I-30	고현면 대사리 450대 일원	6,250	감)6,250	-	
				I-31	고현면 대사리 673답 일원	3,284	감)3,284	-	

3) 상업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	14,503	감) 14,503	-	II-1	고현면 대사리 910-1대 일원	4,110	4,110	-	
				II-2	고현면 대사리 904-9대 일원	4,740	4,740	-	
				II-3	고현면 대사리 761-4대 일원	5,653	5,653	-	

4) 녹지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I	27,970	감) 27,970	-	III-1	고현면 대사리 602임 일원	27,970	감)27,970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폐지

1) 주거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1 ~ I-31	용 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및 이용에관한조례 별표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 이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남 해 군 공 보

(16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2) 상업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1 ~ II-3	용 도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및 남해군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조례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용적률	•150%	
	높 이	•4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녹지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I-1	용 도	지정용도	•녹지용도
		권장용도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9. 고현면 오곡 지구단위계획(산업유통형) - 관리번호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4	오곡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 유통형	고현면 오곡리 일원	58,553	-	58,553	-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4	오곡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9 → 4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0. 고현면 이어 지구단위계획(주거형) - 관리번호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5	이어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고현면 이어리 일원	10,050	-	10,050	남해군고시 제1995-251호 (1995.11.14)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이어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0 → 5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11. 서면 서상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 관리번호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6	남해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서면 서상리 1182-9번지 일원	45,478	-	45,478	경고 제1998-49호 (1998.3.14)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6	남해서상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1 → 6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계	45,478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11,758	25.3	
공 공 시 설	15,240	33.8	
녹 지	18,480	40.9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 해당사항 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 결정 조서

구 분	가구 및 획지번호	면 적 (㎡)	구성비(%)	비고
계		45,478	100.0	
관광·휴양	I	11,758	25.9	
가족호텔	I-1	7,500	16.5	
향토역사관	I-2	2,260	5.0	
어촌종합휴양시설	I-3	1,998	4.4	
공공시설	II	15,240	33.5	
주차장	II-1	1,385	3.0	
	II-2	1,405	3.1	
광장	II-3	268	0.6	
	II-4	685	1.5	
	II-5	4,907	10.8	
야외공연장	II-6	5,000	11.0	
관광안내소 및 매점	II-7	230	0.5	
보건지소	II-8	1,360	3.0	
녹지	III	18,480	40.6	
조성	III-1	18,480	40.6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 조서

① 관광·휴양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	11,758	I-1	서면 서상리 1182-9잡	7,500	
		I-2	서면 서상리 1316-5잡	2,260	
		I-3	서면 서상리 1316-9잡	1,998	

② 공공시설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I	15,240		II-1	서면 서상리 1182-10잡	1,385	
			II-2	서면 서상리 1182-10잡	1,405	
			II-3	서면 서상리 1182-10잡	268	
			II-4	서면 서상리 1182-10잡	685	
			II-5	서면 서상리 1182-10잡	4,905	
			II-6	서면 서상리 1182-10잡	5,000	
			II-7	서면 서상리 1316-4제	230	
			II-8	서면 서상리 1316-12잡	1,360	

③ 녹지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II	18,480		III-1	서면 서상리 1182-10잡	18,48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1) 관광·휴양용지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가족호텔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9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2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향토역사관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2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3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어촌종합휴양시설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 공공시설용지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1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주차장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2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주차장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3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광장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4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광장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5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광장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획내용
II-6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야외공연장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7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관광안내소 및 매점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1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8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보건지소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최고높이 : 2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녹지용지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획내용
III-1	녹지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녹지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2. 남면 월포가족휴양촌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7	월포가족휴양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면 석교리 155번지 일원	62,115	-	62,115	남해군고시 제1999-59호 (1999.12.22)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7	월포가족휴양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2 → 7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 분	토지이용계획(㎡)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62,115	-	62,115	100.0	
I. 공공시설용지	6,815	증)12	6,827	11.0	
II. 숙박시설용지	10,620	감)12	10,608	17.1	
III. 상가시설용지	980	-	980	1.6	
IV. 관광휴양시설용지	15,960	-	15,960	25.7	
V. 녹지용지	27,740	-	27,740	44.6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	637 (273)	5,049 (2,180)	-	-	-	1	597 (273)	4,800 (2,180)	1	40	249
소 로	2	637 (273)	5,049 (2,180)	-	-	-	1	597 (273)	4,800 (2,180)	1	40	249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12	8	집 산 도로	597 (273)	소로 2-87호선	북측 구역계	-	-	남해군고시 제2014-7호 (2014.1.21.)	
신설	소로	3	1	6	국 지 도로	40	소 2-1-12 로	남면 석교 리 170번	-	-		

※ ()는 지구단위구역내 부분임.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소로3-1호선	○신설 -B = 6m, L = 40m	○구역내 획지로의 진입을 위한 진입도로 개설

남 해 군 공 보

(17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도면 번호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	6,815	증) 12	6,827	I-1-①	I-1-①	남면 석교리 198-1번지 일원	2,180	-	2,180	도로
				I-1-②	I-1-②	남면 석교리 217-1번지 일원	1,315	-	1,315	내부도로
				I-1-③	I-1-③	남면 석교리 230-7번지 일원	290	-	290	내부도로
				-	I-1-④	남면 석교리 170번지 일원	-	증)249	249	내부도로
				I-2	I-2	남면 석교리 205번지 일원	760	-	760	오수처리시설
				I-3	I-3	남면 석교리 183번지 일원	980	감)237	743	주차장
				I-4	I-4	남면 석교리 198번지 일원	1,290	-	1,290	주차장
II	10,620	감) 12	10,608	II-1	II-1	남면 석교리 170번지 일원	8,760	감)12	8,748	숙박시설용지
				II-2	II-2	남면 석교리 204번지 일원	1,860		1,860	숙박시설용지
III	980	-	980	III-1	III-1	남면 석교리 199번지 일원	980	-	980	상가시설용지
IV	15,960	-	15,960	IV-1-①	IV-1-①	남면 석교리 192번지 일원	11,292	-	11,292	주말농원 바베큐데크
				IV-1-②	IV-1-②	남면 석교리 219번지 일원	2,200	-	2,200	주말농원
				IV-1-③	IV-1-③	남면 석교리 229번지 일원	1,265	-	1,265	농산물직판장 농산물저장고 농기구보관장고
				IV-1-④	IV-1-④	남면 석교리 234번지 일원	1,203	-	1,203	전망대, 공중화 장실 커피하우스 개별음식점
V	27,740	-	27,740	V-1-①	V-1-①	남면 석교리 178번지 일원	2,681	-	2,681	녹지용지
				V-1-②	V-1-②	남면 석교리 210번지 일원	9,502	-	9,502	녹지용지
				V-1-③	V-1-③	남면 석교리 230-1번지 일원	15,557	-	15,557	녹지용지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175)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도 면 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2	남해군 남면 석교리 205번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40%이하
		높이	· 2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3 I-4	남해군 남면 석교리 183번지 및 198번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 「주차장법」 제1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40%이하
		높이	· 2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I-1 II-2	남해군 남면 석교리 170번지 및 204번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및 제15호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하수도법」 제2조 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II-1	남해군 남면 석교리 199번지	용도	·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에 해당하는 건축물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4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남 해 군 공 보

(17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도면번호	위치	구분	계획내용
IV-1-① IV-1-②	남해군 남면 석교리 192번지 및 219번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가목 (2)(차)에 따른 농어촌관광휴양시설 중 주말농원사업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건축행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2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V-1-③	남해군 남면 석교리 229번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및 제18호에 따른 판매시설 및 창고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2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V-1-④	남해군 남면 석교리 234번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 관광 휴게시설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40%이하
		용적률	· 100%이하
		높이	· 2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V-1-③	남해군 남면 석교리 230-1번지 일원	용도	· 지정용도 : 「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가목 (2)(파)에 따른 산림휴양시설 중 자연휴양림시설(체험·교육시설만 해당)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20%이하
		용적률	· 80%이하
		높이	· 1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13. 삼동자연학습장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 폐지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3	삼동자연학습장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삼동면 봉화리 산507번지 일원	94,000	감)94,000	-	남해군고시 제2001-61호 (2001.11.1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삼동자연학습장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군계획시설(유원지) 지정에 따른 폐지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1) 총괄표

구 분	면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94,000	감)94,000	-	-	
환영의 존	10,800	감)10,800	-	-	
나비세상 존	24,200	감)24,200	-	-	
생태다양성 존	9,800	감)9,800	-	-	
자연오감체험 존	49,200	감)49,200	-	-	

2) 세부시설계획 결정 조서

시 설	부지면적(㎡)			시설면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94,000	감)94,000	-	2,309	감)2,309	-	-
한 영 의 존	10,800	감)10,800	-	520	감)520	-	-
1	도 로	1,038	감)1,038	-	-	-	-
2	주 차 장	3,687	감)3,687	-	-	-	-
3	입구게이트	300	감)300	20	감)20	-	-
4	관리사무소	-	-	-	-	-	-
5	오수처리장	500	감)500	500	감)500	-	-
6	녹지및기타	5,275	감)5,275	-	-	-	-
나 비 세 상 존	24,200	감)24,200	-	1,789	감)1,789	-	-
7	도 로	2,151	감)2,151	-	-	-	-
8	나 비 주 제 관	5,600	감)5,600	1,380	감)1,380	-	-
9	학습자료전시관	-	-	-	-	-	-
10	야 외 나 비 관	150	감)150	-	-	-	-
11	나 비 정 원	278	감)278	-	-	-	-
12	레 스 토 랑	-	-	360	감)360	-	-
13	관 찰 테 크	-	-	-	-	-	-
25	들 꽃 동 산	1,383	감)1,383	-	-	-	-
26	FLOWER ZONE	-	-	-	-	-	-
27	모 험 놀 이 터	1,800	감)1,800	-	-	-	-
29	자 생 화 단 지	867	감)867	-	-	-	-
30	장애이편의시설	49	감)49	49	감)49	-	-
14	녹 지 및 기 타	11,922	감)11,922	-	-	-	-
생 태 다 양 성 존	9,800	감)9,800	-	-	-	-	-
15	도 로	1,476	감)1,476	-	-	-	-
16	계 판	-	-	-	-	-	-
17	거 미 관	-	-	-	-	-	-
18	조 류 관	-	-	-	-	-	-
19	고 습 도 치 관	-	-	-	-	-	-
20	개 구 리 관	125	감)125	-	-	-	-
21	메 두 기 관	-	-	-	-	-	-
24	TOUCH ZOO	2,755	감)2,755	-	-	-	-
31	유 리 온 실	1,079	감)1,079	-	-	-	-
22	녹 지 및 기 타	4,365	감)4,365	-	-	-	-
자 연 오 감 체 험 존	9,200	감)9,200	-	-	-	-	-
23	도 로	2,316	감)2,316	-	-	-	-
28	녹 지 및 기 타	46,884	감)46,884	-	-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 해당없음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조서 : 해당없음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조서 : 해당없음

14. 독일마을·원예예술촌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8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봉화리 동천리 일원	276,165	-	276,165	경고 제2003-33호 (2003.12.10)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8	독일마을 원예예술촌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4 → 8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및 세부시설계획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76,165.0	-	276,165.0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	91,368.9	감)66	91,302.9	33.1	
동천문화촌(전통공예촌)	4,210.0	감)66	4,144.0	1.5	I-1
원예마을(예술인마을)	18,126.0	-	18,126.0	6.6	I-2
문화관(전통문화의거리)	8,295.0	-	8,295.0	3.0	I-3
식물원	3,010.0	-	3,010.0	1.1	I-4
독일교포정착마을	38,815.9	-	38,815.9	14.1	I-5
숙박시설(독일문화센터)	18,912.0	-	18,912.0	6.8	I-6
공공시설용지	41,719.1	증)1,123	42,842.1	15.5	
도로	22,016.0	-	22,016.0	8.0	II-1
주차장	13,833.6	-	13,833.6	5.0	II-2
관리사 및 화장실	1,616.6	-	1,616.6	0.6	II-3
광장	2,544.1	-	2,544.1	0.9	II-4
소공원	738.8	-	738.8	0.3	II-5
하수처리장	970.0	-	970.0	0.3	II-6
배수지	-	증)882	882.0	0.3	II-7
가압장	-	증)241	241.0	0.1	II-8
녹지용지	143,077.0	감)1,057	142,020.0	51.4	
보전녹지	127,093.0	감)1,057	126,036.0	45.6	III-1
녹지	15,984.0	-	15,984.0	5.8	III-2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3	1,579	12,921	-	-	-	1	506	4,555	2	1,077	8,134
소 로	3	1,579	12,921	-	-	-	1	506	4,555	2	1,077	8,134

■ 도로 결정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9	국지 도로	506	물건리 1210	봉화리 2573	일반 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320	봉화리 2574	봉화리 2627	일반 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757	봉화리 2626	동천리 산395-1	일반 도로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②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주차장1	봉화리 2572번지	5,194.0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기정	2	주차장2	봉화리2613번지	7,052.0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기정	4	주차장4	물건리 1179번지 일원	1,587.6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2) 공간시설

① 광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광 장	교통광장	남해군 삼동면 동천리 2099번지일원	2,544.1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2003.12.10.)	

② 공원 결정 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공원명	시설의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공 원	소공원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1203번지	738.8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03.12.10)	

3) 유통 및 공급시설

① 수도공급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22	동천배수지	삼동면 동천리 산398-2 일원	1,336	감)454	882	남해고 제2012-43 (2013.05.17.)	
변경	29	동천가압장	삼동면 동천리 산398-2 일원	283	감)42	241	남해고 제2012-43 (2013.05.17.)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2	동천배수지	○면적증가(감454㎡) A = 1,336㎡ → 882㎡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29	동천가압장	○면적감소(감42㎡) A = 283㎡ → 241㎡	◦시설명 변경(송수 및 봉화가압장→동천가압장) ◦위치변경에 따른 면적변경

4) 환경기초시설

① 하수도 결정조서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1	하수도	남해군 삼동면 물건리 245번지	970	경상남도고시 제2003-339호 ('03.12.10)	

남 해 군 공 보

(18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	91,368.9	감)66	91,302.9	I-1	삼동면 동천리 1000-2번지 일원	4,210.0	감)66	4,144.0	동천 문화촌
				I-2	삼동면 동천리 산400-5번지 일원	18,126.0		18,126.0	원예 마을
				I-3	삼동면 봉화리 2611번지 일원	8,295.0		8,295.0	문화관
				I-4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3,010.0		3,010.0	식물원
				I-5	삼동면 물건리 1136번지 일원	38,815.9		38,815.9	독일 마을
				I-6	삼동면 물건리 1154번지 일원	18,912.0		18,912.0	숙박 시설

2) 공공시설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	41,719.1	증)1,123	42,842.1	II-1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9,295.0	-	9,295.0	도로
				II-2	삼동면 물건리 1179번지 일원	13,833.6	-	13,833.6	주차장
				II-3	삼동면 봉화리 2571번지 일원	1,616.6	-	1,616.6	관리소, 화장실
				II-4	삼동면 동천리 2099번지 일원	2,544.1	-	2,544.1	교통 광장
				II-5	삼동면 물건리 1203번지 일원	738.8	-	738.8	소공원
				II-6	삼동면 물건리 245번지 일원	970.0	-	970.0	하수 처리장
				II-7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	증)882	882.0	배수지
				II-8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	증)241	241.0	가압장

3) 녹지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I	143,077.0	감)1,057	142,020.0	III-1	삼동면 동천리 산398-2번지 일원	127,093.0	감)1,057	126,036.0	보전 녹지
				III-2	삼동면 물건리 1179번지 일원	15,984.0	-	15,984.0	녹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 변경없음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1	삼동면 동천리 1000-2 번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4호(제1·2종 근린생활시설) 및 제5호(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높 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한도	•2층이하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I-2	삼동면 동천리 산400-5 번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가목 단독주택, 제3호 제1종근린 생활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높 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한도	•2층 이하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I-3	삼동면 봉화리 2611번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 제1·2종근린생활시설,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용도	•원예학교, 식당, 카페, 기념품판매, 강의실, 영상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높 이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최고한도	•2층이하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남 해 군 공 보

(18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4	삼동면 봉화리 산398-2 번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마목의 동·식물원
			권장용도	•식물원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한도	•2층 이하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I-5	삼동면 물건리 1136번 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단독주택
			권장용도	•단독주택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한도	•3층 이하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I-6	삼동면 물건리 1154번 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과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제3·4호의 제1·2종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 이	최고한도	•4층 이하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2) 공공시설용지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1	삼동면 봉화리 282-1번 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도로	
			권 장 용 도	-	
			불 허 용 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
II-2	삼동면 동천리 산398-2 번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권장용도	•노외주차장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0% 이하
				용적률	•10% 이하
		높 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II-3	삼동면 봉화리 2571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4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관리사 및 화장실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80% 이하
		높 이	최고한도	•2층이하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II-4	삼동면 동천리 2099번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교통광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0.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남 해 군 공 보

(18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5	삼동면 물건리 1203번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소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0.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II-6	삼동면 물건리 245번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하수처리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0.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II-7	삼동면 물건리 산398-2 번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수도공급설비 - 배수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0.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II-8	삼동면 물건리 산398-2 번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수도공급설비 - 가압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0.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3) 녹지용지 : 변경없음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I-1	삼동면 동천리 398-2번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보전녹지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10.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III-2	삼동면 물건리 1224번지 일원	용 도	지 정 용 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10.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 이	최고한도			-	
	최저한도			-	
				색채	•원색지양

15. 남면 남해하모니리조트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 - 관리번호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9	남해하모니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남면 덕월리 316번지 일원	833,799	-	833,799	경고 제2004-19호 (2004.1.15)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9	남해하모니리조트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5 → 9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비고
계	833,799	100.0	
체 육 시 설	756,269	90.7	
체 육 시 설	351,201	42.1	
공 공 시 설	33,181	4.0	
녹 지	371,887	44.6	
관 광·휴 양 시 설 용 지	77,530	9.3	
숙 박 시 설	39,577	4.7	
공 공 시 설	11,333	1.4	
녹 지	26,620	3.2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면적 (㎡)	노선수	연장	면적 (㎡)	노선수	연장	면적 (㎡)
합계	3	1,923	20,727	-	-	-	1	783	7,047	2	1,140	13,680
중로	2	1,140	13,680	-	-	-	-	-	-	2	1,140	13,680
소로	1	783	7,047	-	-	-	1	783	7,047	-	-	-

■ 도로 결정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 능	연장 (m)	시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 지	최 결 정 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1	9	보조 간선도로	783	중로3-1	308-4잡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4-284호 ('04.10.14)	
기정	중로	3	1	12	주간선도로	770	남측 구역계	북측 구역계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4-19호 ('04.1.15)	
기정	중로	3	5	12	주간선도로	371	덕월리 244	덕월리 558-3도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04-284호 ('04.10.14)	지구 외

남 해 군 공 보

(19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1) 토지이용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구 분	가구 및 획지번호	면 적 (㎡)	구성비(%)	비고	
합계		833,799	100.0		
체육시설	계	-	756,269	90.7(100.0)	
	체육시설	-	351,201	42.1(46.4)	
	골프코스	I-1	339,412	40.7(44.9)	보경로포함 9,094㎡
	코스시설	-	215,996	25.9(28.6)	
	그늘집1	-	830	0.1(0.1)	
	그늘집2	-	720	0.1(0.1)	
	연습그린	-	833	0.1(0.1)	
	저류지	-	100,979	12.1(13.3)	
	관리도로	-	20,054	2.4(2.7)	
	코스관리동	I-5	3,680	0.4(0.5)	
	클럽하우스	I-3	1,549	0.2(0.2)	
	묘포장	I-2	480	0.1(0.1)	
	축구장	I-4	6,080	0.7(0.7)	
	공공시설	-	33,181	4.0(4.4)	
	도로	I-8	27,740	3.3(3.7)	
	주차장	I-6	1,258	0.2(0.2)	
	주차장	I-7	4,183	0.5(0.5)	
	오수처리장	-	-	-	지하매설 (I-10)
	녹지	-	371,887	44.6(49.2)	
	원형보전	I-9	64,051	7.7(8.5)	
조성	I-10	307,836	36.9(40.7)		

()는 체육시설내 구성비임

구분		가구 및 획지번호	면적 (㎡)	구성비(%)	비고
합계			77,530	9.3 (100.0)	
관광·휴양	숙박시설	-	39,577	4.7 (51.0)	
	휴양콘도미니엄	II-1	10,145	1.2 (13.1)	
		II-2	903	0.1 (1.2)	
		II-3	2,582	0.3 (3.3)	
		II-4	7,600	0.9 (9.8)	
		II-5	3,750	0.4 (4.8)	
		II-6	4,657	0.5 (6.0)	
		II-7	4,141	0.5 (5.3)	
		II-8	4,225	0.5 (5.4)	
		II-9	1,380	0.2 (1.8)	
		II-17	194	0.1 (0.3)	
	공공시설		11,333	1.4 (14.6)	
	주차장	II-10	2,639	0.3 (3.4)	
		II-11	78	0.0 (0.1)	
		II-12	158	0.0 (0.2)	
		II-13	169	0.0 (0.2)	
		II-14	200	0.1 (0.3)	
		II-15	189	0.1 (0.2)	
		II-16	100	0.0 (0.1)	
	도로	II-18	7,800	0.9 (10.1)	
녹지	-	26,620	3.2 (34.4)		
원형보전	II-19	21,461	2.6 (27.7)		
조성	II-20	5,159	0.6 (6.7)		

()는 관광·휴양지구내 구성비임

남 해 군 공 보

(19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 조서

① 체육시설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I	756,269	I-1	남면 평산리 482-1잡 일원	339,412	
		I-2	남면 덕월리 307-2임 일원	480	
		I-3	남면 덕월리 306-2임 일원	1,549	
		I-4	남면 덕월리 산21-18임 일원	6,080	
		I-5	남면 덕월리 산35-5임 일원	3,680	
		I-6	남면 덕월리 306-9임 일원	1,258	
		I-7	남면 덕월리 282-5도 일원	4,183	
		I-8	남면 덕월리 311-3잡 일원	27,740	
		I-9	남면 덕월리 307-2임 일원	64,051	
		I-10	남면 덕월리 311-1잡 일원	307,836	

② 관광·휴양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	77,530	감) 77,530	-	II-1	남면 덕월리 320임 일원	10,145	감)10,145	-	
				II-2	남면 덕월리 316임 일원	903	감)903	-	
				II-3	남면 덕월리 307-4임 일원	2,582	감)2,582	-	
				II-4	남면 덕월리 306-11임 일원	7,600	감)7,600	-	
				II-5	남면 덕월리 304-3임 일원	3,750	감)3,750	-	
				II-6	남면 덕월리 303-1임 일원	4,657	감)4,657	-	
				II-7	남면 덕월리 270-1임 일원	4,141	감)4,141	-	
				II-8	남면 덕월리 269임 일원	4,225	감)4,225	-	
				II-9	남면 덕월리 산9-4임 일원	1,380	감)1,380	-	
				II-10	남면 덕월리 308-2임 일원	2,639	감)2,639	-	
				II-11	남면 덕월리 산9-5임 일원	78	감)78	-	
				II-12	남면 덕월리 산19-5임 일원	158	감)158	-	
				II-13	남면 덕월리 269-3임 일원	169	감)169	-	
				II-14	남면 덕월리 산9-4임 일원	200	감)200	-	
				II-15	남면 덕월리 265전 일원	189	감)189	-	
				II-16	남면 덕월리 266-2임 일원	100	감)100	-	
				II-17	남면 덕월리 산7임 일원	194	감)194	-	
				II-18	남면 덕월리 266-2임 일원	7,800	감)7,800	-	
				II-19	남면 덕월리 306-7임 일원	21,461	감)21,461	-	
				II-20	남면 덕월리 309-9임 일원	5,159	감)5,159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1) 체육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1	체육 시설 용지	용	지정용도	• 골프장 및 부대시설
		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2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2	체육 시설 용지	용	지정용도	• 골프장 및 부대시설(묘포장)
		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3	체육 시설 용지	용	지정용도	• 클럽하우스
		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2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4	체육 시설 용지	용	지정용도	• 골프장부대시설(축구장)
		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획내용
1-5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골프장부대시설(코스관리동)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2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6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골프장부대시설(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7	체육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골프장부대시설(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 관광·휴양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분		계획내용
II-1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이 • 2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I-2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이 • 2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I-3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이 • 2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I-4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콘도미니엄 부대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이 • 2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획내용	
II-5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5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6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7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8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관광숙박시설 중 콘도미니엄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획내용	
II-9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콘도미니엄 부대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10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콘도미니엄 부대시설(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11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콘도미니엄 부대시설(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12	관광 휴양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콘도미니엄 부대시설(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표시 번 호	구 분		계획내용
II-13	용 도	지정용도	• 콘도미니엄 부대시설(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14	용 도	지정용도	• 콘도미니엄 부대시설(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15	용 도	지정용도	• 콘도미니엄 부대시설(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16	용 도	지정용도	• 콘도미니엄 부대시설(주차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17	용 도	지정용도	• 콘도미니엄 부대시설(수위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40%
		용적률	• 100%
		높 이	• 1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6. 이동면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0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이동면 신전리 735번지일원	59,870	-	59,870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1.1.16)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0	신전숲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6 → 10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59,870	-	59,870	100.0	
관광휴양시설 용지	29,095	-	29,095	48.6	
숙박단지	10,680	-	10,680	17.8	
펜션	2,685	-	2,685	4.5	
수영장	923	-	923	1.5	
병영막사체험장	1,860	-	1,860	3.1	
연꽃테마원	7,218	-	7,218	12.1	
만남의광장	300	-	300	0.5	
휴게쉼터 및 산책로	825	-	825	1.4	
분수광장	500	-	500	0.8	
특산물판매장	1,300	-	1,300	2.2	
어린이놀이터	705	-	705	1.2	
어울림광장	2,099	-	2,099	3.5	
공공시설용지	12,651	감)519	12,132	20.3	
주민활성화센터	1,100	-	1,100	1.9	
오수처리장	240	-	240	0.4	
발전시설	1,490	감)519	971	1.6	
주차장	3,769	-	3,769	6.3	
화장실	240	-	240	0.4	
도로	5,812	-	5,812	9.7	
녹지용지	18,124	증)519	18,643	31.1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①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3	665	5,812	-	-	-	-	-	-	3	665	5,812
소로	3	665	5,812	-	-	-	-	-	-	3	665	5,812

■ 도로 결정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7.5	국지 도로	472	신전리 862-4	화계리 77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소로	3	2	7.5	국지 도로	90	신전리 728	신전리 743-3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소로	3	3	7.5	국지 도로	103	화계리 82-4	화계리 79-4	일반 도로	-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②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주차장1	신전리 733	1,029	남해군고시 제2004-3호 ('2004.01.16.)	
기정	2	주차장2	신전리 733	2,740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③ 전기공급설비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태양광 설비	신전리 733	1,490	감)519	971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태양광 설비	○면적감소(감519㎡) - A = 1,490㎡ → 971㎡	현황여건을 반영하여 구역변경

④ 하수도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오수처리장	신전리 733	40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기정	2	오수처리장	신전리 798-11	200	경상남도고시 제2010-371호 (2010.07.01.)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조서

① 관광·휴양시설용지

가구번호	가구면적 (㎡)	도면번호	획지		비고
			위치	면적(㎡)	
I	29,095	1-1	이동면 화계리 76번지 일원	500	분수광장
		1-2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2,099	어울림광장
		1-3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705	어린이놀이터
		1-4	이동면 화계리 75번지 일원	825	휴게쉼터 및 산책로
		1-5	이동면 화계리 74번지 일원	300	만남의광장
		1-6	이동면 화계리 75번지 일원	2,685	펜션
		1-7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860	병영막사체험장
		1-8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923	수영장
		1-9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300	특산물판매장
		1-10	이동면 신전리 748-1번지 일원	7,218	연꽃테마원
		1-11	이동면 신전리 798-3번지 일원	10,680	숙박단지

② 공공시설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	12,651	감)519	12,132	II-1	이동면 화계리 76번지 일원	5,812	-	5,812	도로
				II-2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3,769	-	3,769	주차장
				II-3	이동면 신전리 733번지 일원	1,100	-	1,100	주민활성화센터
				II-4	이동면 화계리 75번지 일원	240	-	240	화장실
				II-5	이동면 화계리 74번지 일원	240	-	240	오수처리장
				II-6	이동면 화계리 75번지 일원	1,490	감)519	971	발전시설

③ 녹지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I	18,124	증)519	18,643	III-1	이동면 신전리 752-2번지 일원	18,124	증)519	18,643	녹지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 조서

1)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 I-5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관광· 휴양 시설용지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6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관광· 휴양 시설용지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7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의 나목 자연권수련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관광· 휴양 시설용지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8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9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10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11	관광·휴양 시설용지	용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의 라목 그밖에 유사한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3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2) 공공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2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 따른 자동차관련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3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4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원색지양
		건축선	-
II-4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에 따른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60%
		높 이	• 1층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표시 번호	구분		계획내용	
II-5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에 따른 분뇨 및 쓰레기 처리 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I-6	공공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에 따른 발전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이	• 4층이하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3) 녹지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분		계획내용	
III-1	녹지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녹지
			권장용도	
			불허용도	
		건폐율	• 10%	
		용적률	• 10%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17. 상주면 상주 지구단위계획(주거형) - 폐지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7	상주 지구단위계획구역	주거형	상주면 상주리 일원	669,477	감)669,477	-	경고 제2005-157호 (2005.5.26)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7	상주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용도지구 폐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69,477	감)669,477	-	-	
주거용지	364,014	감)364,014	-	-	
단독주택	254,119	감)254,119	-	-	
근린생활시설	109,895	감)109,895	-	-	
상업용지	22,120	감)22,120	-	-	
녹지용지	134,126	감)134,126	-	-	
수변공원	41,990	감)41,990	-	-	
어린이공원	7,761	감)7,761	-	-	
경관녹지	84,375	감)84,375	-	-	
공공시설용지	149,217	감)149,217	-	-	
주차장	22,853	감)22,853	-	-	
학교	20,522	감)20,522	-	-	
면사무소	2,467	감)2,467	-	-	
보건소	884	감)884	-	-	
경찰서지구대	861	감)861	-	-	
도로	101,630	감)101,630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 폐지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9	9,654	101,630	1	1,442	29,167	21	6,984	61,633	7	1,228	10,830
중로	5	2,962	49,876	1	1,442	29,167	1	823	12,345	3	697	8,364
소로	24	6,692	51,754	-	-	-	20	6,161	49,288	4	531	2,466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1	1	20	주간선도로	1442	동측지구계 (상주리 571-3번지)	북측지구계 (상주리 884-4번지)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지구 외 393m
폐지	중로	2	1	15	집산도로	823	중1-1호선	북측지구계 (상주리 1657-1번지)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중로	3	1	12	국지도로	191	중2-1호선	남측지구계 (상주리 1540-2번지)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중로	3	2	12	국지도로	98	중2-1호선	중3-3호선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중로	3	3	12	국지도로	408	중2-1호선	중2-1호선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531	중2-1호선	중3-1호선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292	소2-1호선	소2-1호선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3	8	국지도로	101	중2-1호선	소2-2호선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4	8	국지도로	918	중1-1호선	중3-3호선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5	8	국지도로	268	소2-4호선	소2-4호선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6	8	국지도로	102	중1-1호선	소2-5호선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7	8	국지도로	100	중1-1호선	소2-4호선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8	8	국지도로	271	중1-1호선	서측지구계 (상주리 1076번지)	일방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남 해 군 공 보

(21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소로	2	9	8	국지 도로	139	중3-3호선	소2-8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10	8	국지 도로	129	중2-1호선	중3-3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11	8	국지 도로	213	중1-1호선	소2-12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12	8	국지 도로	767	중1-1호선	중1-1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13	8	국지 도로	140	중1-1호선	소2-12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14	8	국지 도로	762	중1-1호선	소2-12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15	8	국지 도로	423	중1-1호선	소2-14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16	8	국지 도로	176	소2-12호선	소2-14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17	8	국지 도로	67	중1-1호선	소2-18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18	8	국지 도로	447	중2-1호선	동측지구계 (상주리588-3번지)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19	8	국지 도로	185	중2-1호선	소2-18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2	20	8	국지 도로	130	중1-1호선	소2-18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3	1	6	국지 도로	46	소2-19호선	소2-18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3	2	6	국지 도로	125	소2-10호선	소3-3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3	3	4	국지 도로	157	중2-1호선	중3-3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소로	3	4	4	국지 도로	203	중3-3호선	소2-8호선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호선	-	○노선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노선폐지
중로2-1호선	-	○노선폐지	"
중로3-1호선	-	○노선폐지	"
중로3-2호선	-	○노선폐지	"
중로3-3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호선	-	○노선폐지	"
소로2-2호선	-	○노선폐지	"
소로2-3호선	-	○노선폐지	"
소로2-4호선	-	○노선폐지	"
소로2-5호선	-	○노선폐지	"
소로2-6호선	-	○노선폐지	"
소로2-7호선	-	○노선폐지	"
소로2-8호선	-	○노선폐지	"
소로2-9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0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1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2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3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4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5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6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7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8호선	-	○노선폐지	"

남 해 군 공 보

(21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소로2-19호선	-	○노선폐지	"
소로2-20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호선	-	○노선폐지	
소로3-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4호선	-	○노선폐지	"

②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주차장	상주면 상주리 1662번지 일원	9,098	감)9,098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②	주차장	상주면 상주리 1450번지 일원	2,820	감)2,820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③	주차장	상주면 상주리 1227번지 일원	6,475	감)6,475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④	주차장	상주면 상주리 1241-1번지 일원	4,460	감)4,460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주차장 폐지
2	주차장	○폐지	"
3	주차장	○폐지	"
4	주차장	○폐지	"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213)

2) 공간시설

① 녹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녹지	경관 녹지	상주면 상주리 1494번지 일원	31,720	감)31,720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②	녹지	경관 녹지	상주면 상주리 1358번지 일원	30,500	감)30,500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③	녹지	경관 녹지	상주면 상주리 919번지 일원	4,940	감)4,940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④	녹지	경관 녹지	상주면 상주리 637-1번지 일원	2,125	감)2,125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⑤	녹지	경관 녹지	상주면 상주리 591-4번지 일원	1,120	감)1,120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⑥	녹지	경관 녹지	상주면 상주리 583-3번지 일원	13,970	감)13,970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녹지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녹지 폐지
2	녹지	○폐지	"
3	녹지	○폐지	"
4	녹지	○폐지	"
5	녹지	○폐지	"
6	녹지	○폐지	"

②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원	어린이공 원	상주면 상주리 1891번지 일원	2,560	감)2,560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②	공원	어린이공 원	상주면 상주리 1167번지 일원	3,766	감)3,766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③	공원	어린이공 원	상주면 상주리 1376-1번지 일원	1,435	감)1,435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④	공원	수변 공원	상주면 상주리 2182-2번지 일원	41,990	감)41,990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공원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공원 폐지
2	공원	○폐지	"
3	공원	○폐지	"
4	공원	○폐지	"

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공공청사	면사무소	상주면 상주리 10061-3번지 일원	2,467	감)2,467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②	공공청사	경찰서 지구대	상주면 상주리 1042-2번지 일원	861	감)861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③	공공청사	보건지소	상주면 상주리 1161-4번지 일원	884	감)884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상주면사무소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공공청사 폐지
2	경찰서, 지구대	○폐지	"
3	보건지소	○폐지	"

② 학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상주 초등학교	초등학교	상주면 상주리 1157번지 일원	11,669	감)11,669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폐지	②	상주 중학교	중학교	상주면 상주리 590-1번지 일원	8,853	감)8,853	-	남해군고시 제2008-21호 (2008.05.2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상주초등학교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학교 폐지
2	상주중학교	○폐지	"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주거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 (단독주택)	254,119	감) 254,119	-	I - 1	상주면 상주리 1596번지 일원	15,150	감)15,150	-	-
				I - 2	상주면 상주리 1451-6번지 일원	3,225	감)3,225	-	-
				I - 3	상주면 상주리 1924-1번지 일원	6,158	감)6,158	-	-
				I - 4	상주면 상주리 1897번지 일원	11,557	감)11,557	-	-
				I - 5	상주면 상주리 1932-3번지 일원	15,302	감)15,302	-	-
				I - 6	상주면 상주리 1025번지 일원	16,406	감)16,406	-	-
				I - 7	상주면 상주리 1074-4번지 일원	8,191	감)8,191	-	-
				I - 8	상주면 상주리 1053번지 일원	25,932	감)25,932	-	-
				I - 9	상주면 상주리 1799번지 일원	5,212	감)5,212	-	-
				I - 10	상주면 상주리 1332번지 일원	13,523	감)13,523	-	-
				I - 11	상주면 상주리 884-7번지 일원	4,528	감)4,528	-	-
				I - 12	상주면 상주리 889-3번지 일원	9,305	감)9,305	-	-
				I - 13	상주면 상주리 988-2번지 일원	13,884	감)13,884	-	-
				I - 14	상주면 상주리 1162-2번지 일원	5,406	감)5,406	-	-
				I - 15	상주면 상주리 1044-1번지 일원	94	감)94	-	-
				I - 16	상주면 상주리 972-1번지 일원	21,775	감)21,775	-	-
				I - 17	상주면 상주리 966-4번지 일원	19,710	감)19,710	-	-
				I - 18	상주면 상주리 1178번지 일원	8,100	감)8,100	-	-
				I - 19	상주면 상주리 959번지 일원	17,936	감)17,936	-	-
				I - 20	상주면 상주리 1198-1번지 일원	7,845	감)7,845	-	-
				I - 21	상주면 상주리 1213-10번지 일원	8,100	감)8,100	-	-
				I - 22	상주면 상주리 647-1번지 일원	16,780	감)16,780	-	-

남 해 군 공 보

(216)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 (근린 생활 시설)	109,895	감) 109,895	-	II-1	상주면 상주리 1641번지 일원	15,118	감)15,118	-	-
				II-2	상주면 상주리 1373번지 일원	8,758	감)8,758	-	-
				II-3	상주면 상주리 1198-2번지 일원	8,897	감)8,897	-	-
				II-4	상주면 상주리 1111-1번지 일원	24,810	감)24,810	-	-
				II-5	상주면 상주리 1282-4번지 일원	4,360	감)4,360	-	-
				II-6	상주면 상주리 1298번지 일원	6,814	감)6,814	-	-
				II-7	상주면 상주리 1314번지 일원	6,484	감)6,484	-	-
				II-8	상주면 상주리 1147-1번지 일원	7,144	감)7,144	-	-
				II-9	상주면 상주리 1219-4번지 일원	4,160	감)4,160	-	-
				II-10	상주면 상주리 642-7번지 일원	8,744	감)8,744	-	-
				II-11	상주면 상주리 600-2번지 일원	11,651	감)11,651	-	-
				II-12	상주면 상주리 608-1번지 일원	2,960	감)2,960	-	-

2) 상업용지

가구 번호	가구면적 (㎡)			도면 번호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II	22,120	감)22,120	-	III-1	상주면 상주리 1275-2번지 일원	3,878	감)3,878	-	-
				III-2	상주면 상주리 1273-1번지 일원	6,430	감)6,430	-	-
				III-3	상주면 상주리 1270-1번지 일원	1,940	감)1,940	-	-
				III-4	상주면 상주리 1254번지 일원	9,872	감)9,872	-	-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 폐지

1) 주거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 I-4	단독주택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3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I-5 ~ I-6	단독주택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3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차, 타항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7	단독주택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3의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건축한계선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1-8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차, 타항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1-9 ~ 1-11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1-12 ~ 1-15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차, 타항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6 ~ I-22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3의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
		불허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2) 근린생활시설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1 ~ II-12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및 제4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II-1, II-4, II-8, II-9)	

3) 상업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II-1 ~ III-4	상업용지	용도	지정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0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9의 계획관리지역에서 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용도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4호 제2종근린생활시설, 제11호 숙박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4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III-1, III-2, III-4)	

18. 창선면 상신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 관리번호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1	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창선면 상신리 1-1번지일원	205,400	-	205,400	경고 제2007-487호 (2007.11.29)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1	상신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8 → 11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205,400	100.0	
체육시설용지	52,350	25.5	
체육시설	28,721	14.0	
소공원	2,441	1.2	
보조구장	8,147	4.0	
주차장	2,780	1.3	
조경·완충녹지	10,261	5.0	
관광·휴양시설용지	27,590	13.4	
진입 및 상징광장	8,030	3.9	
특산물판매장	2,850	1.4	
먹거리장터	3,590	1.7	
휴게음식점	3,000	1.5	
주차장	850	0.4	
자동차야영장	3,080	1.5	
관리도로	1,980	1.0	
간이역	4,210	2.0	
공공시설용지	15,640	7.6	
주차장	7,410	3.6	
하수처리시설	3,740	1.8	
도로	4,490	2.2	
녹지용지	109,820	53.5	
녹지(유수지)	91,710	44.7	
조경·완충녹지	18,110	8.8	

남 해 군 공 보

(22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노선수	연장	면적
합계	2	620	6,470	-	-	-	1	246	1,980	1	374	4,490
중로	1	374	4,490	-	-	-	-	-	-	1	374	4,490
소로	1	246	1,980	-	-	-	1	246	1,980	-	-	-

■ 도로 결정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3	1	12	국지 도로	374	상신리 1-3 답	상죽리 10-9 답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7-35호 (2007.12.06.)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46	중로3-1	상신리 1-1 답	일반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07-35호 (2007.12.06.)	

②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주차장	창선면 상죽리 10-9답 일원	2,780	남해군고시 제2007-35호 (2007.12.06.)	
기정	2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1답 일원	850	남해군고시 제2007-35호 (2007.12.06.)	
기정	3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0-27답 일원	5,230	남해군고시 제2007-35호 (2007.12.06.)	
기정	4	주차장	창선면 상신리 1-7답 일원	2,180	남해군고시 제2007-35호 (2007.12.06.)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223)

③ 하수도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하수 처리시설	창선면 상죽리 10-21답 일원	3,740	남해군고시 제2007-35호 (2007.12.06.)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1) 체육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합계						52,350
-	I	52,350	I-1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12번지 일원	28,721	
			I-2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8번지 일원	2,441	
			I-3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8,147	
			I-4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10번지 일원	2,780	
			I-5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15번지 일원	10,261	

2) 관광·휴양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	II	27,590	II-1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8,030	
			II-2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8번지 일원	2,850	
			II-3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5번지 일원	3,590	
			II-4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3,000	
			II-5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850	
			II-6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1번지 일원	3,080	
			II-7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1,980	
			II-8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4,210	

3) 공공시설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 치		면적(㎡)	
-	III	15,640	III-1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21번지 일원	3,740	
			III-2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3번지 일원	4,490	
			III-3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0-27번지 일원	5,230	
			III-4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1-7번지 일원	2,180	

4) 녹지용지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	IV	109,820	IV-1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2번지 일원	91,710	
			IV-2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343번지 일원	6,890	
			IV-3	남해군 창선면 상신리 5-4번지 일원	5,220	
			IV-4	남해군 창선면 상죽리 10-27번지 일원	6,000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체육시설용지

도면번호	구 분		계 획 내 용	
I-1	체육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2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2	체육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소공원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2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3	체육시설 용지	용도	지정용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40%이하	
		용적률	•100%이하	
		높 이	•2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 관광·휴양 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분		계획내용
II-1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진입 및 상징광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20%이하
		높이	•3층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I-2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특산물판매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20%이하
		높이	•3층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II-3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 먹거리 장터
			권장용도 -
			불허용도 •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 60%이하
		용적률	• 120%이하
		높이	• 3층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	-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4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휴게음식점(관광식당)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20%이하	
		높 이	•3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6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자동차야영장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20%이하	
		높 이	•3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II-8	관광· 휴양 시설 용지	용 도	지정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제4호, 제15호, 제27호 규정에 따른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관광휴게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20%이하	
		높 이	•3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3) 공공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I-1	공공시설용 지	용 도	지정용도	•하수처리시설
			권장용도	-
			불허용도	•지정용도이외의 용도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120%이하	
		높 이	•3층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 창선 연륙교 주변지구 세부시설계획

구분	면적(㎡)			구성비 (%)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234,730	감)234,730	-	-
공공시설용지	58,235	감)58,235	-	-
도로	27,981	감)27,981	-	-
주차장	27,801	감)27,801	-	-
화장실	758	감)758	-	-
오수처리장	1,530	감)1,530	-	-
해양파출소	165	감)165	-	-
관광휴양시설용지	84,770	감)84,770	-	-
숙박시설	49,888	감)49,888	-	-
호텔	10,485	감)10,485	-	-
가족호텔	11,721	감)11,721	-	-
여관	11,710	감)11,710	-	-
펜션	15,972	감)15,972	-	-
상가시설	11,428	감)11,428	-	-
종합상가	4,227	감)4,227	-	-
카페	5,211	감)5,211	-	-
수산물 위판장	1,653	감)1,653	-	-
특산물 판매장	337	감)337	-	-
휴양문화시설	6,331	감)6,331	-	-
광장	3,567	감)3,567	-	-
타워전망대	1,731	감)1,731	-	-
자동차극장	338	감)338	-	-
조경휴게시설	695	감)695	-	-
운동오락시설	17,123	감)17,123	-	-
녹지용지	91,725	감)91,725	-	-
녹지	91,725	감)91,725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 폐지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14	3,189	27,981	2	781	7,824	4	1,020	12,107	8	1,388	8,050
중 로	2	535	8,051	-	-	-	2	535	8,051	-	-	-
소 로	12	2,654	19,930	2	781	7,824	2	485	4,056	8	1,388	8,050

■ 도로 결정(변경)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중로	2	1	15	보조간선도로	265	산9-1	5-1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폐지	중로	2	2	15	보조간선도로	270	산37-12	산72-1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폐지	소로	1	1	10	국지도로	390	소로2-1	중로2-1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폐지	소로	1	2	10	국지도로	391	소로3-3	산1-30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폐지	소로	2	1	8	국지도로	315	중로2-2	6-15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로	170	6-15	중로2-1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로	361	소로2-1	소로2-1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로	90	중로2-1	소로1-2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로	160	소로3-3	산29-6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폐지	소로	3	5	6	국지도로	58	소로1-2	소로3-4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폐지	소로	3	6	4	국지도로	133	소로1-1	산1-32	일반도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남 해 군 공 보

(23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폐지	소로	3	7	4	국지 도로	111	소로2-1	산1-32	일반도 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폐지	소로	3	8	4	국지 도로	460	산1-32	소로1-1	일반도 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폐지	소로	3	9	4	국지 도로	15	소로3-1	178-20	일반도 로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2-1호선	-	○노선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노선폐지
중로2-2호선	-	○노선폐지	"
소로1-1호선	-	○노선폐지	"
소로1-2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호선	-	○노선폐지	"
소로2-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5호선	-	○노선폐지	"
소로3-6호선	-	○노선폐지	"
소로3-7호선	-	○노선폐지	"
소로3-8호선	-	○노선폐지	"
소로3-9호선	-	○노선폐지	"

②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대벽리 165답 일원	20,937	감)20,937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기정	2	주차장	대벽리 6-15잡 일원	6,864	감)6,864	-	건교부고시 제1998-433호 (1987.07.02.)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폐지	장기간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아온 주민들의 민원해소 및 자율적 개발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이 폐지됨에 따라 기 결정된 주차장 폐지
2	주차장	○폐지	"

20. 삼동면 금송지구 지구단위계획(산업형) - 관리번호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2	금송 지구단위계획구역	산업형	삼동면 금송리 873-6번지일원	48,360	-	48,360	경고 제2007-443호 (2007.11.08)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2	금송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20 → 12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결정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고
계	48,360	100.0	
공업용지	35,452	73.4	
녹지용지	6,346	13.1	
공공시설용지	6,546	13.5	
도로	5,110	10.5	
저류지	359	0.7	
하천	1,093(50)	2.3	():도로중복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 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 조서

■ 도로 총괄표

류 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 계	2	559	5,110	1	213	2,276	1	346	2,834	-	-	-
소 로	2	559	5,110	1	213	2,276	1	346	2,834	-	-	-

■ 도로 결정 세부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소로	2	76	8	보조간선도로	2,054	상동면 지족리 291-19번지 일원	상동면 금송리 526-11번지 일원	일반도로		남해군고시 제2009-10호 (2009.02.05.)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 346m
기정	소로	1	1	10	집산도로	213	상동면 금송리 873-6번지일원	상동면 금송리 726번지 일원	일반도로		남해군고시 제2014-77호 (2014.10.17.)	

2) 공간시설

①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녹 지	완충녹지	상동면 금송리 704-6번지 일원	1,939	남해군고시 제2014-77호 (2014.10.17.)	
기정	2	녹 지	완충녹지	상동면 금송리 873-6번지 일원	1,948	남해군고시 제2014-77호 (2014.10.17.)	
기정	3	녹 지	경관녹지	상동면 금송리 902번지 일원	686	남해군고시 제2014-77호 (2014.10.17.)	
기정	4	녹 지	경관녹지	상동면 금송리 895-4번지 일원	706	남해군고시 제2014-77호 (2014.10.17.)	
기정	5	녹 지	경관녹지	상동면 금송리 712번지 일원	270	남해군고시 제2014-77호 (2014.10.17.)	
기정	6	녹 지	경관녹지	상동면 금송리 711번지 일원	797	남해군고시 제2014-77호 (2014.10.17.)	

3) 방재시설

① 하천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연장 (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52	금송천	소하천	삼동면 금송리 산228	삼동면 금송리 726	-	1.65	7~8	13,100	남해군고시 제2009-10호 (2009.02.02.)	지구단위 계획구역내 : 0.14km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

가구번호	가구면적 (㎡)	위 치	비고
계	35,811		
I	1	9,335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704-4번지 일원	공업용지
	2	15,394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873-6번지 일원	
	3	9,765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893번지 일원	
	4	958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890-6번지 일원	
II	1	101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705번지 일원	공공시설용지 (저류지)
	2	258 남해군 삼동면 금송리 726번지 일원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1) 공업용지

도면 표시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 - 1 I - 2 I - 3 I - 4	용도	지정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3 및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 별표12의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권장 용도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C31)
		불허 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60%
	용적률	○ 150%
	높 이	○ 20m, 5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 공공시설용지

도면표시 번호	구 분		계획내용
II - 1 II - 2	삼동면 금송리 705번지 일원 삼동면 금송리 726번지 일원	용 도	지정용도 ○ 저류지
			권장용도 ○ 저류지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

21. 창선면 장포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 관리번호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3	장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창선면 진동리 산243번지일원	1,940,284.5	-	1,940,284.5	남해군고시 제2010-32호 (2010.5.31)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3	장포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17 → 13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가.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1) 공공·문화체육시설 결정 조서

① 체육시설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6	체육 시설	골프장	남해군 창선면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1,331,102	남해군고시 제2010-32호 (2010.05.31.)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합 계		609,182.5			609,182.5
-	I	99,995.0	I - 1	산235-18번지 일원	2,357.0
			I - 2	산235-18번지 일원	3,309.0
			I - 3	산235-18번지 일원	2,329.0
			I - 4	산235-18번지 일원	5,865.0
			I - 5	산235-18번지 일원	11,111.0
			I - 6	산235-19번지 일원	6,781.0
			I - 7	산235-19번지 일원	7,125.0
			I - 8	산235-14번지 일원	1,225.0
			I - 9	산235-18번지 일원	2,114.0
			I - 10	산235-11번지 일원	9,822.0
			I - 11	산235-18번지 일원	6,520.0
			I - 12	산235-19번지 일원	2,759.0
			I - 13	산235-19번지 일원	10,619.0
			I - 14	산235-18번지 일원	19,777.0
			I - 15	산235-20번지 일원	8,282.0
-	II	75,057.0	II - 1	산243번지 일원	4,726.0
			II - 2	산243번지 일원	6,454.0
			II - 3	산243번지 일원	5,903.0
			II - 4	산243번지 일원	3,382.0
			II - 5	산243번지 일원	2,331.0
			II - 6	산243번지 일원	2,610.0
			II - 7	산243번지 일원	1,466.0
			II - 8	산243번지 일원	7,739.0
			II - 9	산243번지 일원	1,715.0
			II - 10	산243번지 일원	2,756.0
			II - 11	산243번지 일원	35,975.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	V	73,163.8	V- 1	산243번지 일원	9,256.0	
			V- 2	산243번지 일원	7,257.0	
			V- 3	산243번지 일원	6,771.0	
			V- 4	산243번지 일원	5,462.0	
			V- 5	산243번지 일원	7,878.0	
			V- 6	산243번지 일원	206.0	
			V- 7	산243번지 일원	458.0	
			V- 8	산243번지 일원	467.0	
			V- 9	산243번지 일원	1,165.0	
			V-10	산243번지 일원	7,178.8	
			V-11	산243번지 일원	2,363.0	
			V-12	산243번지 일원	3,035.0	
			V-13	산243번지 일원	21,667.0	
-	VI	17,423.0	VI- 1	산243번지 일원	3,709.0	
			VI- 2	산243번지 일원	3,809.0	
			VI- 3	산243번지 일원	239.0	
			VI- 4	산243번지 일원	3,162.0	
			VI- 5	산243번지 일원	6,504.0	
-	III	32,293.7	III- 1	1332번지	22,909.7	
			III- 2	1332번지	9,384.0	
-	IV	48,893.9	IV- 1	산334-2번지 일원	7,271.0	
			IV- 2	산334-2번지 일원	15,481.0	
			IV- 3	산340-9번지 일원	4,884.0	
			IV- 4	산334-7번지 일원	488.0	
			IV- 5	산336번지 일원	16,221.9	
			IV- 6	산334-7번지 일원	4,548.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	VII	216,962.0	VII- 1	산340-6번지 일원	10,686.0	
			VII- 2	산340-6번지 일원	9,031.0	
			VII- 3	산340-10번지 일원	10,512.0	
			VII- 4	산340-10번지 일원	2,207.0	
			VII- 5	산340-9번지 일원	5,814.0	
			VII- 6	산343-4번지 일원	5,335.0	
			VII -7	산343-4번지 일원	10,611.0	
			VII- 8	산343-2번지 일원	5,307.0	
			VII- 9	산343-3번지 일원	1,928.0	
			VII-10	산343-3번지 일원	2,565.0	
			VII-11	산343-2번지 일원	12,968.0	
			VII-12	산343-4번지 일원	2,670.0	
			VII-13	산345번지 일원	888.0	
			VII-14	산340번지 일원	5,158.0	
			VII-15	산340-8번지 일원	6,714.0	
			VII-16	산340-16번지 일원	3,722.0	
			VII-17	산343-4번지 일원	12,033.0	
			VII-18	산340-2번지 일원	21,659.0	
			VII-19	산343-2번지 일원	933.0	
			VII-20	산343-2번지 일원	3,752.0	
			VII-21	산340번지 일원	35.0	
			VII-22	산340번지 일원	36.0	
			VII-23	산340번지 일원	376.0	
			VII-24	산343-1번지 일원	61,974.0	
			VII-25	산343-1번지 일원	20,048.0	
-	VIII	45,395	VIII- 1	산343-3번지 일원	10,419.0	
			VIII- 2	산343-3번지 일원	11,353.0	
			VIII- 3	산343-3번지 일원	2,129.0	
			VIII- 4	산343-3번지 일원	1,449.0	
			VIII- 5	산343-3번지 일원	1,136.0	
			VIII- 6	산343-3번지 일원	2,764.0	
			VIII- 7	산343-3번지 일원	16,145.0	

남 해 군 공 보

(24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획지번호	위 치			
-	I - 1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에 의한 휴양콘도미 니엄
	I - 2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I - 3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I - 4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I - 5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I - 6	진동리 산235-19번지 일원		권장 용도	-
	II - 1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I - 2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I - 3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I - 4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불허 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V - 1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2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3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4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I - 1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I - 2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II - 1	진동리 1332번지		건폐율	○ 40% 이하
IV - 1	진동리 산334-2번지 일원				
IV - 2	진동리 산334-2번지 일원				
VII - 1	진동리 산340-6번지 일원				
VII - 2	진동리 산340-6번지 일원				
VII - 3	진동리 산340-10번지 일원	용적률	○ 100% 이하		
VII - 4	진동리 산340-10번지 일원				
VII - 5	진동리 산340-9번지 일원				
VII - 6	진동리 산343-4번지 일원				
VII - 7	진동리 산343-4번지 일원	높이	○ 4층 이하		
VII - 8	진동리 산343-2번지 일원				
VII - 9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 - 10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I - 1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I - 2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I - 2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241)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획지번호	위 치					
-	I - 7	진동리 산235-19번지 일원	용도	지정용도	○ 도로		
	II - 5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권장용도	-		
	V - 5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불허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VI - 3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V - 3	진동리 산340-9번지 일원	건폐율	-			
	VII - 11	진동리 산343-2번지 일원	용적률	-			
	VIII - 3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높이	-			
-	I - 8	진동리 산235-14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 조성녹지		
	I - 9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I - 10	진동리 산235-11번지 일원					
	I - 11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I - 12	진동리 산235-19번지 일원					
	I - 13	진동리 산235-19번지 일원					
	II - 6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권장 용도	-		
	II - 7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I - 8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I - 9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6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불허 용도	○ 지정용도외의 용도
	V - 7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8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9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10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 - 11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건폐율	-			
	VI - 4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IV - 4	진동리 산334-7번지 일원					
	IV - 5	진동리 산336번지 일원					
	VII - 12	진동리 산343-4번지 일원	용적률	-			
	VII - 13	진동리 산345번지 일원					
	VII - 14	진동리 산340번지 일원					
	VII - 15	진동리 산340-8번지 일원					
VII - 16	진동리 산340-16번지 일원						
VII - 17	진동리 산343-4번지 일원	높이	-				
VII - 18	진동리 산340-2번지 일원						
VII - 19	진동리 산343-2번지 일원						
VII - 20	진동리 산343-2번지 일원						
VIII - 4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I - 5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VIII - 6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획지번호	위 치			
-	I-14	진동리 산235-18번지 일원	용도	지정 용도	○원형녹지
	I-15	진동리 산235-20번지 일원			
	II-10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권장 용도	-
	II-11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12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불허 용도	○지정용도외의 용도
	V-13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VI- 5	진동리 산243번지 일원	건폐율	-	
	III- 2	진동리 1332번지			
	IV- 6	진동리 산334-7번지 일원			
	VII-21	진동리 산340번지 일원	용적률	-	
	VII-22	진동리 산340번지 일원			
	VII-23	진동리 산340번지 일원			
	VII-24	진동리 산343-1번지 일원	높이	-	
	VII-25	진동리 산343-1번지 일원			
	VIII- 7	진동리 산343-3번지 일원			

22. 고현면 성산(썸비치)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 폐지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성산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고현면 도마리 1879번지 일원	741,971	감)741,971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성산 지구단위계획구역	○폐지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남해 썸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기 결정된 개발진흥지구 폐지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 계	741,971	감)741,971	-	-	
체육시설용지 (골프장)	합계	668,922	감)668,922	-	-
	체육시설용지	268,199	감)268,199	-	-
	건축시설용지	14,920	감)14,920	-	-
	공공시설용지	105,963	감)105,963	-	-
	녹지용지	279,840	감)279,840	-	-
관광휴양시설용지 (휴양콘도미니엄)	합계	73,049	감)73,049	-	-
	관광휴양시설용지	32,328	감)32,328	-	-
	공공시설용지	16,229	감)16,229	-	-
	녹지용지	24,492	감)24,492	-	-

나.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

① 도로 결정(변경) 조서

■ 도로 총괄표 - 폐지

류별	합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노선수	연장 (m)	면적 (㎡)
합계	18	2,107	14,498	1	464	4,930	2	346	2,503	15	1,297	7,065
중로	2	60	832	-	-	-	-	-	-	2	60	832
소로	16	2,047	13,666	1	464	4,930	2	346	2,503	13	1,237	6,233

■ 도로 세부(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폐지	중로	3	1	12	국지도	40	설천면 비란리 775답	설천면 비란리 775답	진입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중로	3	2	12	국지도	20	설천면 비란리 775답	설천면 비란리 795답	진입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1	1	11	국지도	464	설천면 비란리 775답	설천면 비란리 1102전	일반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2	1	8~10	국지도	147	설천면 비란리 65-10	설천면 비란리 1102-3전	일반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2	2	8	국지도	199	설천면 비란리 15-18전	설천면 비란리 15-26임	일반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1	6	국지도	158	설천면 비란리 775답	설천면 비란리 15-9전	일반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2	6	국지도	363	설천면 비란리 65-28전	설천면 비란리 765답	일반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3	6	국지도	147	설천면 비란리 18전	설천면 비란리 65-11전	진입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4	6	국지도	51	설천면 비란리 15-16전	설천면 비란리 13-2전	일반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5	6	국지도	50	설천면 비란리 15-51전	설천면 비란리 13-2전	일반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6	6	국지도	53	설천면 비란리 1102-1잡	설천면 비란리 15-22임	일반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7	2	특수로	23	설천면 비란리 65-11전	설천면 비란리 65-11전	보행자 전용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8	2	특수로	39	설천면 비란리 841-3답	설천면 비란리 762답	보행자 전용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9	2	특수로	57	설천면 비란리 841-3답	설천면 비란리 763답	보행자 전용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10	10	특수로	47	설천면 비란리 841-3답	설천면 비란리 65-11전	보행자 전용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11	2	특수로	90	설천면 비란리 1102-3전	설천면 비란리 1102-1전	보행자 전용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12	2	특수로	59	설천면 비란리 15-10전	설천면 비란리 1102-1잡	보행자 전용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소로	3	13	3	특수로	100	설천면 비란리 13-2전	설천면 비란리 15-26임	보행자 전용 도로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 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3-1호선	-	○노선폐지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남해 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기 결정된 노선폐지
중로3-2호선	-	○노선폐지	"
소로1-1호선	-	○노선폐지	"
소로2-1호선	-	○노선폐지	"
소로2-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3호선	-	○노선폐지	"
소로3-4호선	-	○노선폐지	"
소로3-5호선	-	○노선폐지	"
소로3-6호선	-	○노선폐지	"
소로3-7호선	-	○노선폐지	"
소로3-8호선	-	○노선폐지	"
소로3-9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0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1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2호선	-	○노선폐지	"
소로3-13호선	-	○노선폐지	"

②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주차장	설천면 비란리 774답 일원	572	감)572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폐지	2	주차장	설천면 비란리 20-2대 일원	1,159	감)1,159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주차장	○폐지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남해 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기 결정된 주차장 폐지 코자 함
2	주차장	○폐지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남해 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기 결정된 주차장 폐지 코자 함

2)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체육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 시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1	체육 시설	골프장	경상남도 남해군 고현면 도마리 1879번지 일원	668,922	감)668,922	-	남해군고시 제2011-74호 (2011.12.29.)	

■ 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체육시설	○폐지	○남해·하동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남해 썬비치 관광리조트 조성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이 취소됨에 따라 기 결정된 체육시설 폐 지코자 함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247)

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I	668,922	감)668,922	-	I-1	고현면 도마리 1879답 일원	668,922	감)668,922	-	
II	4,720	감)4,720	-	II-1	설천면 비란리 773답 일원	587	감)587	-	
				II-2	설천면 비란리 21답 일원	585	감)585	-	
				II-3	설천면 비란리 22답 일원	590	감)590	-	
				II-4	설천면 비란리 24답 일원	558	감)558	-	
				II-5	설천면 비란리 772답 일원	606	감)606	-	
				II-6	설천면 비란리 772답 일원	593	감)593	-	
				II-7	설천면 비란리 21답 일원	606	감)606	-	
				II-8	설천면 비란리 23답 일원	595	감)595	-	
III	4,497	감)4,497	-	III-1	설천면 비란리 764답 일원	785	감)785	-	
				III-2	설천면 비란리 65-11전 일원	756	감)756	-	
				III-3	설천면 비란리 65-11전 일원	684	감)684	-	
				III-4	설천면 비란리 762답 일원	880	감)880	-	
				III-5	설천면 비란리 1102-3전 일원	879	감)879	-	
				III-6	설천면 비란리 65-11전 일원	513	감)513	-	
IV	5,084	감)5,084	-	IV-1	설천면 비란리 65-10임 일원	557	감)557	-	
				IV-2	설천면 비란리 65-10임 일원	509	감)509	-	
				IV-3	설천면 비란리 65-7전 일원	492	감)492	-	
				IV-4	설천면 비란리 65-32전 일원	525	감)525	-	
				IV-5	설천면 비란리 18전 일원	488	감)488	-	
				IV-6	설천면 비란리 65-5전 일원	490	감)490	-	
				IV-7	설천면 비란리 65-13전 일원	492	감)492	-	
				IV-8	설천면 비란리 65-12전 일원	486	감)486	-	
				IV-9	설천면 비란리 65-12전 일원	486	감)486	-	
				IV-10	설천면 비란리 65-47전 일원	262	감)262	-	
				IV-11	설천면 비란리 65-10임 일원	297	감)297	-	
V	5,363	감)5,363	-	V-1	설천면 비란리 65-14임 일원	519	감)519	-	
				V-2	설천면 비란리 65-14임 일원	488	감)488	-	
				V-3	설천면 비란리 65-8임 일원	502	감)502	-	
				V-4	설천면 비란리 65-68임 일원	510	감)510	-	
				V-5	설천면 비란리 19-1전 일원	620	감)620	-	
				V-6	설천면 비란리 1102전 일원	463	감)463	-	
				V-7	설천면 비란리 20-3답 일원	476	감)476	-	
				V-8	설천면 비란리 65-14임 일원	484	감)484	-	
				V-9	설천면 비란리 15-48대 일원	499	감)499	-	
				V-10	설천면 비란리 15-48대 일원	802	감)802	-	

남 해 군 공 보

(248)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VI	4,543	감)4,543	-	VI-1	설천면 비란리 764답 일원	816	감)816	-	
				VI-2	설천면 비란리 762답 일원	822	감)822	-	
				VI-3	설천면 비란리 1100답 일원	816	감)816	-	
				VI-4	설천면 비란리 1100-1잡 일원	1,270	감)1,270	-	
				VI-5	설천면 비란리 722답 일원	819	감)819	-	
VII	1,034	감)1,034	-	VII-1	설천면 비란리 1102전 일원	1,034	감)1,034	-	
VIII	2,292	감)2,292	-	VIII-1	설천면 비란리 15-7전 일원	484	감)484	-	
				VIII-2	설천면 비란리 15-12전 일원	493	감)493	-	
				VIII-3	설천면 비란리 15-17전 일원	607	감)607	-	
				VIII-4	설천면 비란리 15-14전 일원	708	감)708	-	
IX	2,138	감)2,138	-	IX-1	설천면 비란리 15-15전 일원	501	감)501	-	
				IX-2	설천면 비란리 13-2전 일원	584	감)584	-	
				IX-3	설천면 비란리 15-11전 일원	492	감)492	-	
				IX-4	설천면 비란리 15-3전 일원	561	감)561	-	
X	2,153	감)2,153	-	X-1	설천면 비란리 15-40전 일원	483	감)483	-	
				X-2	설천면 비란리 15-25대 일원	498	감)498	-	
				X-3	설천면 비란리 15-25대 일원	484	감)484	-	
				X-4	설천면 비란리 15-16전 일원	485	감)485	-	
				X-5	설천면 비란리 1102-1잡 일원	203	감)203	-	
X I	1,991	감)1,991	-	X I-1	설천면 비란리 15-11전 일원	484	감)484	-	
				X I-2	설천면 비란리 15-22임 일원	492	감)492	-	
				X I-3	설천면 비란리 15-12전 일원	484	감)484	-	
				X I-4	설천면 비란리 15-22임 일원	531	감)531	-	
X II	1,941	감)1,941	-	X II-1	설천면 비란리 15-31전 일원	483	감)483	-	
				X II-2	설천면 비란리 15-21전 일원	488	감)488	-	
				X II-3	설천면 비란리 1103도 일원	487	감)487	-	
				X II-4	설천면 비란리 15-26임 일원	483	감)483	-	
X III	1,052	감)1,052	-	X III-1	설천면 비란리 1104잡 일원	501	감)501	-	
				X III-2	설천면 비란리 1104잡 일원	551	감)551	-	
X IV	20,202	감)20,202	-	X IV-1	설천면 비란리 13-1임 일원	16,883	감)16,883	-	
				X IV-2	설천면 비란리 775답 일원	171	감)171	-	
				X IV-3	설천면 비란리 775답 일원	190	감)190	-	
				X IV-4	설천면 비란리 1116유 일원	796	감)796	-	
				X IV-5	설천면 비란리 24답 일원	2,162	감)2,162	-	

남 해 군 공 보

2017년 1월 25일

제 574 호 (249)

라.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폐지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	I-1	고현면 도마리 1879답 일원	허용용도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건 폐 율	5%
			용 적 륜	10%
			높 이	2층 이하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	II-1	설천면 비란리 773답 일원 설천면 비란리 21답 일원 설천면 비란리 22답 일원 설천면 비란리 24답 일원 설천면 비란리 772답 일원 설천면 비란리 772답 일원 설천면 비란리 21답 일원 설천면 비란리 23답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II-2		40% 이하	
	II-3			
	II-4		120% 이하	
	II-5			
	II-6			
	II-7			
	II-8		높 이	3층 이하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II	III-1	설천면 비란리 764답 일원 설천면 비란리 65-11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65-11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792답 일원 설천면 비란리 1102-3전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III-2		40% 이하	
	III-3			
	III-4		120% 이하	
	III-5			
III-5	높 이	3층 이하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V	IV-1	설천면 비란리 65-10임 일원 설천면 비란리 65-10임 일원 설천면 비란리 65-7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65-33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18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65-5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65-13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65-12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65-12전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IV-2		40% 이하	
	IV-3			
	IV-4		80% 이하	
	IV-5			
	IV-6			
	IV-7			
	IV-8		2층 이하	
	IV-9			
IV-9	높 이	2층 이하		

남 해 군 공 보

(250)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V	V-1 V-2	설천면 비란리 65-14임 일원 설천면 비란리 65-14임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2층 이하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V	V-3 V-4 V-5 V-6 V-7 V-8 V-9	설천면 비란리 65-8임 일원 설천면 비란리 65-68임 일원 설천면 비란리 19-1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1102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20-3답 일원 설천면 비란리 65-14임 일원 설천면 비란리 15-48대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2층 이하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VI	VI-1 VI-2 VI-3	설천면 비란리 764답 일원 설천면 비란리 792답 일원 설천면 비란리 1100답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120% 이하
			높 이	3층 이하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VII	VII-1	설천면 비란리 1102전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부대시설(게스트하우스)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2층 이하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VIII	VIII-1	설천면 비란리 15-7전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VIII-2	설천면 비란리 15-42전 일원	건 폐 율	40% 이하
	VIII-3	설천면 비란리 15-17전 일원	용 적 률	80% 이하
	VIII-4	설천면 비란리 15-14전 일원	높 이	2층 이하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IX	IX-1	설천면 비란리 15-15전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IX-2	설천면 비란리 13-2전 일원	건 폐 율	40% 이하
	IX-3	설천면 비란리 15-11전 일원	용 적 률	80% 이하
	IX-4	설천면 비란리 15-3전 일원	높 이	2층 이하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X	X-1 X-2 X-3	설천면 비란리 15-40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15-25대 일원 설천면 비란리 15-25대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2층 이하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XI	XI-1 XI-2 XI-3 XI-4	설천면 비란리 15-11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15-22임 일원 설천면 비란리 15-12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15-22임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2층 이하

남 해 군 공 보

(252)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XII	XII-1 XII-2 XII-3 XII-4	설천면 비란리 15-31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15-21전 일원 설천면 비란리 1103도 일원 설천면 비란리 15-26임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2층 이하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X III	X III-1	설천면 비란리 1104잡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80% 이하
			높 이	2층 이하

가구 번호	획지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X IV	X IV-2	설천면 비란리 775답 일원	허용용도	•관광진흥법 제3조 1항 2호 나목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 부대시설(관리사무소)
			건 폐 율	40% 이하
			용 적 률	40% 이하
			높 이	1층 이하

23. 대한야구캠프 지구단위계획(관광휴양형) - 관리번호 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구역명	구역의 세분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4	대한야구캠프 지구단위계획구역	관광 휴양형	서면 서상리 1182-3번지 일원	56,454	-	56,454	남해군고시 제2013-3호 (2013.1.7)	

■ 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번호	구역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4	대한야구캠프 지구단위계획구역	○관리번호 변경 - 21 → 14	○체계적 관리를 위한 관리번호 변경

2. 지구단위계획 결정 조서

가. 토지이용계획결정 조서

구분	면적(㎡)	구성비(%)	비고
합 계	56,454	100.0	
관광휴양시설용지(Ⅰ)	20,529	36.3	
숙박시설(Ⅰ-1)	20,228	35.8	
편의시설(Ⅰ-2)	301	0.5	
체육시설용지(Ⅱ)	18,553	32.9	대야구장, 리틀야구장 각 1면
녹지용지(Ⅲ)	17,372	30.8	

남 해 군 공 보

(254) 제 574 호

2017년 1월 25일

나.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계	-	56,454		56,454	
I	I-1	20,529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3번지 일원	20,228	관광휴양시설용지 (숙박시설)
	I-2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3번지 일원	301	관광휴양시설용지 (편의시설)
II	II	18,553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3번지 일원	18,553	체육시설용지
III	III	17,372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3번지 일원	17,372	녹지용지

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군관리계획 변경 조서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I-1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3번지 일원	용도	허용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형태	-	
		색채	•별첨-1. 색채계획 참조	
		건축선	-	
I-2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3번지 일원	용도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에 따른 제1종근린생활시 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5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형태	-	
		색채	-	
		건축선	-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II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3번지 일원	용도	허용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설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40% 이하	
		용적률	•100% 이하	
		높이	•3층 이하	
		배치·형태	-	
		색채	-	
		건축선	-	
III	경상남도 남해군 서면 서상리 1182-3번지 일원	용도	•녹지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형태	-	
		색채	-	
		건축선	-	

남해군 고시 제2016 - 102호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58조 제3항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에 의하여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합니다.

2016년 12월 16일

남 해 군 수

1. 사업의 명칭 :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2. 사업 목적 : 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확충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 도모
3. 위치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일원(벽련, 두모, 소량, 대량마을)
4. 사업 개요
 - 기초생활기반확충
 - 다목적 마을회관 : 부지조성 2,648㎡, 건물(2층, 330㎡) 1동
 - 대량마을 진입로 확포장 : L=60m, B=6.0m
 - 소량마을 안길확장 : L=50m, B=4.0m
 - 지역경관개선
 - 소량마을 경관공원조성 : 양아리 782번지 외 30,000㎡ 꽃밭조성
 - 벽련마을 진입로정비 : 차량대피로 4개소, 안전난간 L=170m
 - 안내판 설치 : 6개소
 - 지역소득증대
 - 짚라인 설치 : 1개소(H=15~20m, L=210m)
 - 지역역량강화계획
 - 교육 : 1식, 컨설팅 : 1식, 홍보마케팅 : 1식, 정보구축 : 1식
5. 총 사업비 : 4,200백만원 (국비 2,940백만원, 지방비 1,260백만원)
6. 사업기간 : 2014년 02월 ~ 2017년 12월

- 7. 사업 시행자 : 남해군수(위탁 : 한국농어촌공사 서부지사)
-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세목 조서 : 별첨
- 9. 기본계획 열람 장소 : 관련자료는 남해군청 미래전략사업단(지역개발팀, 055-860-3614)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양아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편입토지 조서

사업내용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 면적 (㎡)	편입 면적 (㎡)	비고
	시군	읍면	리	본번	부번				
다목적 마을회관	남해	상주	양아	800		학	4,010	4,010	
				807		전	750	106	
				807	1	전	58	58	
				807	2	전	129	129	
				1954		도	4,891	184	
				산285		임	1,785	235	
				소계		6필지	11,623	4,722	
대량마을 진입로	남해	상주	양아	841	1	답	731	731	
				850	1	대	264	264	
				843		대	324	8	
				849	3	전	7	7	
				849	2	도	109	1	
				소계		5필지	1,435	1,011	
소량마을 안길	남해	상주	양아	1953		도	1,309	13	
				1950		구	7,412	63	
				670	2	대	175	175	
				670	4	대	17	17	
				673	2	대	198	31	
				672		대	136	23	
				673	1	대	182	182	
				674	2	대	221	35	
				674	1	대	218	28	
				1951		도	740	60	
676		대	443	50					
				소계		11필지	11,051	677	
벽련마을 진입로	남해	상주	양아	1739	5	전	2,269	17	
				1946		도	5,802	64	
				1753	2	전	542	13	
				1726	1	전	711	7	
				1725	1	전	271	70	
				1725	2	임	66	12	
				1712	3	도	155	133	
				1712	4	임	107	70	
				1712	1	임	140	26	
				1712		유	793	2	
				1711	4	답	164	3	
				산29	7	도	116	34	
1711	3	도	33	6					
				소계		13필지	11,169	457	
				계		35필지	35,278	6,867	

양아마을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기본계획서
- 요약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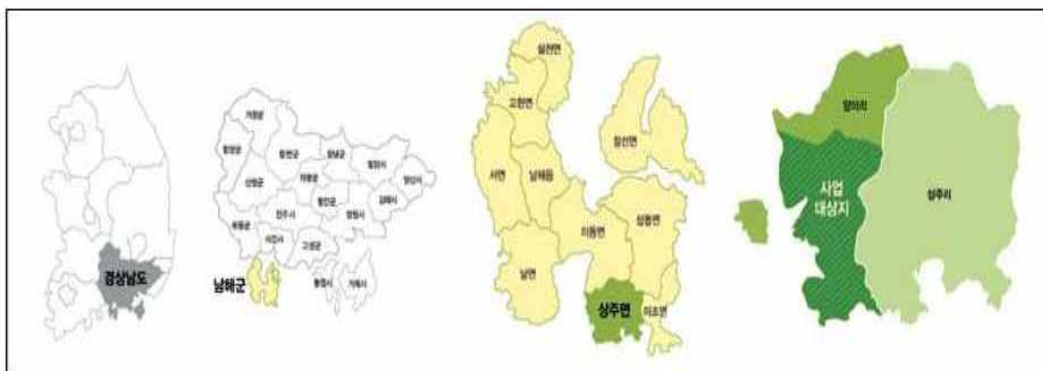
양아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1. 사업개요

-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대량 외 3개리 일원 (법정리 1개, 행정리 4개)
- 면적 : 288ha(농경지 57ha, 농경지 147ha, 임야 68ha, 기타 16ha)
- 사업비 : 4,200백만원(국비 : 70% 지방비 : 30%) + 자부담 100백만원
- 사업기간 : 2014년 2월 ~ 2017년 12월

2. 일반현황

- 가구 인구 : 258호(농가 156호, 비농가 62호), 인구 473명
- 지역자원
 - 권역내 : 상주학생수련원, 두모체험마을, 카약체험장, 매기체험장, 주상절리, 유채꽃단지, 다랭이논 등
 - 권역외 : 상주은모래비치, 송정솔바람해변, 금산, 노도, 세존도, 용문사 등
- 지역특성
 - 남해로 들어오는 3번과 19번 국도를 통해 진입가능
 - 농촌과 어촌의 중간 형태를 가지고 있음
 - 한려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유



양아리 행정구역

양아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양아마을 종합정비사업 계획안



예비계획				기본계획			
주요공종		사업비 (백만원)	비고	주요공종		사업비 (백만원)	비고
기초생활 기반확충	다목적회관(소량)	740		기초생활 기반확충	다목적마을회관	1,668	위치 변경
	상주학생수련원 리모델링(두모)	1,100	교육청 협의 불가		진입로확포장(대량)	388	"
	진입로정비 (두모~수련원)	280	수련원 연계		마을안길확포장(소량)	210	"
지역경관 개선	구운몽 테마산책로 조성(벽련~소량)	340	공원구역 내	지역경관 개선	경관공원 조성(소량)	250	"
	유채꽃공원 조성(두모)	260	"		진입로정비(벽련)	154	"
	주상절리 포토존(소량)	120	"		권역안내판 설치	50	
	권역안내판 설치 (관문설치 등)	160			지역소득 증대	ZIP라인 설치(두모)	400 (100)
지역소득 증대	권역전망대 및 ZIP라인 설치(두모)	200		지역역량 강화	교육 및 견학, 컨설팅, 홍보마케팅, 마을경영 등	456	
기타부대	계획수립비, 공감관리비 등	590		기타부대	계획수립비, 공감관리비 등	624	
합계		4,200		합계		4,200 (100)	

양아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3. 발전비전 및 목표

남해바다 푸르름을
간직한 권역만들기

-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아름다운 마을만들기
- 권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편의시설확충

문화로 부자되는
권역만들기

-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주민사업수행 역량강화
- 권역이미지 재고를 위한 장소마케팅 사업 추진

함께 어울리는
권역만들기

- 자원간 연계를 통한 휴양마을조성
- 농촌과 어촌의 혼합을 바탕으로 한 체험마을조성

4. 추진경과

(2014) 5월	착수보고	사업에 대한 설명회 및 착수보고 (5.13)
	자원조사	마을자원에 대한 현황조사 (5.20~5.21)
	추진위원회의	권역발전을 위한 회의 개최 (5.27)
	주민설문조사	설문지 작성을 통해 주민들의 희망하는 수요시설 파악 (5.27~6.15)
(2014) 6월	주민교육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된 주민 교육 (6.15)
	선진지견학	거창월성권역, 산청황매골권역 방문 (6.16)
	추진위원회의	권역발전을 위한 회의 개최 (6.24)
(2014) 8월	중간보고	추진사업 중간보고 (8.20)
	주민공청회	1차 주민공청회 (8.28)
(2016) 9월	최종보고	추진사업 최종보고 (9.21)

5. 사업구상도



양아마을 종합정비사업 사업구상도

양아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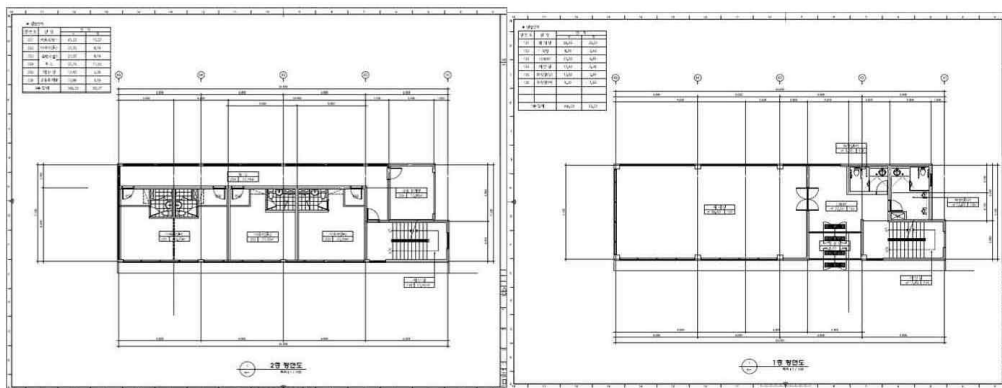
기초생활기반확충

다목적 마을회관

- 필 요 성
 - 주민의 지속적 교류와 지속적 결집을 위한 공간 부족
- 위 치
 - 상주면 양아리 800번지외3필지 [구대량분교] : (자연환경보전지역)
- 규 모
 - 복지회관(2층, 330 m²), 주차장, 운동장, 진입로 등(부지면적 4,480 m², 사업면적 2,648 m²)
- 시 설
 - 주차장, 운동장, 다용도실, 회의실 등
- 사 업 비 : 1,668백만원



다목적 마을회관 지적도



계획평면도 1,2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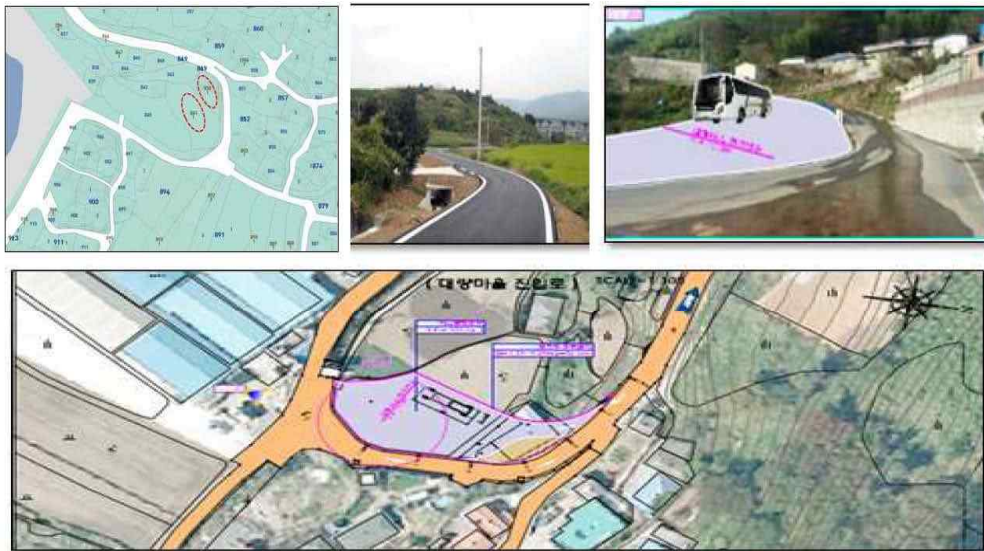
양아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기초생활기바환층
대량마을 진입로 확포장

- 필 요 성
 - 버스 및 화물차량 진출입이 용이 하도록 진입도로 및 버스 회차장 확장
- 위 치
 - 상주면 양아리850-1대, 841-1답 일원
- 규 모
 - 도로확장 L=60m, B=6m(당초 4m),H=2~4m, 회차장확장 A=100m²정도
- 사 업 비 : 388백만원



대량마을 진입로 위치도



대량마을 지적도 및 계획 평면도

양아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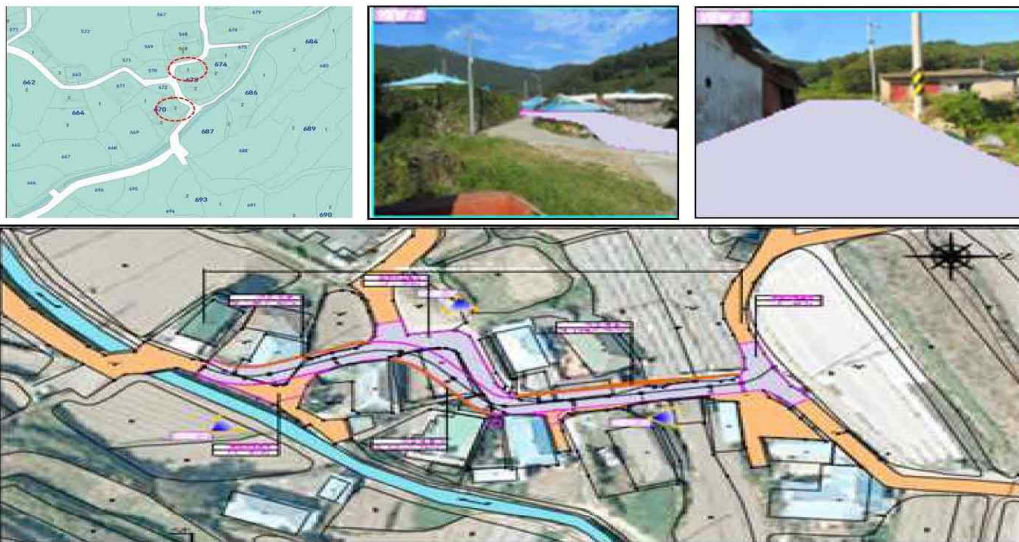
기초생활기반확충

소량마을 안길 확장

- 필 요 성
 - 무계획적 마을형성으로 인해 역할 수행을 제대로 못하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마을 안길을 확장하여 편의 도모
- 위 치
 - 상주면 양아리670-2대, 673-1대
- 규 모
 - 안길 확포장L=50m, B=4m(당초 1.8~2m) 주택철거 2동
- 사업비 : 210백만원



소량마을 안길 확장 위치도



소량마을 지적도 및 계획 평면도

양아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지역경관개선

소량마을 경관공원 조성

- 필 요 성
 - 방치된 휴경농지를 꽃밭이나 정원으로 조성하여 마을주민의 안정과 여가 활용 및 공원 산책길 활용
- 위 치
 - 상주면 양아리782번지 일원
- 규 모
 - 부지정비 및 경관조성 (취녕클 제거, 농로정비, 산책로, 전망대설치)
 - 토지 장기임대 (면적 24,416 m²)
- 사 업 비 : 250백만원



소량마을 경관공원 위치도



소량마을 경관공원 조성계획도

양아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지역경관개선

벽련마을 진입로 정비

- 필 요 성
 - 마을진입 차량통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를 정비
- 위 치
 - 상주면 양아리1715-2 임, 1725-1전, 1739-5 전 중심으로 인근 일원
- 규 모
 - 회피로, 대피소, 난간 1개소 외 2개소 설치
 - 안전난간 L=170m
- 사 업 비 : 154백만원



벽련마을 진입로 위치도



진입로 조성계획도

양아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지역경관개선

마을 안내판

- 필 요 성
 - 지역 방문객에게 전체 권역을 소개하는 안내판 설치 필요
- 위 치
 - 상주면 양아리 일원
- 규 모
 - 권역종합안내판 2개, 마을안내판 4개
- 사업비 : 50백만원
- 운영방안
 -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하며 사무장이 관리책임 담당, 비용은 권역공동기금으로 운영



마을안내판 위치도

1) 주요기능 및 역할

- 권역종합안내판은 권역의 위치, 주요자원, 특색 등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 외에 권역을 홍보하는 홍보안내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함
- 권역 종합안내판과 마을안내판 설치를 통해 권역방문객이 보다 편리하게 권역의 다양한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

2) 관리운영

- 권역종합안내판이나 마을안내판 시설물 관리는 양아마을권역 운영위원회에서 관장하는 것으로 하며, 권역 사무장이 관리의 책임을 맡는 것으로 함
- 안내판 시설물의 교체는 신규 시설물의 조성이나 훼손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권역 공동기금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며, 시설물 관리는 년 1회 시설물 훼손 정도를 평가하여 교체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양아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지역소득증대

ZIP라인 설치

- 필 요 성
 - 마을의 어메니티 자원을 활용해 주민소득증대와 지역주민공감대 형성을 도모하고 지속적 마을 발전의 토대마련
- 위 치
 - 상주면 양아리 산108-3번지, 1392-4번지 일대
 - 공유수면 매립지 일원
- 규 모
 - 출발대(A=5×4m H=15~20m),
 - 도착대(A=5×6m H=3~5m)
- 사 업 비 : 400백만원 (자부담100백만원)



ZIP라인 위치도



ZIP라인 조성계획도

양아마을권역 종합정비사업

지역역량강화

구분		주요내용
교육 부문	리더양성교육	농촌개발, 지역개발기획, 사업조직, 경관 및 향토자원 등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갖춘 지역개발 리더 양성
	주민교육	양아마을종합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동기 부여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실무능력 배양
	선진지견학	주민 간 협동, 주민의식이 뛰어난 마을을 견학하여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의지 및 동기를 부여
컨설팅 부문	체험프로그램 개발컨설팅	권역의 주요 계획시설을 테마로 한 프로그램 개발
	소득활성화 컨설팅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개발전략을 수립
	향토음식개발 컨설팅	전문가에 의한 최고의 생산품목을 발굴해 집중 육성
권역브랜드		소비자들의 변화하는 브랜드 선택기준에 맞추어 브랜드 발굴

투자계획

구분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비고
	합계	4,200	2,940	1,260	자부담(100)
기초생활 확충	다목적마을회관	2,266	1,586	680	
	대량마을진입로확포장	388	272	116	
	소량마을안길확장	210	147	63	
	계	2,090	1,463	627	
지역경관 개선	소량마을경관공원조성	250	175	75	
	벽련마을진입로정비	154	109	45	
	권역안내판설치	50	35	15	
	계	454	318	136	
지역소득 증대	ZIP라인설치	400	280	120	자부담(100)
	계	400	280	120	
지역역량 강화	주민교육	100	70	30	
	홍보마케팅	130	91	39	
	컨설팅	60	42	18	
	정보화	30	21	9	
	운영지원	82	57	25	
	부대비용	54	38	16	
	계	456	319	137	
기타	설계용역,위탁수수료 등	624	437	187	
	계	624	437	187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7 - 31호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5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회계법 시행('16.11.30.)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 등

3. 주요내용

- 지방회계법 및 동법 시행령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
 - 회계관계공무원에 회계책임관 및 통합지출관 추가(안 제2조)
 - 회계책임관에 기획감사실장 지정(안 제3조)
 - 기획감사실장은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 및 세출예산배정(재배정)통지서를 자금배정 권한인 있는 통합지출관에게도 통지(안 제18조, 제19조)
 - 징수결정한 세입금에 대해 지방회계법 제7조 규정에 따라 출납폐쇄기한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납입되지 않은 수입금은 이월(안 제34조)

- 통합지출관의 소요자금의 통합관리 및 운용을 위해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 본청 통합계좌에 입금(안 제39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관서별 소요자금의 통합관리(자금 배정) 업무권한이 있는 통합지출관이 본청 실·과단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 장에게 세출예산 한도액을 통지(안 제48조)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소요 자금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 을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50조의4)
 -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 자금배정계획 수입 및 자금배정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지급명령의 명칭 변경(송금지급명령→계좌 지급명령, 통상지급명령→현금지급명령)(안 제56조, 제57조, 제108조, 제110조 내지 제113조)
- 자금의 관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주관하도록 변경(안 제74조)
- 통합지출관의 자금 배정 업무는 2018. 1. 1.부터 시행(부칙 제2조)
- 현행 제도의 운영 상 문제점 및 미비사항 개선·보완
 - 출납공무원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해서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수입금을 금고에 수납(안 제34조의2)
 - 대가 지급 시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에 인감증명서 외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추가(안 제54조)
 - 물품 등 구매 시 200만원 이하의 경우 일반지출결의서 사용 가능(안 제121조)
 -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를 날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변경(안 제128조)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재무과
- 연락처 : 전화055-860-3162, 팩스860-3705.
- e-mail : soo0909@korea.kr

의 건 제 출 서

1. 자 치 법 규 명			
2. 의견 제출자	성명(명칭)	전화번호	
	주 소		
자치법규안 내용	찬 성 여 부		의 건
	찬성	반대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7년 1월 일

의견 제출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남 해 군 수 귀 하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재무회계에” 를 “재무관리에” 로 한다.

제2조제4항 중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을 “이에 준하는” 으로 하고, “공무원을 포함한다.” 를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4조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을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 및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가” 목를 신설하여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으로 하고, 현행 가목부터 하목까지를 나목부터 거목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나목 중 “읍면장” 을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라목중 “읍·면 부읍면장” 을 “을 ” 부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으로 한다.

제3조제1항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

제3조제1항제6호나목 중 “분임경리관” 을 “분임재무관” 으로 한다

제3조제4항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 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500만원 이상의” 를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500만원 이상의” 를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법 제44조의2를” 을 “「지방재정법」 제44조의2를” 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법 제45조” 를 “「지방재정법」 제45조” 로 한다.

제16조 중 “법 제50조제1항에” 을 “「지방재정법」 50조제1항에” 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 (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을 “세출예산 월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 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제1관서의 장에게” 를 “제1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로 한다.

제19조제2항, 제3항, 제5항 중 “재무과장에게” 를 “통합지출관, 재무과장에게” 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을 “「지방회계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을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재무과장” 을 “재무과장 및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재무관” 을 “재무관, 통합지출관” 으로 한다.

제26조 중 “매년 한 차례” 를 “매년 한 차례 이상” 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법 제50조” 를 “「지방재정법」 제50조” 로 한다.

제27조제2항 중 “법 제50조제4항에” 을 “「지방재정법」 제50조 제4항에” 로 하고, “재무과장과” 를 “통합지출관, 재무과장과” 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19-2호서식까지” 을 “별지 제19호서식을” 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지출원에게” 을 “지출원, 통합지출관에게” 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재무관” 을 “통합지출관, 재무관” 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세정업무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

제30조제2항 중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을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를 “통합지출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로 한다.

제30조제4항 중 “법 제51조 및 영 제59조의2에” 를 “영 제12조에” 로 하고, “법 제51조의2 및 영 제59조의3에” 를 “영 제14조에” 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를 “징수관이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2월 10일까지로” 를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 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군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

제38조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8조에” 를 “영 제23조에” 로 한다.

제3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본청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제3항 중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를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로 한다.

제45조제1항 중 “영 제84조에” 를 “영 제30조에 “로 한다.

제47조제1항 중 “각 실·과” 를 “각 실·과·단” 으로 한다.

제47조제2항 중 “이를 본청 실·과장” 를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단장, 의회 사무과장” 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제2항, 제4항 중 “재무과장” 을 “통합지출관” 으로 하고, 제1항 중 “실·과장,” 을 한다. “실·과·단장, 의회사무과장,” 으로 한다.

제4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재무과장은” 을 “통합지출관은” 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을 “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 로 하고,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을 “다만, 영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로 하며, 제1호부터 제5호 까지를 삭제한다.

제50조의2제1항 중 후단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를 삭제 한다.

제50조의2제1항제5호 중 “통지가” 를 “통보가” 로 한다.

제50조의2제2항중 “통지” 를 통보로 하고,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를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 로 한다

제50조의3제1항 중 “법 제90조에” 를 “법 제45조에” 로 한다.

제50조의4제1항 중 “영 제134조에” 를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로 한다.

제50조의4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현행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
2.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

제50조의4제3항 중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을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경비 및 집합지급은” 을 “경비는” 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중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을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선금급, 송금 및 집합지급에 관하여도” 를 “선금급 지급에 관하여” 로 한다.

제56조 중 “(송금·집합)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를 “(계좌·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에 따라” 로 한다.

제57조제1항 제목 중 “통상지급명령의” 를 “현금지급명령의” 로 하고, “통상지급명령(별지 제55호서식)” 을 “현금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으로 하며, “채주가” 를 “채권자가” 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를 “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읍면장에게” 로 하고, “증감변경할 때도” 를 “증감변경할 때도” 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경우에는” 을 “경우에도” 로 한다.

제63조제1항 단서 중 “군본청의” 를 “본청의” 로 한다.

제64조제5항 중 “영 제97조 제2호에” 를 “영 제45조제2호에” 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영 제27조에” 를 “영 제26조에” 로 한다.

제69조의2제2항 중 “재무과장” 을 “통합지출관 및 재무과장” 으로 한다.

제69조의2제3항 중 “재무과장은” 을 “통합지출관은” 으로 한다.

제70조제4항 중 “재무과장에게” 를 “통합지출관 및 재무과장에게” 로 한다.

제74조제4항 중 “관리는 세입담당과장이” 을 “리·운용은 통합지출관이” 로 한다.

제75조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다.” 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75조제3호 중 “(그 밖의 사무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비)” 를 “(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로 한다.

제77조제3항 중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할 수 있다.” 를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갈음한다.” 로 한다.

제77조제4항 중 “법 제82조에” 를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로 한다.

제84조제1항 중 “제104조제1항에” 를 “영 제51조 제1항에” 로 한다.

제88조 본문 중 “혼합하여” 를 혼동하여 “로 한다.

제89조제1항과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9조제1항 중 “법 제77조에” 를 “법 제38조에” 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영 제103조에” 를 “영 제49조에” 로 한다.

제100조 본문 중 “영 제102조부터 제103조까지의” 를 “영 제48조부터 제49조까지의” 로 한다.

제100조제2호 중 “군, 군금고 해당 금융기관” 을 “군, 군금고 및 해당 금융기관” 으로 한다.

제108조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을” 을 “현금지급명령을” 로 하고, “지급명령통지서와” 를 “현금지급명령통지서와” 로 한다.

제108조제2항 중 “통상지급명령 및 통상지급명령 통지서에” 를 “현금지급명령 및 현금 지급명령통지서에” 로 한다.

제110조 중 “송금지급명령을” 를 “계좌지급명령을” 로 한다.

제111조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제2호 중 “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 를 “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 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3호, 제4호를 삭제한다.

제112조제1항제6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를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로 한다

제112조제1항제7호 중 “통상지급명령통지” 를 “현금지급명령통지” 로 한다.

제113조제1항 제목 중 “통상지급명령통지의” 를 “현금지급명령통지의” 로 하고, 제1항 중 “통상지급명령통지” 를 “현금지급명령통지” 로 한다.

제120조제1항 중 중 “감독은” 을 “관리·감독은” 으로 한다.

제120조제2항 중 “영 제106조에” 는 “영 제50조에” 로 한다.

제121조제2항 중 “기록하여야 한다.” 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로 한다.

제121조제3항 중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를 “계약의 내용에 따라” 로 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를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을 “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를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으로 한다.

제123조제3항 중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를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으로 하고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나 검사자(물품운용관)를” 을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로 한다.

제128조제1항 중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해서는” 을 “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으로 한다.

제129조제2항 중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를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로 한다.

제130조제1항 중 “매월” 을 “매분기” 로 하고, “본청 재무과장에게” 를 “통합지출관에게” 로 한다.

제130조제2항 중 “재무과장은” 을 “통합지출관은” 으로 하고 “20일 까지” 를 “20일 까지” 로 한다.

제131조제1항 중 “분기말 기준” 을 “매분기말” 로 하고, “재무과장에게” 를 “통합지출관에게” 로 한다.

제132조 중 “군수에게” 를 “통합지출관에게” 로 한다.

제138조 본문 중 “감사원계산증명규칙” 을 “「감사원계산증명규칙」” 로 한다.

제141조 중 “영 제108조에” 를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에” 로 한다.

제143조 본문 중 “(별지 제52호서식)” 을 “(별지 제51호서식)” 으로 한다.

제149조제2항제4호 중 “검은 글씨로 ○을 쓰고” 를 “검은 글씨로 0을 쓰고” 로 한다.

제150조제1항 중 “법 제91조에” 를 “법 제46조에” 로 한다.

제150조제3항 중 “법 제96조의2에” 를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63조에” 로 한다.

제155조제1항 중 “총괄채무부채관리관에게” 를 “총괄부채관리관에게” 로 한다.

제158조 중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를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로 한다.

별지 제17호서식의 부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4호, 제35호, 제55-1호, 제57조, 제58호, 제63호, 제63-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5호, 제80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 제2항 제2호,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남해군 (이하 "군"이라 한다)의 예산,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_____ _____ 회계관리에 _____ _____.
제2조(정의) ①~③ <생략> ④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과 회계관계공무원이 집행하는 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u>공무원을 포함한다.</u>	제2조(정의) ①~③ <생략> ④ _____ _____ _____ _____ 이에 준하는 _____ _____ 공무원 및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포함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4조 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외에 세입세출외현금 실무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반드시 2명 이상이 세입세출외현금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본청 <신설> 가.~ 하. <생략> 2.~4. <생략> 5. 읍·면 가. 징수관 - 읍·면장 나. 재무관 - 읍·면장 다. 채권재무관 - 읍·면장 라. 지출원 - 읍·면 부읍면장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을----- _____ _____ _____ _____ ----- . 1. <현행과 같음> 가. 회계책임관 - 기획감사실장 나. ~ 거. <현행 가.~하.와 같음> 2. ~4. <현행과 같음> 5. 읍·면 가. <현행과 같음> 나. 재무관 - 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분임재무관) 다. <현행과 같음> 라. 지출원 - 부읍면장(본청 일상경비의 경우는 일상경비출납원)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마. 수입금출납원 - 재무업무 담당자 바.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경리업무담당자 <신설></p> <p>6. 읍면 보건지소 가. 분임경리관 - 관서의 장 나.~다.<생략></p> <p>7.<생략></p> <p>② ~ ③ <생략></p> <p>④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단서 추가></p> <p>⑤ <생략></p>	<p>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p> <p><u>사. 일상경비출납원 - 지출원이나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아닌 공무원(다른 기관에서 교부하는 경우에 한함)</u></p> <p>6. 읍면 보건지소 가. 분임재무관 - 관서의 장. 나.~다.<현행과 같음></p> <p>7.<현행과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④ _____ _____ _____.</p> <p><u>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u></p> <p>⑤ <현행과 같음></p>
<p>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생략></p> <p>1.~2. <생략></p> <p>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p> <p>4. <생략></p> <p>② <생략></p> <p>1.~2. <생략></p> <p>3. 과오납금의 반환(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p> <p>4. <생략></p>	<p>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현행과 같음></p> <p>1.~2. <현행과 같음></p> <p>3.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1.~2. <생략></p> <p>3. ----- 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p> <p>4. <현행과 같음></p>
<p>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생략></p> <p>② 제1항의 예산안에 첨부할 서류는 <u>법 제44조의2</u>를 기준으로 하며, 관련 서식은 「지방</p>	<p>제12조(예산안의 편성) ① <현행과 같음></p> <p>② _____ 「<u>지방재정법 제44조의2</u>」를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른다.	_____.
<p>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② <생략></p> <p>③ 법 제45조 단서에 따라 본청 실·과·단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 성립전 사업비의 사용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은 군수의 결재(세출과목을 설정하여야 한다)를 얻어 이를 주관 실·과·단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과 재무관 및 지출원에게 통지함과 동시에 예산배정을 하여야 한다.</p> <p>④ ~ ⑤ <생략></p>	<p>제15조(추가경정예산안)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지방재정법」 제45조 -----</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제16조(예산의 이월) 본청 실·과·단장, 의회사무과장 또는 제1관서의 장은 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명시이월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명시이월요구서를 작성하여 제9조에 따른 예산요구서와 같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이월) ----- _____ 「지방재정법」 50조제1항에 ----- _____
<p>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제17조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세입예산월별 정수계획(별지 제12호서식), 세출예산월별 집행계획서(지출원인행위계획서, 별지 제13호서식) 및 세출예산월별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기획감사실장은 본청 실·과·단,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세출예산월별집행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 확정하여 본청 실·과·단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p>	<p>제18조(예산배정계획) ① -----</p> <p>_____</p> <p>_____</p> <p>_____, 세출예산 월</p> <p>별 집행·지출계획서(별지 제13호 서식)를</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제</p> <p>관서의 장 및 통합지출관에게 -----</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정투자사업의 예산배정에 관하여는 미리 기획감사실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p> <p>③ <생략></p>	<p>----- ----- -----</p> <p>③ < 현행과 같음></p>
<p>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생략></p> <p>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8조에 따른 세출예산 월별 분기별 배정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본청 실·과·단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지출원, 재무과장에게 세출예산배정통지서(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월별로 세출예산을 배정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경정예산 등의 사유로 추가 또는 변경 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요관서의 요구를 받아 수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p> <p>③ 본청 실·과·단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의회사무과, 제1관서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및 지출원(분임지출원을 포함한다)에게 집행하게 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세출예산을 재무관별로 재배정(별지 제14호서식)하고, 그 사실을 재무관·지출원 및 재무과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④ <삭제 2008.5.13.></p> <p>⑤ 제1관서의 장은 배정받은 세출예산을 읍·면에 재배정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에게 예산재배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획감사실장은 예산재배정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을 재배정하고 그 결과를 제1관서의 장 및 재무과장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제19조(예산배정 및 통지)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 -----</p> <p style="text-align: right;">통합지출관 재무과장에게 -----</p> <p>③ ----- ----- ----- ----- ----- ----- ----- -----</p> <p>--- 통합지출관, 재무과장에게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 -----</p> <p>통합지출관, 재무과장에게 -----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해서는 제5조에 규정된 한도에 따라 본청의 경우 재무과장, 의회사무과 및 제1관서의 경우는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의 일상경비 범위로 교부된 경비는 각 부서 일상경비출납원과 합의한다.</p> <p>1.~8. <생략> ② ~ ③ <생략></p>	<p>제22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 ----- ----- -----, 「지방회계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제1항의----- -----.</p> <p>1.~8.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생략> ② 각 실·과·단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재무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소모품의 매입·제조·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④<생략></p>	<p>제23조(세출예산의 집행) ①<현행과 같음> ②----- ----- -----, 다만, 일상경비로 지급하는 것----- ----- ----- -----.</p> <p>③~④<현행과 같음></p>
<p>제25조(실행예산) ① <생략> 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실정에 따라 재무과장과 협의하여 당초 예산편성의 절차에 준하여 실행예산을 편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 기획감사실장은 실행예산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재무관, 주관 실·과·단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실행예산의 결정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5조(실행예산) ① <현행과 같음> ②----- -----재무과장 및 통합지출관과----- -----.</p> <p>③----- 재무관, 통합지출관 ----- ----- -----.</p>
<p>제26조(집행상황 조사) 기획감사실장과 재무과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각 실·과·단 또는 각 관서의 예산집행상황을 매년 한 차례 지출내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p>	<p>제26조(집행상황 조사) ----- ----- ----- 매년 한 차례 이상-----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본청 실·과·단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u>법 제50조에</u> 따른 이월예산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및 계속비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이월요구서 (별지 제17호 서식 또는 별지 제18호서식)를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따른 이월요구서를 수합·심사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u>법 제50조제4항에</u> 따라 명시이월 및 계속비의 이월, 사고이월의 경우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월예산으로 확정하고, 해당 실·과·단장, 재무관 및 지출원, <u>재무과장과</u>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이를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7조(이월예산의 집행) ① ----- ----- <u>지방재정법 제50조에</u> ----- ----- ----- ----- ----- -----</p> <p>② ----- ----- ----- 「지방재정법」 제50조제4항에 ----- ----- ----- ----- -----, <u>통합지출관, 재무과장과</u> ----- -----.</p>
<p>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본청 실·과장,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의 전용 또는 이용을 필요로 하거나 직제의 신설·변경등으로 예산의 이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u>별지 제19호서식부터 별지 제19-2호서식까지</u> 작성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예산업무담당실(국)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전용·이용·이체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주관 실·국장, 시·도의회사무처장 제1관서의 장, 재무관 및 <u>지출원</u>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8조(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① ----- ----- ----- ----- ----- ----- <u>별지 제19호서식</u> ----- ----- ----- -----</p> <p>② ----- ----- ----- ----- ----- <u>지출원, 통합지출관</u>에게 ----- -----.</p>
<p>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생략></p> <p>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의 요구서를 심사하여 군수의 결재를 얻었을 때에는 실·과·단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 <u>재무관</u> 및 지출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제29조(예비비의 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u>통합지출관, 재무관</u> ----- -----.</p>
<p>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u>세입·세출결산에</u></p>	<p>제30조(결산서의 작성) ① <u>세입결산에 관</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관한 사항은 재무과장이 작성한다.</p> <p>② 재무과장은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재무 제표를 작성하여야 한다.</p> <p>③ 재무과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작성하여 매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④ 결산서는 법 제51조 및 영 제59조의2에 따라 작성하고, 첨부서류는 법 제51조의2 및 영 제59조의3에 따른다.</p> <p>⑤ <생략></p>	<p>한 사항은 재무과장(세정업무담당과장)이,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은 통합지출관이 작성한다.</p> <p>② 통합지출관은 법 제16조제3항에----- -----.</p> <p>③ 통합지출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결산자료를 제출받아 결산서를 작성하여 ----- -----.</p> <p>④ ----- 영 제12조에 ----- -----, ----- 영 제4조에 ----- -----.</p> <p>⑤ <현행과 같음></p>
<p>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해당연도 출납폐쇄기한까지 수입되지 아니한 것은 이를 다음 연도의 징수결정액에 이월하여야 한다. 전년도 이월액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p> <p>② 이월액의 장부정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월 10일까지로 한다.</p> <p>③ <생략></p>	<p>제34조(미수납액의 이월) ① 징수관이법 제7조에 따라 징수결정한 세입금으로서 다음연도 1월 20일까지----- -----.</p> <p>② ----- ----- 다음연도 2월 10일까지로--.</p> <p>③ <현행과 같음></p>
<p><신설></p>	<p>제34조의2(납입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의 처리) 출납공무원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된 수입금에 대하여는 연장된 납부기한인 다음 회계연도의 첫 근무일까지 그 수입금을 군 금고에 수납할 수 있다.</p>
<p>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8조에 따라 현금에 갈음하여 납부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는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1항의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하고 그 납부 절차등에 관하여는 국가의 예에 따른다.</p>	<p>제38조(유가증권에 의한 수입) 영 제23조에 ----- ----- ----- -----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9조(출납원의 수납)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징수관은 수입금 발생 시에 제50조의3 제1항에 따라 본청 통합계좌에 즉시 입금하여야 한다.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징수관이 제39조와 제106조에 따라 영수필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수입 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작성하고 징수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u><신설></u>	제40조(수입일계표의 작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징수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수입일계표(별지 제29호서식)를 본청 통합지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 ② <생략> ③ 과오납금반환명령은 통상명령과 송금명령 2종으로 하고, 그 처리는 지급명령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생략>	제43조(과오납금의 반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현금반환명령과 계좌반환명령으로 -----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징수보고서) ① 징수관은 영 제84조에 따라 매월 징수보고서(별지 제37호서식)를 작성하고 이에 금고의 세입일계표를 첨부하여 그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전산처리하여 전산징수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45조(징수보고서) ① ----- 영 제30조에 ----- ② <현행과 같음>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재무과장은 각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입예산월별징수계획서를 종합 검토하여 세입예산월별징수종합계획서(별지 제39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기획감사실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재무과장은 제18조에 따라 본청 실·과 및 관서의 장이 제출한 세출예산월별 지출	제47조(자금수급계획) ① ----- 각 실과단 ----- ②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계획서와 기획감사실장이 통지하는 세출예산월별분기별배정계획서를 기초로 하여 세출예산월별자금지출종합계획서(별지 제40호 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의 결재를 받아 이를 본청 실·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생략>.</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 이를 통합지출관, 본청 실·과·단장, 의회사무과장 _____.</p> <p>③ <현행과 같음>.</p>
<p>48조(자금배정) ① 재무과장은 해당부서의 자금배정요구서 및 제47조제2항의 세출예산월별 자금지출종합계획서를 참고하여 본청 실·과장, 지출원, 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과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별지 제14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재무과장이 본청 실·과·단장, 의회사무과장,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할 때에는 군금고에 대하여 지출한도액배정지시서(별지 제41호 서식)를 발부하고, 본청 지출원, 의회사무과장 및 제1관서의 장에게 세출예산지출한도액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세출예산지출한도액 통지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자금배정방법을 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별도로 정할 수 있다.</p> <p>④ 재무과장은 제19조제3항 및 제5항의 경우 해당관서의 지출원에게 재배정 예산에 대한 자금배정임을 명시하여 지출한도액을 통지한다. 이 경우 군금고에 대한 배정지시에 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p>	<p>48조(자금배정) ① 통합지출관 _____</p> <p>_____</p> <p>_____ 실·과·단장, 의회사무과장, _____.</p> <p>_____</p> <p>② _____ 통합지출관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③ <삭제></p> <p>④ 통합지출관 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재무과장은 세출예산지출한도액을 통지하였을 때에는 세출예산자금배정원부(별지 제42호서식)를 비치하고</p>	<p>제49조(자금배정의 정리) 통합지출관은 _____</p> <p>_____</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정리하여야 한다.	-----.
<p>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생략></p> <p>② <생략></p> <p>③ <u>지출원(일상경비출납원을 포함한다)은 각종 대가 등을 지급함에 있어 정당한 채권자에게 계좌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u></p> <p><u>1. 계좌입금이 불가능한 경우</u></p> <p><u>2. 운영수당 중 일·숙직비</u></p> <p><u>3. 업무추진비 중 현금지급 한도 내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u></p> <p><u>4. 행사실비보상금 중 여비로 지급하는 경우</u></p> <p><u>5. 공무원여비</u></p>	<p>제50조(지출 및 지급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지출원 및 출납원, 통합지출관은 각종 지급명령 및 대가 등을-----다</u> <u>만, 영 제5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u></p> <p><u>1. <삭제></u></p> <p><u>2. <삭제></u></p> <p><u>3. <삭제></u></p> <p><u>4. <삭제></u></p> <p><u>5. <삭제></u></p>
<p>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뱅킹시스템과 지-뱅킹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u></p> <p>1. ~ 4. <생략></p> <p>5. 그 밖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통지가 가능한 문서</p> <p>② <u>군금고 및 군금고지출대행점, 군공금지급대행점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수신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라 지체 없이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u>통지</u>하여야</u></p>	<p>제50조의2(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따른 업무처리) ①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이-뱅킹시스템과 지-뱅킹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단서 삭제></u></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 <u>통보가</u> -----</p> <p>② ----- ----- ----- ----- ----- ----- <u>통보</u>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한다.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 등을 알린 후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p> <p>③<생략></p>	<p>---. 다만, 통신 또는 프로그램의 장애 등의 사유로 시스템 이용이 불가할 경우 서면으로 송부할 수 있다.</p> <p>③<현행과 같음></p>
<p>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90조에 따른 재정의 통합지출을 위하여 본청에 통합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50조의3(재정의 통합지출) ① 법 제45조에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p>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134조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관서별 지출원 및 출납원에 대한 지도·감독의 범위는 아래와 같이 정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에 따른 임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p>	<p>제50조의4(통합지출관의 임무) ① 영 제53조제2항제3호에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② 영 제53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의 임무 중 제2호의 관서별 필요자금의 통합관리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p> <p>1. 통합계좌 자금의 운용 및 관리</p> <p>2. 자금배정계획 수립 및 자금배정</p> <p>③ 통합지출관은 필요 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 중 -----.</p>
<p>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지급명령을 할 때에는 예산의 과목별 및 채권자별(인건비중 다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경비 및 집합지급은 제외한다)로 작성하여 기재사항을 심사하고 채권자의 청구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지급의 경우에는 청구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1. ~ 9. <생략></p> <p>② ~ ④ <생략></p>	<p>제51조(지급명령의 발행요건) ① -----</p> <p>-----경비는</p> <p>-----.</p> <p>1. ~ 9. <현행과 같음></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채권자의 영수인은 청구서에 날인한 것과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자와 영수자를 달리하는 경우, 분</p>	<p>제54조(채권자의 영수인) ①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실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을 신청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인감을 증명할 만한 서류 또는 채권자를 확인할 만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p> <p>③ <생략></p>	<p>② ----- 경우에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의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일상경비, 수입대체경비, 개산급, 개산급에 대한 정산급, <u>선급급</u>, <u>송급</u> 및 <u>집합지급</u>에 관하여도 그 뜻을 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부터 별지 제50-3호서식까지)의 위 빈자리에 표시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④ 재무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에는 지출원인행위의 시기 및 금액에 대해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출원인행위부(별지 제51호서식)에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의 교부, 지난 회계연도 지출 및 계속비나 채무부담행위에 따라 <u>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 지출원인행위 정리구분표(별표 3)의 구분에 따라 이를 정리하여야 한다.</u></p>	<p>제55조(지출결의서 작성 및 지출원인행위부의 정리구분) ① -----, <u>선급</u> <u>급 지급에 관하여</u> -----.</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④ ----- <u>지출원인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지출금의 반납이 있을 때에는</u> -----.</p>
<p>제56조(송금통지) (<u>송금·집합</u>)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 또는 제51조제2항의 약식지급명령(별지 제43호서식)에 따라 지급시 채권자가 군 산하기관인 경우 송금통지서(별지 제54호서식)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p>	<p>제56조(송금통지) (<u>계좌·현금</u>)지급명령(별지 제55-1호서식)에 따라 -----</p> <p>-----.</p>
<p>제57조(<u>통상지급명령</u>의 재발행) ① <u>통상지급명령</u>(별지 제55호서식) 또는 <u>공금지급통지서</u>(별지 제56호서식)를 받는 <u>채주가</u> 이를 망실 또는 오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p>	<p>제57조(<u>현금지급명령</u>의 재발행) ① <u>현금지급명령</u>(별지 제55호-1호서식) ----- <u>채권자가</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기하여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 출납원에게 재발행청구를 하여야 한다.	_____.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각 실·과·단장은 배정된 예산에 대하여 <u>법 제72조 및 영 제91조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일상경비를 교부하여 집행할 때에는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 일상경비교부서(별지 제57호서식)를 송부하고 지출원에게 일상경비의 교부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를 증감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u> ② <삭제 1999. 2. 13> ③ <생략>	제59조(일상경비의 교부) ① ----- _____ <u>법 제34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관서의 장 또는 읍면장에게</u> _____ _____ _____. <u>증감변경할 때도</u> _____ -----.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 ② <생략> ③ <u>그 밖의 관서에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u>	제60조(일상경비의 교부조치) ① ~ ② <생략> ③ _____ <u>경우에</u> _____ <u>도</u> -----.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일상경비출납원이 일상경비를 교부 받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을 <u>군공금지급대행점으로 지정하여 예치하고 지급명령을 공금지급통지서(별지 제56호서식)로써 시행한다. 이 경우 제54조를 준용한다. 다만, <u>군본청의</u> 일상경비출납원이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금 지급통지서를 생략할 수 있다.</u> ② <생략>	제63조(일상경비의 관리) ① ----- _____ _____ _____ _____. <u>본청의</u> _____ _____ -----. ② <생략>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생략> ⑤ <u>영 제97조 제2호에 따른 소송비용을 개산급으로 지급하는 경우 정산을 의무화하도록 위임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법원소송 경비 중 인지대와 송달료의 반환계좌는 자치단체 명의의 계좌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u>	제64조(개산급의 정산)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u>영 제45조제2호에</u> ----- _____ _____ _____ _____.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⑥ <생략></p> <p>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수입대체경비는 <u>영 제27조에</u>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로 하고, 수입의 수납·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경비별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을 둔다.</p> <p>② <생략></p>	<p>⑥ <현행과 같음></p> <p>제68조(수입대체경비출납원) ① ----- <u>영 제26조에</u>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생략></p> <p>② 기획감사실장은 제1항에 대해서 승인(별지 제109호서식)을 한 경우에는 승인내역을 <u>재무과장</u>, 승인신청 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③ <u>재무과장은</u> 제2항의 승인분에 대해서 수입대체경비출납원에게 자금을 배정할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69조의2(예산초과집행 승인)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통합지출관 및 재무과장</u>, ----- -----.</p> <p>③ <u>통합지출관</u>은 ----- -----.</p>
<p>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 ② <생략></p> <p>④ 수입대체경비출납원은 매월말 현재의 수입대체경비출납현황(별지 제110호서식)을 다음달 5일까지 <u>재무과장에게</u> 통보하여야 한다.</p>	<p>제70조(예산초과집행)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④ ----- ----- ----- <u>통합지출관 및 재무과장에게</u> -----.</p>
<p>제74조(자금운용) ①~③ <생략></p> <p>④ 자금의 <u>관리</u>는 세입담당과장이 주관한다.</p>	<p>제74조(자금운용) ①~③ <생략></p> <p>④ 자금의 <u>관리·운용</u>은 <u>통합지출관</u>이 주관한다.</p>
<p>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보증금 2. 보관금 3. <u>잡종금 등(그 밖의 사무관리에 따라 필요한 경비)</u></p>	<p>제75조(세입세출외현금 종류) 세입세출외현금은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리</u>하여야 한다.</p> <p>1. 보증금 2. 보관금 3. <u>잡종금 등(사무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u></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② <생략></p> <p>③ 세입세출외현금 반환청구자가 세입세출외현금을 계좌로 입금 받을 때에는 세입세출외현금 송금의뢰서(별지 제66-1호서식)에 입금의뢰서를 첨부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에게 제출하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같은 조 제2항의 절차에 따라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0조의2에 따라 지급명령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같음할 수 있다.</p> <p>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⑤~⑥<생략></p>	<p>제77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절차) ①~② <생략></p> <p>③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 . 이 경우 영수증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의 입금명세서로 같음한다.</p> <p>④ 출납원은 반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5년 동안 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청구가 없는 경우 군에 귀속시키고 징수관에게 세입편입을 요구하여야 한다.</p> <p>⑤~⑥<현행과 같음></p>
<p>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보관중인 유가증권을 영 제104조 제1항에 따라 구분하고 유가증권수급부(별지 제67호서식)에 따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84조(유가증권의 보관) ① ----- 영 제104조 제1항에 -----</p> <p>-----</p> <p>-----</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출납원은 취급하는 현금을 개인의 현금과 혼합하여 취급하지 못한다.</p>	<p>제88조(개인현금 혼합금지) ----- 혼합하여 -----</p> <p>-----</p>
<p>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영 제139조에 따른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본청과 제1 관서와 그 밖의 관서의 경우 회계주무과장 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 또는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출납</p>	<p>제89조(출납사무의 검사) ① 출납원의 장부 및 보관용기의 검사는 영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실시한다.</p> <p>② 제1항에 따라 감사부서 공무원이 검사를 하는 경우 그 검사의 일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1조(집합지급명령) <u>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집합지급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송금하여야 하며 그 방법과 사무처리는 제110조의 규정에 준한다.</u></p>	<p>제111조 <삭제></p>
<p>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u>군금고 또는 군금고 지출대행점은 지급명령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급을 거부하여야 한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생략> 2. <u>통상지급명령과 통상지급명령통지서가 부합되지 아니한 경우</u> 3. <u>통상지급명령의 오손으로 통상지급명령통지와 대조하기 곤란한 경우</u> 4. <u>집합지급명령과 금액명세표(별지 제80호서식)의 합계금액이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u> 5. <생략> 6. 지급명령, <u>통상지급명령통지</u>의 기재사항을 개서 그 밖에 변경한 흔적이 있는 경우. 다만, 날인의 과오로 재차 날인하였거나 금액외의 정정으로서 정정인이 있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지급명령과 <u>통상지급명령통지</u> 및 금액명세표가 규정된 서식과 다른 경우 <p>② <생략></p>	<p>제112조(지급의 거부) ① <현행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u>현금지급명령서와 지방재정시스템에서 지급명령한 내역이</u>----- 3. <삭제> 4. <삭제> 5. <현행과 같음> 6. -----<u>현금지급명령통지</u>----- 7. ----- <u>현금지급명령통지</u> ----- <p>② <현행과 같음></p>
<p>제113조(<u>통상지급명령통지의 반환</u>) ① <u>군금고 또는 군금고지출대행점은 연도내에 받은 통상지급명령통지 중 출납폐쇄기한까지 채권자의 현금지급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지급명령통지에 미청구의 도장을 날인하여 소관지출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u></p> <p>② <생략></p>	<p>제113조(<u>현금지급명령통지의 반환</u>) ① -----</p> <p><u>현금지급명령통지</u> -----</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u>금고사무에</u></p>	<p>제120조(금고의 감독 및 검사) ① -----</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관한 감독은 재무과장이 총괄한다.</p> <p>② 영 제106조에 따른 금고에 대한 검사는 재무과장이 이를 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관리·감독은 -----.</p> <p>② 영 제103조에 -----</p> <p>-----.</p>
<p>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생략></p> <p>② 공사·용역·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용역관리대장(별지 제87호 서식) 또는 물품관리대장(제 87-1호서식)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p> <p>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 별지 제 48호부터 별지 제50호까지의 서식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른 신용카드를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경우에는 구입(물품,기타)지출결의서(별지 제48호서식) 대신에 (일반)지출결의서(별지 제45호서식)를 사용한다.</p>	<p>제121조(계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p> <p>② -----</p> <p>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③ ----- 계약의 내용에 따라 -----</p> <p>-----200만원 이하의 물품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 사용절차에 따라 신용카드로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구매하는 -----.</p>
<p>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②<생략></p> <p>③ 특히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나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p>	<p>제123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②<생략></p> <p>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검수자를 지정하거나 검수자(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와 검사자(물품운용관)를 달리 지정할 수 있다.</p>
<p>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회계문서상의 모든 날인은 무인, 서명, 그 밖의 표시로 갈음할 수 없다. 다만, 강의, 감시, 당직 또는 회의참석, 여비, 행사실비보상금 등 현금으로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에 대해서는 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생략></p>	<p>제128조(회계문서의 날인) ① -----</p> <p>-----행사실비보상금 등을 지급하는 100만원 이하 영수인 및 채권자에게 계좌송금하는 경우 청구서는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29조(과목경정등) ① <생략></p>	<p>제129조(과목경정등) ① <현행과 같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② 각 실·과·단장은 세출예산을 집행한 후 회계연도, 회계명, 세출과목에 착오가 있어 이를 정정할 때에는 출납폐쇄일전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출원에게 과목경정 등 정정 요구서(별지 제9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p> <p>③~④ <생략></p>	<p>② ----- --- 동일회계 내에 세출과목에----- ----- ----- ----- ----- -----</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30조(지출계산서) ① 지출원은 매월 그 소관에 속하는 세출의 지출계산서(별지 제95호서식)를 작성하여 군 금고 또는 군 금고지출대행점의 세출월계표(별지 제83호서식)를 첨부하여 매분기말 다음 달 15일까지 본청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지출계산서를 수합하여 검토하고, 매분기말 다음 달 20일 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p>	<p>제130조(지출계산서) ① -----매분기----- ----- ----- ----- ----- 통합지출관에게 ----- -----</p> <p>② 통합지출관은 ----- ----- 20일까지 ----- -----</p>
<p>제131조(출납계산서) ① 일상경비출납원은 일상경비출납계산서(별지 제96호서식)에 예금잔액증명서를 첨부하여 분기말 기준 다음 달 20일까지 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31조(출납계산서) ① ----- ----- ----- 매분기말 ----- ----- 통합지출관에게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은 매년 취급한 세입세출외현금의 출납을 증명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별지 제97호서식)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경과후 1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제132조(세입세출외현금출납계산서) ----- ----- ----- ----- ----- 통합지출관에게 ----- -----</p>
<p>제13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감사원계산증명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38조(준용규정) 이 장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u>감사원계산증명규칙</u>」의 규정을 준용한다.</p>
<p>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부채관리관은 열 제108조에 따른 군의 부채에 대해서는 부채</p>	<p>제141조(부채관리관의 장부) -----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8조에</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관리관(총괄직 및 분임직을 포함한다)이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서식과 조례·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_____</p> <p>_____</p> <p>_____</p> <p>-----.</p>
<p>제143조(재무관의 장부) 재무관은 지출원인 행위부(별지 제52호서식)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p>	<p>제143조(재무관의 장부) -----</p> <p>----- (별지 제52호서식) -----</p> <p>-----.</p>
<p>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생략> ② 장부의 기재에 있어서는 제1항 규정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1. ~ 3. <생략> 4. 잔액의 난에 기재할 금액이 없을 때에는 검은 글씨로 ○을 쓰고 예산에 대해서 수입액이 초과하였을 때에는 초과액을 기재하고 그 앞에 (+)의 기호를 붙인다. 5. <생략></p>	<p>제149조(장부기재상의 주의) ① <생략> ② -----</p> <p>-----.</p> <p>1. ~ 3. <생략> 4 -----</p> <p>검은 글씨로 0을 쓰고 -----</p> <p>-----.</p> <p>5. <생략></p>
<p>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별 제91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회계관계공무원과 군금고는 이 규칙에 따라 비치 관리하여야 할 장부 및 지출서식은 별 제96조의2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장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산입력자료에 대해서는 훼손, 손실, 멸실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제150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① 별 제91조에 -----</p> <p>-----.</p> <p>② <현행과 같음> ③ -----</p> <p>----- 「지방재정법」 제96조의2 및 영 제93조에 -----</p> <p>-----</p> <p>-----.</p>
<p>제155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에</p>	<p>제155조(부채의 관리) ① 부채관리관은 부채의 발생·소멸 등 증감변동이 있을 때</p>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141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u>총괄채무부채관리관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에는 그 상황에 대해서 제141조의 부채관리부에 기록·관리함과 동시에 이를 <u>총괄 부채관리관에게</u> 보고하여야 한다.</p> <p>② <생략></p>
<p>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 규정하는 것외의 예산, 결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이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조례·규칙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것은 국가의 예에 따른다.</p>	<p>제158조(국가규정의 준용) -----</p> <p>----- 「지방회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p> <p>-----</p> <p>-----</p> <p>-----</p>
<p><신설></p>	<p>부칙 <제 호, 2017. 1. .></p> <p>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p> <p>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 부터 제49조 까지, 제50조의4 제2항 제2호,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p>

신·구별지대비표

현행

개정안

< 별지 제34호서식 >

통상과오납금반환명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상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채권자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직명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상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채권자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직명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상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채권자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직명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상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채권자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직명	징수관				
관	항	목					

< 별지 제34호서식 >

과오납금반환명령

원 부

과오납금반환통지

과오납금반환명령

과오납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상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채권자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직명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상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채권자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직명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상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채권자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직명	징수관				
관	항	목					

년도	회계	상명	등록번호	과목	회계	세목	부과
		채권자			년도	코드	번호
					환부금	이자	충당
					지급	금액	
년	월	일	발행				
년	월	일	송부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직명	징수관				
관	항	목					

신·구별지대비표

현행

개정안

< 별지 제35호서식 >

< 별지 제35호서식 >

송금과 오남금 반환명령

과오남금 반환명령

금고원
귀하부

금고원
귀하부

송금과오남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남금반환통지

송금과오남금반환필보고서

년도	회계 〇〇정수관 주관	년도	회계 〇〇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회계년도	세목코드
환부금	이자	환부금	이자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담당	담당자	퇴장
관	항	관	항
	정수관		정수관
	목		목

년도	회계 〇〇정수관 주관	년도	회계 〇〇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회계년도	세목코드
환부금	이자	환부금	이자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성명	담당자	성명
관	귀하	관	귀하
	정수관		정수관
	목		목

년도	회계 〇〇정수관 주관	년도	회계 〇〇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회계년도	세목코드
환부금	이자	환부금	이자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정수관	담당자	정수관
관	귀하	관	귀하
	목		목

년도	회계 〇〇정수관 주관	년도	회계 〇〇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회계년도	세목코드
환부금	이자	환부금	이자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퇴장	담당자	퇴장
관	항	관	항
	정수관		정수관
	목		목

년도	회계 〇〇정수관 주관	년도	회계 〇〇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회계년도	세목코드
환부금	이자	환부금	이자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직명	담당자	직명
관	귀하	관	귀하
	정수관		정수관
	목		목

년도	회계 〇〇정수관 주관	년도	회계 〇〇정수관 주관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채권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과목		과목	
회계년도	세목코드	회계년도	세목코드
환부금	이자	환부금	이자
지급금액		지급금액	
은행명		은행명	
예금주		예금주	
계좌번호		계좌번호	
년 월 일		년 월 일	
담당자	정수관	담당자	정수관
관	귀하	관	귀하
	목		목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지기 바람.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위 금액을 채권자에게 송금 반환하였기 통지함.

신·구별지대비표

현행

개정안

< 별지 제55호 서식 >

< 별지 제55호 서식 > <삭제>

통상 지급명령

<p>통상 NO. 0000000</p> <p>통상 지급원부</p> <p>년도 회계</p> <p>NO</p> <p>과목</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td>금액</td></tr> <tr><td>발행일월일</td></tr> <tr><td>채권자</td></tr> <tr><td>격요</td></tr> </table>	금액	발행일월일	채권자	격요	<p>통상 NO. 0000000</p> <p>원금지급명령통지</p> <p>년도 회계</p> <p>NO</p> <p>채권자 계좌 과목</p> <p>결 취 신</p> <p>채권자 계좌 과목</p> <p>금 원(금 원)</p>	<p>통상 NO. 0000000</p> <p>통상 지급명령</p> <p>년도 회계</p> <p>NO</p> <p>채권자 계좌 과목</p> <p>금 원(금 원)</p> <p>위의 금액을 지급명령서 지출인에게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년 월 일</p> <p>000저출원</p> <p>금고 귀하</p>
금액						
발행일월일						
채권자						
격요						
6.8cm	8cm	17cm				
1cm						

9.7cm

신·구별지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57호서식>

일상경비교부서

제 호 신 :
수 신 :

년 월 일
발신 : 남해군수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액			예산교부액			비고
	예산액	기교부	금회교부	합계	잔액	비고	
예산과목	통계목						
	편성목						
	세부						
	단위						
정책							

<별지 제57호서식>

일상경비교부서

제 호 신 :
수 신 :
년 월 일
발신 : 남해군수

○○년도 세출예산을 다음과 같이 일상경비로 교부함.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액			일상경비교부액			비고
	예산액	기교부	금회교부	합계	잔액	비고	
예산과목	통계목						
	편성목						
	세부						
	단위						
정책							

신·구별지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58호서식>

일상경비교부통지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일상경비교부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귀직 계좌에 대체지급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인
 지출인 직 성명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별지 제58호서식>

일상경비교부통지서

(단위:천원)

구분 조직	예산과목						일상경비교부액			비고
	정책	단위	세부	편성목	통계목	기교부액	금회교부액	누계		

위와 같이 **일상경비를 교부하였음을** 통지함.
 년 월 일 인
 지출인 직 성명
 관서 일상경비 출납원 귀하

신·구별지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지 제63호 서식>

세입세출의현금납부서(일시보관유가증권 납부서 적용)

<별지 제63호 서식>

세입세출의현금납부서

<p>위탁서</p> <p>제 호 _____ 년도 _____</p> <table border="1"> <tr><td>세입세출의현금</td><td>원(금) _____</td></tr> <tr><td>유가증권</td><td>원(금) _____</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현 금 _____</p> <p>예탁기간 _____</p> <p>증권명 _____</p> <p>원권 매 _____ 원</p> <p>원권 매 _____ 원</p> <p>원권 매 _____ 원</p> <p>계 _____ 원</p> <p>위와 같이 납부함.</p> <p>년 월 일</p> <p>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인</p> <p>금고 귀하</p>	세입세출의현금	원(금) _____	유가증권	원(금) _____	<p>납입통지서</p> <p>제 호 _____ 년도 _____</p> <table border="1"> <tr><td>세입세출의현금</td><td>원(금) _____</td></tr> <tr><td>유가증권</td><td>원(금) _____</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현 금 _____</p> <p>예탁기간 _____</p> <p>증권명 _____</p> <p>원권 매 _____ 원</p> <p>원권 매 _____ 원</p> <p>원권 매 _____ 원</p> <p>납부자주소 _____</p> <p>성 명 _____</p> <p>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p> <p>년 월 일</p> <p>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귀하</p> <table border="1"> <tr><td>선담당자</td><td>출납원</td><td>팀장</td><td>과장</td></tr> <tr><td>결</td><td>계</td><td></td><td></td></tr> </table>	세입세출의현금	원(금) _____	유가증권	원(금) _____	선담당자	출납원	팀장	과장	결	계			<p>영수증</p> <p>제 호 _____ 년도 _____</p> <table border="1"> <tr><td>세입세출의현금</td><td>원(금) _____</td></tr> <tr><td>유가증권</td><td>원(금) _____</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현 금 _____</p> <p>예탁기간 _____</p> <p>증권명 _____</p> <p>원권 매 _____ 원</p> <p>원권 매 _____ 원</p> <p>원권 매 _____ 원</p> <p>위와 같이 영수함.</p> <p>년 월 일</p> <p>금고 인</p> <p>납부자 귀하</p>	세입세출의현금	원(금) _____	유가증권	원(금) _____
세입세출의현금	원(금) _____																					
유가증권	원(금) _____																					
세입세출의현금	원(금) _____																					
유가증권	원(금) _____																					
선담당자	출납원	팀장	과장																			
결	계																					
세입세출의현금	원(금) _____																					
유가증권	원(금) _____																					

<p>위탁서</p> <p>제 호 _____ 년도 _____</p> <table border="1"> <tr><td>세입세출의현금</td><td>원(금) _____</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고지부서 _____</p> <p>고지 번호 _____</p> <p>원금 종류 _____</p> <p>납부자 _____</p> <p>고지 금액 _____</p> <p>위와 같이 납부함.</p> <p>년 월 일</p> <p>수납은행 : 은행</p> <p>(계좌번호 : _____)</p> <p>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인</p> <p>금고 귀하</p>	세입세출의현금	원(금) _____	<p>납입통지서</p> <p>제 호 _____ 년도 _____</p> <table border="1"> <tr><td>세입세출의현금</td><td>원(금) _____</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고지부서 _____</p> <p>고지 번호 _____</p> <p>원금 종류 _____</p> <p>납부자 _____</p> <p>고지 금액 _____</p> <p>납부자주소 : _____</p> <p>성 명 _____</p> <p>위와 같이 납부하였기에 통지함.</p> <p>년 월 일</p> <p>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귀하</p> <table border="1"> <tr><td>선담당자</td><td>출납원</td><td>팀장</td><td>과장</td></tr> <tr><td>결</td><td>계</td><td></td><td></td></tr> </table>	세입세출의현금	원(금) _____	선담당자	출납원	팀장	과장	결	계			<p>영수증</p> <p>제 호 _____ 년도 _____</p> <table border="1"> <tr><td>세입세출의현금</td><td>원(금) _____</td></tr> </table> <p>금 _____ 원(금) _____</p> <p>정리구분 _____</p> <p>건 명 _____</p> <p>고지부서 _____</p> <p>고지 번호 _____</p> <p>원금 종류 _____</p> <p>납부자 _____</p> <p>고지 금액 _____</p> <p>위와 같이 영수함.</p> <p>년 월 일</p> <p>금고 인</p> <p>납부자 귀하</p>	세입세출의현금	원(금) _____
세입세출의현금	원(금) _____															
세입세출의현금	원(금) _____															
선담당자	출납원	팀장	과장													
결	계															
세입세출의현금	원(금) _____															

신·구별지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지 제63-1호 서식></p> <p>세입세출의현금납부서</p>	<p><별지 제63-1호 서식></p> <p>세입세출의현금납부서(계과 입금용)</p>	<p>위탁서</p> <p>남일통지서</p>	<p>영수증</p> <p>영수증</p>
<p>세입세출의현금</p> <p>납부번호 20xx-xxxxx-xxxxxx</p> <p>금 원(금 원)</p> <p>정리구분</p> <p>건명</p> <p>현금</p> <p>위와 같이 납부함.</p> <p>년 월 일</p> <p>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인</p>	<p>세입세출의현금</p> <p>납부번호 20xx-xxxxx-xxxxxx</p> <p>금 원(금 원)</p> <p>정리구분</p> <p>건명</p> <p>현금</p> <p>위와 같이 납부함.</p> <p>년 월 일</p> <p>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인</p>	<p>세입세출의현금</p> <p>납부번호 20xx-xxxxx-xxxxxx</p> <p>금 원(금 원)</p> <p>정리구분</p> <p>건명</p> <p>현금</p> <p>위와 같이 납부함.</p> <p>년 월 일</p> <p>세입세출의현금출납원 인</p>	<p>세입세출의현금</p> <p>납부번호 20xx-xxxxx-xxxxxx</p> <p>금 원(금 원)</p> <p>정리구분</p> <p>건명</p> <p>현금</p> <p>위와 같이 영수함.</p> <p>년 월 일</p> <p>납부자</p>
<p>세입세출의현금 입금계좌</p> <p>xx 은행 xxxxx-xx-xxxxxx</p> <p>금고 귀하</p>	<p>세입세출의현금 입금계좌</p> <p>xx 은행 xxxxx-xx-xxxxxx</p> <p>금고 귀하</p>	<p>세입세출의현금 입금계좌</p> <p>xx 은행 xxxxx-xx-xxxxxx</p> <p>금고 귀하</p>	<p>세입세출의현금 입금계좌</p> <p>xx 은행 xxxxx-xx-xxxxxx</p> <p>납부자 귀하</p>

* 이 납부서는 가상계좌에 의한 납부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구별지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지 제80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u>집합지금액 명세표</u></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rowspan="2">집합지금액 번호</th> <th rowspan="2">계 호</th> <th rowspan="2">은 행 명</th> <th rowspan="2">계 좌 번호</th> <th colspan="2">채 권 자</th> <th rowspan="2">년 월 일</th> <th rowspan="2">금 액</th> <th rowspan="2">비 고</th> </tr> <tr> <th>주 소</th> <th>성 명</th> </tr> </thead> <tbody> <tr>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d> </tr> </tbody> </table>		집합지금액 번호	계 호	은 행 명	계 좌 번호	채 권 자		년 월 일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p><별지 제80호서식></p> <p style="text-align: center;"><u>집합지금액 명세표</u></p> <p style="text-align: center;"><삭제></p>	
집합지금액 번호	계 호					은 행 명	계 좌 번호				채 권 자		년 월 일	금 액	비 고								
		주 소	성 명																				

지출원 직 성명 인

남해군 공고 제2017 - 41호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9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2. 개정이유

- 상위법령(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사항의 반영
- 관련 법령 변경사항 반영 및 부적절한 문구 수정

3. 주요내용

가. 공무원의 금품 등 수수 금지(안 제14조)

- 1)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지 못하도록 함.
- 2) 공무원은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 자신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함.
- 3)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외부강의 등의 신고(안 제15조)

- 1)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하도록 함.
- 2) 공무원은 군수가 정하는 외부강의 등의 제한 횟수를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함.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1월 18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 2). 연락처 : 전화 055-860-3054,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감사팀(전화 055-860-30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규칙 제 호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남해군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 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
- 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
- 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고충민원

제2조제1호아목 중 “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 이” 를 “군수가” 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금품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제2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3조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을 포함한다)” 를 “(남해군 의회의원은 제외한다)” 로 한다.

제6조 중 “지연·혈연·학연등을” 를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군수가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

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의2를 삭제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와 같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군수에게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제1항 본문 중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를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 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 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제18조 중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의 위반하는 지가” 를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칙을 위반하는 지가” 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 라 한다) 또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게 그 제공

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 처분한다.
-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군수가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한다.
-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군금고에 귀속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은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제1항 중 “남해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군수”로 한다.

제23조제2항 중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각각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생 략></p> <p>1. <생 략></p> <p>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민원사무를 신청 중에 있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p> <p>나. ~ 사. <생 략></p> <p>아. <u>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지방의회의 장,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의 장이 부패 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u></p> <p>2. <생 략></p> <p>3. “<u>선물</u>”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항공권, 회원권, 입장권, 관람권, 이용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가. <u>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u></p> <p>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1)에 따른 법정민원(장부·대장 등에 등록·등재를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은 제외한다)</p> <p>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2)에 따른 질의민원</p> <p>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고충민원</p> <p>나. ~ 사. <현행과 같음></p> <p>야. <u>군수가</u>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_____</p> <p>2. <현행과 같음></p> <p>3. “<u>금품등</u>”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가. <u>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u></p> <p>나. <u>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u></p> <p>다. <u>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u></p>

4. “향응”이란 음식물·스포츠(골프 등)·주류·오락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관광안내·행사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강령은 남해군 소속 공무원 (직속기관 및 사업소 공무원을 포함한다)과 남해군에 파견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6조(특혜의 배제) ----- 지연철연·학연등을 -----.

제14조(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 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차 등 음료나 간소한 다과·구내식당에서의 식사 또는 통신·교통 등 편의(감독·검사·단속·행정지도 등 민원 업무부서 근무 공무원은 제외)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공식적인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기념품 등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선물

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

이익
<삭 제>

제3조(적용 범위) -----
(남해군 의회의원은 제외한다)-----
-----.

제6조(특혜의 배제) ----- 지연철연·학연 종교 등을 -----.

제14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

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
2.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만 제공되는 차 등 음료나 1명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통신 등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6.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통상적으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
7.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8.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양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9. 소속직원이 퇴임하는 경우에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1명당 3만원 이내에서 전달하는 꽃·기념품 등 선물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였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5조의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군수가 소속 공무원이나 파견 공무원에게 지급하거나 상급자가 위로·격려·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별표 1에 따른 가액 범

위 안의 금품등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4. 공무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5. 공무원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무원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6.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8.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④ 공무원은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무원은 제3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호에 따라 특별히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으로서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수수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은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또는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비속에 수수

제14조의2(금품등을 주는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4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 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회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회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회의등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5조(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및 신고)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군수가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와 같다.

② 공무원은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군수에게 미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공무원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 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⑤ 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생 략>

제17조(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공무원은 제5항에 따라 초과금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⑦ 군수는 공무원이 과도한 외부강의 등으로 인하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의 횟수 상한을 정할 수 있다.

⑧ 공무원은 제7항에 따른 횟수 상한을 초과하여 대가를 받고 외부강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게 알리는 경우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알리는 경우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지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
의 장등이 소속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
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한다.

1. 공무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2.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에서 정하
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등
3.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정하는 경
조사 관련 금품등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규칙의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
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21조(금지된 금품등의 처리) ① 제14조 또
는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
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
한 부분이나 수수가 금지된 금품등을 즉
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
하여 그 반환 비용을 소속 기관의 장에
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등
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통하여 알리는 경우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
단체 등의 회원에게 알리는 경우

<삭 제>

제18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 등의 사
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이 규
칙을 위반하는 자가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공무원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
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
은 경우
2.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나 직계 존속
· 비속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
을 알게 된 경우

② 공무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제공한 자
(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 또
는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한 자에

때에는 즉시 소속 기관의 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한 후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품등을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 처분한다.
-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소속기관장이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한다.
- 3. 그 밖의 금전적 가치가 있는 금품등은 유실물법에 따라 조치하고, 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군세입에 귀속한다. <개정 2003.10.22, 2015.10.2.>

④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은 제공자·제공받은 자·제공받은 금품·제공일시·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게 그 제공받은 금품등을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공무원은 제2항에 따라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여야 하는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인도된 금품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되어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등은 폐기 처분한다.
- 2. 멸실·부패·변질될 우려가 있는 금품등은 불우이웃돕기시설(군수가 정하는 단체) 등에 기증한다.
- 3. 제1호와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 등의 필요한 절차를 거쳐 군금고에 귀속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등은 제공자

·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경위 등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교육) ① 남해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
-----.

제22조(교육) ① 군수는 -----
-----.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생략)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상담, 이 영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조사처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3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

-----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

③ ~ ⑤<생략>

③ ~ ⑤<현행과 같음>

[별표 1] <신설>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4조제3항제2호 관련)

구 분	가액 범위
1.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가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만원
2. 경조사비: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10만원
3. 선물: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5만원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의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 된다.

[별표 2] <신설>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제15조제1항)

1. 사례금 상한액

구 분	군 수	4급 이상	5급 이하	비 고
상한액	30만원	30만원	20만원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

※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 가. 제1호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 관련법령에서 제1호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 보수관련법령 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여비 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에 대해서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2호나목에 따라 국민권의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 다. 제1호에 따른 공직자는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 라. 제1호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 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 등과 관련하여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 마. 라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가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남해군 공고 제2017 - 69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

2. 제정이유

- 재정위기 발생에 대비한 재원 마련 필요성 대두
- 흑자 재정운용을 위한 안정화 적립금 비축 필요

3. 주요내용

가. 적립금의 재원(안 제2조)

- 1) 일반회계의 출연금
- 2)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나. 적립금의 조성(안 제3조)

-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다. 적립금의 사용(안 제4조)

- 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등

4.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기간 : 2017년 2월 7일까지

-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1). 주 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2). 연락처 : 전화 055-860-3063, 팩스 055-860-3703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5. 기 타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남해군청 기획감사실 참여예산팀(전화 055-860-30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도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재정안정화 적립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립금의 재원) 군수는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재정안정화 적립금(이하 “적립금”이라 한다)을 조성한다.

1. 일반회계의 출연금
2. 적립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적립금의 조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으로 적립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서상의 지방세 증가율이 최근 3년 평균 지방세 증가율을 10% 초과한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4조(적립금의 사용)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한다. 다만, 1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1. 남해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3. 군 청사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비 등 대규모 사업의 경비
4. 군정 추진에 필요한 경비
5.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6.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5조(적립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적립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해군 재정안정화 적립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남해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적립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2. 적립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적립금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 ① 적립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적립금운용관 : 재정안정화 적립금 담당부서장
2. 적립금출납원 : 재정안정화 적립금 담당팀장

② 적립금운용관과 적립금출납원은 적립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적립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존속기한) 적립금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